

2011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2012. 9

본 자료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1996년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금융시스템>지급결제제도>금융정보화>추진현황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 례

제 1 장	금융정보화의 개요	1
제 1 절	금융정보화의 개념	3
제 2 절	금융정보화 추진 추이	5
제 3 절	금융정보화 추진 방향	20
제 2 장	금융정보망의 운영 · 관리	23
제 1 절	금융공동망	25
제 2 절	대고객정보망	54
제 3 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정보망의 연계	65
제 3 장	2011년중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71
제 1 절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 구축	73
제 2 절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 제정	76
제 3 절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개정	79

제 4 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 동향	85
제 1 절	현금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87
제 2 절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추진	90
제 3 절	중장기 금융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93
제 4 절	모바일 결제서비스 분야의 혁신 가속화	97
제 5 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 과제	101
제 1 절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의 원활한 발전	103
제 2 절	금융정보망의 안전성 제고	106
제 3 절	금융정보화사업과 표준화	107
<부 록>		113
1.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	115
2.	금융정보화 연혁	178
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안목록	182
4.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세칙	212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절차	222
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244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절차	247

제1장

금융정보화의 개요

제1절 금융정보화의 개념

금융정보화는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융정보를 수집, 처리, 창출하거나 전달하는 데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정보를 처리·활용·창출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정보화는 특히 9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디지털 정보기술이 기존의 금융제도와 금융구조에 접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정보화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금융공동망의 구축·운영 등을 통해 추진된다. 금융정보화는 금융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금융 신상품을 창출해냄으로써 금융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혁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크게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구분된다.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은 경제주체들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거리간 또는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거래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금융산업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일찍부터 정보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이 실물의 이전 없이 정보의 전달만으로 완료될 수 있고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거의 동질적(homogeneous)이라는 산업특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금융정보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자동화와 각 금융기관 내부의 온라인망 등 내부전산망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금융기관 내부전산망을 다른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결한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금융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은행공동망을 들 수 있다. 은행공동망은 각 은행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결제면에서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을 1일 금융권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급결제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단계는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직접적인 대면(對面)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이다.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리적인 점포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증권·보험사와 같은 가상금융기관(virtual financial institution)도 등장하게 되었다.

4단계는 금융산업을 지식정보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금융기관은 고객들에 관한 정보관리를 통해 특정고객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업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기업고객에 대하여는 그 기업 제품의 시장환경, 원자재 조달여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자산·부채 종합관리에 필요한 헷지수단, 인수·합병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금융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의 거래활동에 수반되는 많은 정보가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이러한 정보가 지급결제정보와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금융산업의 지식정보산업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전반적으로 금융네트워크 구축단계를 거의 끝내고 무선통신, 인터넷,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금융서비스의 전달채널을 다양화해 나가는 3단계 금융정보화 과정의 고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금융정보화 4단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당분간 금융정보화는 각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대고객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며 금융기관별 고객서비스 전달채널의 확충과 관련한 공동망 추진 및 개선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간 금융공동망 연결을 통해 국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금융정보화 추진 주이

1. 금융정보화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는 1960년대 후반 각 은행이 급여계산업무를 일괄처리(batch)방식으로 전산화하면서 출발하였으며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은행들이 사무자동화 및 본지점간 온라인망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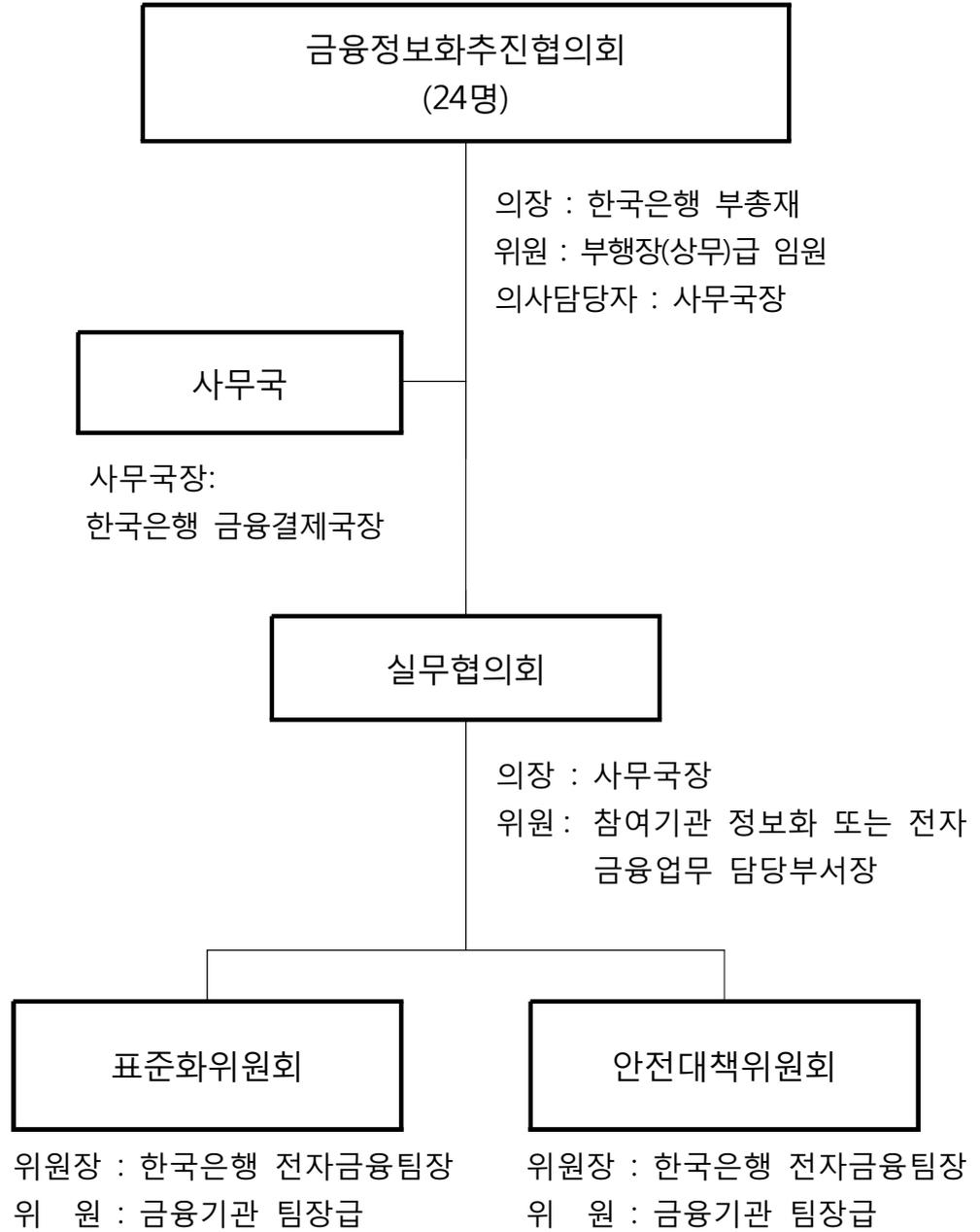
1980년대 들어 금융전산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융전산망을 행정, 교육·연구, 국방, 공안 전산망과 함께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정부의 「전산망조정위원회」 산하에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전산위원회」가 1984년 9월 발족되었다.

1987년 1월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전산위원회가 1987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칭되었고 대상 금융기관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정보화추진기구가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1996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해 11월에는 동 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년 8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09년 11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한국은행과 민간기관과의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되었다.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는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에 관한 사항 및 금융정보화 업무와 관련한 표준화 등의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금융부문별 추진 추이

가. 은행

우리나라 은행들은 1970년대 후반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본지점간 전산망을 구축하여 계정과목별로 영업점간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든 계정과목에 대한 온라인화를 완료하였다.

입금전표의 폐지 등을 통해 영업점 수작업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량 확대 등으로 문서관리를 자동화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점 단말기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외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Global Network를 구축하였으며 원화·신탁·외화ALM, 일일자금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국제금융 딜링 시스템, 전산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감사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정보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정보시스템(MIS)과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한편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각 은행 본점과 전 영업점간에 근거리통신망(LAN) 및 광역통신망(WAN)을 구축하였으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최종사용자컴퓨팅(End-User Computing: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 관리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홈뱅킹·편뱅킹 등 대고객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별 종합거래현황 분석 및 고객기여도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고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콜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객들에게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은행들을 연결하는 공동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후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현금자동인출기(CD/ATM)공동망(구축시기:1988. 7, 이하 같음), 타행환공동망(1989. 12), 직불카드공동망(EFT/POS)(1996. 2), 자금관리서비스(CMS)공

동망(1996. 8), 신용정보공동이용망(1997. 1), 지방은행공동정보망(1997. 6), 전자정보교환시스템(Check Truncation, 2000. 5), 기업·개인(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2000. 12), 전자화폐공동망(2001. 1), 전자금융공동망(2001. 4),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2002. 3),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2004. 10),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2004. 12), 은행공동 e-L/C 관리시스템(2005. 9), 전자어음 관리시스템(2005. 9),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시스템(2010. 4)등의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정보화사업은 2011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사업도 지속되었다. 또한 국가간 ATM 공동이용시스템의 연계국가로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추가되었으며 월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표준이 제정되는 등 금융업무 표준화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표1-1>

은행부문의 정보화 주이

시 기	단 계	주 요 추 진 내 용
'60년대 후반 ~ '75년	사무자동화	— 급여계산업무 등의 일괄처리
'76년 ~ '85년	계정과목별 온라인화	— 계정과목별로 영업점간 온라인 실시
'86년 ~ '90년	종합온라인화 및 은행공동망 구축	— 고객별 여수신 합산 등 종합온라인 시스템 구축 —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은행공동망 구축
'91년 ~ 현재	대고객정보망 등의 구축 및 외부정보망과의 접속,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온라인시스템 및 은행공동망(CMS, 신용정보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Payment Gateway, 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 등) 확충 — 펌뱅킹, 홈뱅킹, EFT/POS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 경찰전산망, 종합무역자동화망 등 외부전산망과 접속 —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제공 — 콜센터 구축 —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구축 —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 개편 — 어음·수표의 정보교환처리시스템 구축 —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시스템 구축 — 국가간 ATM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 구축

은행공동망은 금융결제원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참가기관 수는 최초 은행공동망 가동시에 10여개 은행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전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5년에는 우체국과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2002년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하였으며 2009년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참여함으로써 농·어촌, 산간벽지 등 은행점포

가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공동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취급업무를 다양화하고 이용시간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공동망을 경찰전산망(1993. 2), 점외 CD/ATM망(1993. 10), 종합무역자동화망(1994. 1) 등 외부정보망과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금융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자방식 결제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중 장표방식 결제규모는 전년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12.1%, 금액기준으로는 7.6% 감소하였으며, 전자방식 결제규모는 전년대비 건수는 13.5%, 금액은 15.0%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지급결제중 전자방식 결제수단의 비중은 건수기준으로는 92.8%로 전년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63.7%로 전년대비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소액지급수단별 결제규모(일평균) 추이

(단위 : 천건, 십억원, %)

지급 수단	2010년중		2011년중		증감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장표방식	3,261 (9.1)	23,210 (41.6)	2,868 (7.2)	21,446 (36.3)	△12.1	△7.6
어음·수표 ¹⁾	2,052	22,940	1,678	21,132	△18.2	△7.9
지로 일반계좌이체	1,209	270	1,190	314	△1.6	16.2
전자방식	32,691 (90.9)	32,575 (58.4)	37,107 (92.8)	37,579 (63.7)	13.5	15.0
자금이체 ²⁾	12,440	31,073	13,530	35,901	8.8	15.5
카드 등 ³⁾	20,251	1,501	23,577	1,678	16.4	11.7
합 계	35,952	55,785	39,975	59,025	11.2	5.8

주: 1) 전자어음 및 발행창구제시어음 제외
 2) 지로시스템(일반계좌이체 제외),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ATM 계좌이체,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어음
 3)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4) ()내는 구성비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서비스채널이 급성장하고 고객관계관리(CRM), 프라이빗뱅킹(PB), 방카슈랑스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산시스템의 용량 부족 및 처리속도 저하와 함께 각 서비스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은행들은 기존 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이 새로 도입하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 운영체제를 일반적으로 '차세대전산시스템'이라 부르고 있다. 차세대전산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보처리 속도,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향후 은행영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의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기업, 외환, 신한, 농협, 하나, 국민은행이 이미 도입을 완료하였고 2011년중 대구, 수협에 이어 2012년 상반기에 한국씨티 및 부산은행이 구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차세대시스템 도입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산업은행 등은 차세대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검토 중에 있다.

<표1-3> 주요 은행의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현황

은행명	시스템도입 계획수립시기	시스템개통 (예정)시기	시스템유형	도입방식 ¹⁾
산 업	1998년	2001. 3월	유닉스	빅뱅식
우 리	2000.11월	2004. 9월	메인프레임	빅뱅식
기 업	2002. 5월	2004. 9월	메인프레임	빅뱅식
외 환	2003. 1월	2005. 2월	유닉스	빅뱅식
신 한	2004.10월	2006.10월	유닉스	빅뱅식
농 협	2004.11월	2009. 1월	유닉스	빅뱅식
하 나	2005. 1월	2009. 5월	유닉스	빅뱅식
국 민	2003. 7월	2010. 2월	메인프레임	점진적 방식
대 구	2009. 7월	2011. 6월	유닉스	빅뱅식
수 협	2008. 1월	2011. 9월	유닉스	빅뱅식
한국씨티 ²⁾	2011. 4월	2012. 5월	메인프레임	빅뱅식
부 산	2010. 3월	2012. 1월	유닉스	빅뱅식

주 : 1) 전산시스템 도입방식은 전체 전산시스템을 2년 이내의 단기간에 교체하는 빅뱅(Big Bang)식과 2년 이상의 중기간에 걸쳐 교체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

2) 코어뱅킹시스템 기준

은행들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시스템의 종류는 주 전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 따라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유닉스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인프레임 시스템은 소수의 대형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폐쇄형 통신을 사용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별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므로 보안 및 안전성이 탁월한 장점이 있다. 유닉스 시스템은 다수의 중형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공개된 운영체제인 유닉스(UNIX)를 사용함에 따라 기술인력수급, 관련 업무의 외부위탁 등이 용이하며 초기 설치비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아울러 은행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대고객채널로서의 모바일뱅킹 인프라 확충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 브랜치 및 모바일 오피스 등을 구축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소셜네트워크(SNS)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¹⁾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인적·절차적 관리부실 등으로 전산장애,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산보안 인프라 확충 및 금융IT 내부통제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모바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일종으로 13.56MHz 주파수 대역에서 10cm 이내의 기기 상호간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기술규격. 2002년 Sony사와 Philips사가 PC, PDA,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간 양방향 무선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개발하였으며 2003년 12월 NFC 국제표준으로 'ISO 18092'가 제정됨.

나. 증 권

증권 부문의 정보화는 1970년대 중반 증권거래소와 일부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정보화는 1977년 9월에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2005년 5월 회사명을 코스콤(Koscom)으로 변경)이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의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증권매매시스템(1979. 7), 증권정보문의시스템(1980. 8), 증권공동온라인시스템(1983. 2) 및 증권자동매매체결시스템(1988. 3)이 차례로 가동되는 등 증권부문 전산화의 틀이 확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증권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1992. 1) 및 채권투자(1994. 7) 한도관리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주가지수선물거래시스템(1996. 5), 장외주식매매체결시스템(1996. 7) 등을 가동하였다. 특히 1996년 11월에는 공동온라인시스템과 매매체결시스템 등을 「시스템2000」으로 통합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증권회사 본·지점과 증권거래소 시장(주식 및 소액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장외시장(장외 주식 및 채권)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증권매매 주문의 접수 및 전달, 매매체결 및 결과 통보, 고객계좌원장의 정리, 증권 투자정보의 제공 등 증권거래의 전 과정이 전산화되었다. 1997년 7월부터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위한 매매체결 결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000년 들어서는 사이버증권 거래의 대중화, 선진 매매제도의 도입 등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및 증권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었다. 장외주식거래를 제도화하고 퇴출기업의 주식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2000. 3)을 구축하였다. 또한 공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소(2001. 4) 및 코스닥(2000. 11)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물·옵션(2000. 1) 및 코스닥(2000. 12) 감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상매매 적출 및 실시간 감시체제를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야간주식시장(ECN) 매매체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2년에는 증권 현물·선물계좌통합시스템(BASE21), 상장지수펀드(ETF)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거래약정에서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증권업무의 전 과정이 표준화된 메시지에 의해 자동으로 연동되는 증권업무의 일관처리화(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4월부터

STP-HUB와 단일접속만으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간 상호연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2010년 12월말 현재 111개 금융투자회사가 STP-HUB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2003년에는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유관기관간 Back-office 통합인프라의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 4월 가동하였다. 2005년에는 동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년 2월에는 BASE21을 대신할 차세대 종합증권시스템 「PowerBase」의 개발을 완료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64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시장, 선물시장, 코스닥시장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시스템 EXTURE를 가동하였다. 차세대시스템 구축으로 호가 처리용량이 종전에 비해 약 2배 늘어나고 매매 체결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각 증권사들도 KRX 차세대시스템 가동 및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기존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하였다. 2009년 7월에는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문서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가 구축되어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의 글로벌시장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11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연계된 KOSPI200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0년 8월에는 유렉스(EUREX)와 연계된 KOSPI200 옵션시장을 개설함으로써 KOSPI200 지수 파생상품의 글로벌화 및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최신의 오픈(Open)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정보분배시스템을 가동하여 선진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안정적이며 가용성이 높은 무장애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 증권회사들은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 거래, 조회,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용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모바일 증권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 실적을 보면 전체 주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5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56.0%를 기록하였다.

(단위 : 조원, %)

연 중	온라인주식약정		전체주식약정		온라인 비중
	금액 ¹⁾	증가율	금액 ¹⁾	증가율	
2006	1,388.3	△3.7	2,552.0	3.5	54.4
2007	1,928.6	38.9	3,727.2	46.1	51.7
2008	1,588.1	△17.7	3,192.3	△14.4	49.7
2009	2,355.9	48.3	3,994.5	25.1	59.0
2010	2,085.6	△11.5	3,787.3	△5.2	55.1
2011	2,530.9	21.4	4,520.1	19.3	56.0

주 : 1)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합
자료 : 한국거래소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과 연계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9년 7월 3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금융투자회사 중 최초로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24개 금융투자회사가 추가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특별참가하여 2012년 8월말 현재 총 25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결제원과 연계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기	주 요 추 진 내 용
'70년대 중반	— 일부 증권회사의 자체 사무자동화
'77년 ~ '83년	— 한국증권전산(주)을 중심으로 한 공동온라인시스템 구축
'84년 ~	— 개별기관의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86년 ~ '94년	— 매매체결시스템, ARS 공동이용시스템, SUCCESS시스템 가동
'95년 ~ 현재	— 장외시장시스템 가동 — 신공동온라인시스템, 신매매체결시스템 가동 — 주가지수선물시스템, 채권업무시스템, 주가지수옵션시스템 가동 —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 구축 —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 구축 — 전자공시시스템 구축 — 선물.옵션 감리시스템, 코스닥 종합감리시스템 구축 — 야간주식시장(ECN) 매매체결시스템 구축 — 증권 현물.선물계좌 통합시스템(BASE21) 구축 —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시스템 구축 — 상장지수펀드(ETF) 시스템 구축 — 간접투자자산 예탁.결제시스템 가동 —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종합증권시스템(PowerBase) 개발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 KRX 차세대시스템(EXTURE) 구축 —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 연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CME와 연계된 KOSPI200 선물시장 개설 — EUREX와 연계된 KOSPI200 옵션시장 개설 — KRX 신정보분배시스템 가동

다. 보 험

보험회사의 금융정보화는 197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신규계약, 요금, 보전, 업적관리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급여, 경리 등 일반 관리시스템과 자산운용관련 시스템도 차례로 개발되었다. 각 시스템들은 초기에는 일괄처리방식(Batch)으로 개발·운영되었으나 시스템이 대형화된 1980년대부터는 주전산기(Main Frame) 중심의 본지점 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9월에는 기존 주전산기기의 용량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대내외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Client/Server 시스템으로 정보인프라를 개편하였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관련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보험업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보험정보화 추진 전담사업자로 지정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11월에 손해보험회사간 네트워크를 연결한 최초의 공동이용시스템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었고 1995년 5월에는 생명보험 거절체(拒絶體) 정보교환시스템(개인의 생명보험가입 불량사유를 보험사간 공유하는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

이후에도 각종 보험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노력이 지속되어 적하·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시스템(1997. 1), 자동차보험 보유자코드 전산망조회시스템(1997. 2), 자동차보험 통합조회시스템(1998. 7), 인보험 통합조회시스템(1999. 4),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시스템(1999. 12),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시스템(2000. 8), 보험사고정보시스템(2001. 6), 자동차종합민원정보망과의 연계시스템(2002. 1), 웹 기반의 자동차이력 정보시스템(2003. 4), 생명보험 경험통계 관리시스템(2004. 6) 및 웹기반의 보험통계제공시스템(2004. 12), 손해보험요율검증통계시스템(2005. 12), 퇴직연금 기록관리시스템(2005. 12), 전자 적하보험 중계시스템(2006. 12),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확인시스템(2009. 10),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공동관리시스템(2010. 5) 등이 차례로 구축되었다.

2011년에는 전산장애 및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의무보험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개별 계약자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여부 및 환급액을 조회·확인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시스템이 구축되어 2012년 1월부터 가동되었다.

한편 보험부문에서는 보험계약의 장기성, 보장내용 및 보험료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기반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품설계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보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계약조회,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보험회사들의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외 기준강화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및 호스트기반의 기간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및 보관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향후 전자패드를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구축 등 업무혁신(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관련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기	주 요 추 진 내 용
'70년대 초반 ~ '80년	— 개별 보험사의 자체 사무자동화
'81년 ~ '91년	— 본지점 온라인망 구축
'92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 가동 —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가동 —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시스템 가동 —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물건 배정시스템 가동 —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 시스템 가동 — 생명보험 거절체 자료교환 시스템 가동 — 자동차보험 보유자코드 전산망 조회서비스 및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전산망 조회서비스 구축 — 자동차보험 통합조회시스템, 인보험 통합조회시스템 가동 —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시스템 가동 — 주민등록전산망, 자동차종합민원정보망과의 연계시스템 가동 — 보험사고정보 집적시스템 가동 — 온라인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 — 웹 기반의 자동차이력 정보시스템 가동 — 생명보험 경험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 웹 기반의 보험통계제공시스템 구축 — 손해보험 요율검증 통계시스템 개선 — 퇴직연금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전자 적하보험 중계시스템 구축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확인시스템 구축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 자동차의무보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시스템 구축

제3절 금융정보화 추진 방향

금융부문 정보화 정책의 목표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적합한 선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고객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국민의 금융편의를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편의성 및 범용성이 높은 금융서비스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다. 즉 기존의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접근이 용이한 일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모바일기기 등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채널을 확대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투자성향 등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및 개인간(P2P)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과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유가증권의 발행·관리업무를 전자화하는 등 금융거래수단의 전자화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신기술의 수용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무정지·무장애 운영이 가능한 금융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환경의 변화나 고객접점의 다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고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금융정보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표준화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증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주요 정보화사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MS카드의 IC카드로의 전환을 기존의 '현금카드'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된 '복수기능 카드'로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카드 결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IC카드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불형 결제수단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자국민이 본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로 해외의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간 ATM 공동이용시스템의 연계 대상국가를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에서 유로지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업무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FC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금융정보 저장매체(금융microSD 등)에 대한 표준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수용한 표준화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금융채널의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한편, 금융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금융정보화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정보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금융정보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금융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금융정보화사업 이외에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개별 금융기관별로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고도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통합, 후선업무 집중센터의 도입 등 업무혁신(BPR) 시스템 구축, 고객관계관리(CRM)정보 연결 등의 사업이 있으며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확충 등 대고객채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차세대전산시스템의 도입이 증권, 보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2장

금융정보망의 운영 · 관리

제1절 금융공동망

금융공동망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금융정보망으로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간 각종 금융거래 및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금융공동망은 크게 은행공동망과 비은행공동망으로 나누어진다.

은행공동망은 개별 은행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은행간 각종 거래 및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공동망을 통한 은행간 거래의 정산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은행공동망에는 증권 및 보험부문의 공동망이 있다. 증권부문에서는 코스콤을 중심으로 개별 증권사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공동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매주문 및 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식매매시스템이나 PowerBas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부문에서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1992년 11월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여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신용정보공동망 및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도 있다.

한편 금융공동망은 비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계되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금융공동망과 연결된 외부전산망은 점외 CD/ATM공동망, SWIFT망, 경찰전산망, 종합무역자동화망 등이 있다.

1. 은행공동망

가.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약칭 "CD공동망")은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공동망 참가 금융기관들을 상호 연결하여 이용 고객이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 : Cash Dispenser)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으로 1988년 7월부터 가동되었다.

(1) 참가기관

2011년말 현재 CD공동망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홍콩상하이은행 국내지점 및 15개 금융투자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2) 대상업무

CD공동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현금 입·출금, 예금잔액조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이 있다.

현금인출업무는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현금(또는 수표)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1회 인출한도(100만원 이내), 1일 인출한도(600만원 이내) 등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예금계좌 개설은행이 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외국인 여행자가 국내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 은행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직불카드에 대해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업무는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993년 9월부터 새로운 공동망업무로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현금서비스 업무가 고객 거래은행의 CD/ATM에서만 가능하였으나, CD공동망에 동 업무가 추가된 이후부터 고객은 거래은행 이외의

CD/ATM을 이용해서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계좌이체업무는 고객이 거래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이체를 하거나, 타행 CD/ATM을 이용하여 거래은행내 계좌간 또는 CD/ATM 제공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1994년 2월부터 실시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그간 평일 및 토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계좌이체업무를 자동화코너를 통하여 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 6월부터는 입출금계좌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은행 CD/ATM을 통해서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CD공동망 3자간 계좌이체서비스가 도입되어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1회 이체가능금액(600만원 이내) 및 1일 이체가능금액(3,000만원 이내) 등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각 은행이 정하고 있다.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2011년말 현재 CD공동망업무는 연중무휴로 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 운용하되, 23시 30분부터 익일 07시까지의 운용여부는 참가은행 자율로 결정한다.

종전에는 고객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를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은행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단일 체계로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는 은행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현금인출의 경우 고객이 CD/ATM의 화면지시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따른 거래전문이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계좌개설은행 앞으로 송신된다. 계좌개설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취급은행 지급요청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취급은행 앞으로 지급승낙 메시지를 통보하고 메시지를 수신한 취급은행이 CD/ATM을 통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CD공동망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은행간 자금결제는 거래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한은금융망(BOK-Wire+)를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지급금액에서 수취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액결제된다.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다. 한편 은행간 송금에 따른 지급은행의 자금부담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결제차액에 대하여 자금이득을 얻은 은행이 콜금리 기준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²⁾

(5) 공과금 무인수납기 공동이용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와 공과금 무인수납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무인수납기 운영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과금 무인수납기를 타행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2007년 12월 2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하나, 국민, 신한, 우리, 외환, 기업, SC제일, 대구, 전북, 부산, 수협, 농협, 우체국 등 13개 금융기관이 공동이용 서비스에 참가하고 있다.

(6) 이용실적

(가) CD/ATM 설치현황³⁾

2011년말 현재 CD/ATM수는 118,507대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전체 CD/ATM 기기중 CD가 40.1%, ATM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⁴⁾ 또한 은행들은 창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 무인수납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2011년말 현재 설치된 동 기기수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13,968대이다.

2) 그동안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등의 이용에 따른 은행간 차액결제시 교환부(負)은행(지급액이 수취액보다 큰 은행)이 교환승(勝)은행(수취액이 지급액보다 큰 은행)에게 청산차액 외에 청산차액에 자금부담일수를 곱한 금액(자금적수)만큼 무이자 대출로 보전하고 다음날에 동 보전금액을 회수해 오던 자금적수조정방식을 2001년 3월부터는 자금적수에 대한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3) 국내은행, 외은지점, 우체국금융, 저축기관 및 자동화기기업체 설치 기준

4) CD(Cash Dispenser)는 현금출금을 위한 자동화기기이며,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은 현금의 입·출금이 모두 가능한 자동화기기(그 외 조회, 계좌이체 등은 CD 및 ATM에서 모두 가능)

(단위 : 대)

연말	CD	ATM	합 계	공과금 무인수납기
2006	44,491(△1.3) <51.5>	41,842(10.5) <48.5>	86,333(4.1) <100.0>	8,576(28.7)
2007	46,229(3.9) <49.3>	47,499(13.5) <50.7>	93,728(8.6) <100.0>	9,537(11.2)
2008	46,003(△0.5) <46.9>	52,168(9.8) <53.1>	98,171(4.7) <100.0>	11,678(22.4)
2009	46,404(0.9) <45.7>	55,137(5.7) <54.3>	101,541(3.4) <100.0>	12,577(7.7)
2010	48,283(4.0) <43.8>	62,047(12.5) <56.2>	110,330(8.7) <100.0>	13,073(3.9)
2011	47,530(△1.6) <40.1>	70,977(14.4) <59.9>	118,507(7.4) <100.0>	13,968(6.8)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비중(%)

(나) CD공동망 이용실적

2011년중 CD공동망 총 이용건수는 6억 8,347만건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총 이용금액은 약 303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이중 현금인출은 전년대비 건수기준으로 0.4% 감소하였으며, 계좌이체는 10.4% 증가하였다.

(단위 : 천건, 십억원)

연 중	총이용실적		현금인출 ¹⁾		계좌이체		잔액조회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569,190 (2.7)	224,902 (12.8)	274,474 (△1.3)	55,558 (△0.9)	165,784 (17.6)	169,344 (18.1)	128,932 (△4.7)
2007	590,408 (3.7)	237,822 (5.7)	254,481 (△7.3)	51,131 (△8.0)	188,757 (13.9)	186,691 (10.2)	147,140 (14.1)
2008	618,122 (4.7)	239,816 (0.8)	247,701 (△2.7)	49,886 (△2.4)	218,458 (15.7)	189,930 (1.7)	151,963 (3.3)
2009	631,555 (2.2)	239,465 (△0.1)	240,114 (△3.1)	48,311 (△3.0)	239,770 (9.8)	191,154 (0.6)	151,671 (△0.2)
2010	663,127 (5.0)	277,137 (15.7)	245,480 (2.2)	52,039 (7.7)	266,524 (11.2)	225,098 (17.8)	151,123 (△0.4)
2011	683,469 (3.1)	303,014 (9.3)	244,447 (△0.4)	53,613 (3.0)	294,269 (10.4)	249,401 (10.8)	144,753 (△4.2)

주 : 1)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인출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나.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개별은행의 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국내의 은행간 소액송금업무를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서 1989년 12월에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과거 지로, 송금환을 이용할 경우 2~3일이 소요되던 타행자금이체가 당일중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급결제업무가 빨라져 대고객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1) 참가기관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홍콩상하이은행, 도이치은행, 알비에스은행, 미쓰비시도쿄 UFJ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등의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21개 금융투자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2) 대상업무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현금송금(자기앞수표 포함), 자기앞수표조회 등이 있다.

현금송금은 고객의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송금대금을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지급은행(수취인 거래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 앞으로 즉시 입금해주는 업무이다.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송금이 가능하며 1회 송금한도는 1억원이다.

자기앞수표 조회는 고객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조회를 의뢰받은 은행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동 수표 발행은행의 수표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조회해 주는 업무이다.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고객의 타행환공동망 이용가능시간은 은행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다. 한편 은행 내부의 자체업무처리 등을 위해 타행환공동망의 운용종료시각은 고객의 이용시간이 끝난 후 2시간 뒤로 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단일체계를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 은행별로 자율화 되었다.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을 기초로 의뢰은행에 서면으로 타은행 수취인 계좌로 입금의뢰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의뢰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 앞으로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 앞으로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은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즉시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타행환 송금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

계정에서 지급금액에서 수취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액결제된다.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다.

(5) 이용실적

2011년중 타행환공동망의 총 이용실적은 1억 428만건, 866조원으로 전년대비 건수기준으로 4.1% 감소하였다. 이는 이용수수료가 낮고 이용시간 제약이 없는 인터넷뱅킹의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한편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추심대금 송금은 2010년 11월부터 어음 전자정보교환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이용 실적이 없었다.

<표2-3>

타행환공동망시스템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십억원)

연중	현 금 송 금		추심대금 송금		자기앞수표 조 회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6	181,770	805,890	19	190	736	182,525 (1.0)	806,080 (2.2)
2007	163,899	812,024	17	181	735	164,651 (△9.8)	812,205 (0.8)
2008	134,531	812,377	15	179	949	135,495 (△17.7)	812,556 (0.0)
2009	123,648	803,746	12	157	918	124,578 (△8.1)	803,903 (△1.1)
2010	107,973	814,394	9	90	791	108,773 (△12.7)	814,484 (1.3)
2011	103,561	866,470	-	-	723	104,284 (△4.1)	866,470 (6.4)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다. 직불카드공동망(EFT/POS)

직불카드공동망(EFT/POS :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은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구매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 예금계좌에서 판매자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1996년 2월부터 가동되었다.

직불카드공동망의 구축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매점은 판매대금의 조기입금과 매출증대가 가능해지고 발급기관은 수수료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참가기관

2011년말 현재 직불카드공동망에는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2) 대상업무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국내의 모든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으며 CD/ATM을 통하여 예금의 입출금 및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을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외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도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결제성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카드와 겸용으로 발급된다. 직불카드는 예금잔액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직불카드공동망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8시부터 23시 30분까지이다.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별도의 고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물품판매점에서 직불카드 소지자가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지급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고객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 다음날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용을 집계하여 은행별로 지급·수취해야 할 차액을 계산한다. 동 차액결제대금은 오전 11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결제된다.

(5) 이용실적

2011년말 현재 직불카드 발급매수는 5,120만매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며 가맹점수는 25만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중 이용실적은 79만건, 337억원(일평균 약 2,170건, 9,22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6.6%, 14.4%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카드사 및 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유사한 직불형 지급수단인 체크카드의 이용이 활성화(전년 대비 건수로는 34.0%, 금액으로는 34.1% 증가)된 데 주로 기인한다.

<표2-4> 직불카드공동망 이용실적

(단위 : 천매, 천개, 천건, 억원)

연 말	카드발급매수	가맹점수	이 용 실 적(연중)	
			건 수	금 액
2006	63,432 (2.3)	280 (△5.2)	2,465 (△30.2)	1,130 (△35.1)
2007	62,608 (△1.3)	252 (△10.0)	1,834 (△25.6)	792 (△29.9)
2008	64,319 (2.7)	252 (△0.3)	1,335 (△27.2)	575 (△27.4)
2009	60,114 (△6.5)	251 (△0.4)	1,027 (△23.0)	448 (△22.0)
2010	51,403(△14.5)	249 (△0.7)	950 (△7.6)	393 (△12.2)
2011	51,204 (△0.4)	248 (△0.2)	792 (△16.6)	337 (△14.4)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라.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약칭 “CMS 공동망”)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등이 모든 거래은행과 접속할 필요 없이 CMS센터인 금융결제원이나 1개 은행과의 접속만으로 전체 거래은행의 뱅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6년 5월 가동되었다.

(1) 참가기관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홍콩상하이은행, 도이치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25개 금융투자회사가 CMS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다.

(2) 대상업무

CMS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량자금이체, 실시간 업무 등이 있다.

대량자금의 출금이체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비 등 납부인이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시키는 업무이다. 입금이체는 각종 상품 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가진 다수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이다.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CMS공동망은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지만 이용기관은 업무별로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고객수수료는 거래은행(계좌보유은행)과 이용기관이 별도의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계좌보유은행이

상대은행에 지급하는 은행간 수수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납부하는 이용요금은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는 대가로 서비스 가입시 납입하는 요금과 CMS공동이용업무 및 시스템의 사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인 중계수수료가 있다. 동 요금의 체계 및 수준은 금융결제원 전자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출금이체 서비스의 경우 출금이체 전일 17시까지 금융결제원에 의뢰내역을 전송해야 하며, 출금이체 다음날 3시부터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입금이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입금이체 전일 14시까지 입금의뢰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해야하며 입금이체 당일 16시부터 결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결제일은 출금이체의 경우 출금이체일 다음날이며, 입금이체의 경우에는 입금이체일 당일이다. 자금결제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자금결제일 10시까지 참가기관별 차액결제금액 및 결제지시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으로 전송한다. 이후 한국은행은 참가기관간 차액결제금액을 11시에 해당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결제하고 이를 해당 참가기관에 통보한다.

(5) 이용실적

2011년중 CMS공동망 이용실적은 7억 7,163만건, 117조원(일평균 211만건, 3,20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기준으로 3.1%,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8.5% 증가하였다. 건당 이체금액은 입금이체가 약 40만원이고 출금이체의 경우 약 1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총 이용실적		입금이체		출금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790,497 (11.3)	898,469 (12.3)	62,829 (0.6)	205,597 (△1.3)	727,668 (12.4)	692,872 (17.1)
2007	850,207 (7.6)	1,019,220 (13.4)	71,052 (13.1)	221,350 (7.7)	779,155 (7.1)	797,870 (15.2)
2008	794,689 (△6.5)	1,103,301 (8.2)	81,568 (14.8)	258,799 (16.9)	713,121 (△8.5)	844,502 (5.8)
2009	753,492 (△5.2)	1,020,085 (△7.5)	67,753 (△16.9)	219,138 (△15.3)	685,739 (△3.8)	800,947 (△5.2)
2010	748,553 (△0.7)	1,078,970 (5.8)	62,033 (△8.4)	222,111 (1.4)	686,520 (0.1)	856,859 (7.0)
2011	771,625 (3.1)	1,171,160 (8.5)	67,967 (9.6)	269,235 (21.2)	703,658 (2.5)	901,925 (5.3)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마. 지방은행공동정보망(BANKLINE)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은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뱅크라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가 지방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간을 상호연결하는 공동정보망으로 1997년 6월부터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고객이 지방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입·출금 및 송금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 참가기관 및 대상업무

2011년말 현재 6개 지방은행 모두 지방은행공동정보망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는 입금거래 및 출금거래, 통장정리 및 재발행, 각종 조회, 사고신고, 예금잔액증명 발급 등이 있다.

(2) 운영시간 및 수수료

고객이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로 은행영업시간과 동일하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뱅크라인 통장을 지참하여 입출금하는 경우와 400만원 이내의 학자금 송금인 경우에는 면제되며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참가 지방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3)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고객은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뱅크라인통장용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지방은행 공동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뱅크라인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계좌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4종이 있으며, 동 계좌를 통하여 정기에금,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 등 3종의 저축성 예금계좌와의 연결처리도 가능하다.

고객이 현금을 이용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의뢰은행에 서면 또는 대고객 전산망을 통해 입금지시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지시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 앞으로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 앞으로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 본점은 이에 따라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즉시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진 고객간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날 오전 11시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액결제된다.

(4) 이용실적

2011년중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이용건수는 22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8.6% 감소하였으나, 이용금액은 1조 494억원으로 1.4%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면서 창구거래를 통해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인

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로 대체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2-6>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총 이용실적		입 금		출 금		조 회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6	404 (△9.6)	17,389 (△6.2)	95 (△19.5)	2,614 (△5.2)	133 (△26.9)	14,775 (△6.4)	176 (19.7)
2007	383 (△15.6)	15,767 (△9.3)	80 (△15.8)	2,397 (△8.3)	120 (△9.8)	13,370 (△9.5)	183 (4.0)
2008	347 (△9.4)	13,788 (△12.6)	67 (△16.3)	2,640 (10.1)	101 (△15.8)	11,147 (△16.6)	179 (△2.2)
2009	269 (△22.5)	11,432 (△17.1)	57 (△14.9)	2,336 (△11.5)	82 (△18.8)	9,096 (△18.4)	130 (△27.4)
2010	245 (△8.9)	10,347 (△9.5)	44 (△22.8)	1,881 (△19.5)	74 (△9.8)	8,466 (△6.9)	127 (△2.3)
2011	224 (△8.6)	10,494 (1.4)	40 (△9.1)	1,737 (△7.7)	61 (△17.6)	8,757 (3.4)	123 (△3.1)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바.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기존의 자동응답서비스(ARS : Automatic Response Service)공동망(약칭 “ARS공동망”)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ARS업무 뿐만 아니라 그간 타행환공동망 또는 CD공동망을 통해 제공되던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새로 제공되기 시작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1) 참가기관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홍콩상하이은행,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은행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25개 금융투자회사 등이 참가하고 있다.

(2) 대상업무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계좌이체, 수표사고신고 및 접수, 거래내역 및 잔액조회, 자기앞수표조회, 신용카드조회, 환율조회 등이 있다. 계좌이체 업무는 고객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공동망에 가입한 은행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체한도는 건당 10억원 이내에서 참가은행이 정하고 있다.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전자금융공동망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해서만 대고객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수수료 수준은 각 은행이 정하고 있다.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전자금융공동망의 대고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PC,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금융공동망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에 접속한 후 계좌, 수표, 신용카드 등에 관한 조회 또는 계좌이체를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동 조회 또는 계좌이체 요청을 계좌개설 은행에 송신하고 결과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통지한다.

계좌이체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날 오전 11시에 한은 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액결제된다.

(5) 이용실적

2011년중 전자금융공동망 총 이용건수는 인터넷뱅킹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제약이 없는 이용시간 등을 바탕으로 창구 및 타 서비스 이용 고객을 흡수하면서 전년에 비해 12.3% 증가한 20억 7,204만건을 기록하였

다. 이체금액은 11,175조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다.

<표2-7>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십억원)

연 중	총이용건수 (A+B+C)	계좌이체		조 회 ¹⁾ (B)	물품대금무선결제서비스	
		건수(A)	금액		건수(C)	금액
2006	1,034,799 (13.0)	936,900 (17.3)	4,933,588 (25.8)	83,439 (△19.9)	14,460 (11.1)	5,348 (5.7)
2007	1,231,444 (19.0)	1,152,987 (23.1)	6,079,917 (23.2)	63,505 (△23.9)	14,952 (3.4)	5,896 (10.3)
2008	1,461,189 (18.7)	1,388,088 (20.4)	7,166,690 (17.9)	58,944 (△7.2)	14,157 (△5.3)	5,864 (△0.5)
2009	1,627,593 (11.4)	1,561,606 (12.5)	8,317,362 (16.1)	52,742 (△10.5)	13,245 (△6.4)	6,193 (5.6)
2010	1,844,809 (13.3)	1,782,819 (14.2)	9,584,987 (15.2)	49,094 (△6.9)	12,896 (△2.6)	6,072 (△2.0)
2011	2,072,035 (12.3)	2,015,403 (13.0)	11,174,872 (16.6)	44,129 (△10.1)	12,502 (△3.1)	5,995 (△1.3)

주 : 1) 잔액조회, 무통장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조회 등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증권공동망

금융투자회사들은 1970년대 중반 업무전산화를 시작하면서 코스콤(Koscom)을 중심으로 한 공동망체제로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였다. 현재 코스콤이 구축·운영중인 대표적 공동시스템으로는 금융투자회사를 위한 원장관리·주문전달·기타 증권업무지원 공동시스템인 PowerBase시스템, 거래소 주식매매시스템과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 주가지수선물·옵션매매시스템 등이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9년 3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세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차세대시스템(EXTURE)을 가동하였다. 한국거래소 차세대시스템은 9개분야(채널서비스, 매칭엔진, 매매지원, 청산결제, Reference Data Service, User Interface, 공통기술, 시장인프라, Disaster Recovery)로 나누어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다.

(단위 : 천건)

연 중	Power Base ²⁾	유가증권시장 주식매매 시스템	코스닥 주식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선물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옵션매매 시스템
2006	156,839	530,023	238,572	45,734	313,792
2007	190,474	314,601	311,465	66,321	573,600
2008	1,787,917	.. ³⁾	182,500	.. ³⁾	.. ³⁾
2009	2,070,222	1,494,606	732,039	94,205	1,087,923
2010	2,752,097	566,375	446,016	112,010	1,476,128
2011	2,716,965	1,861,155	881,534	160,297	2,062,892

주 : 1) 체결(약정)건수 기준

2) 2007년중 Base21에서 PowerBase시스템으로 변경

3) 2009년초 시스템 전면교체로 2008년 기초자료가 없어 실적파악 불가능

가. PowerBase

PowerBase는 금융투자회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파생상품, 자산관리, 채권딜링, 투자정보 및 글로벌 트레이딩까지의 모든 IT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업무지원시스템이다.

기존 업무지원시스템인 BASE21(2002년 2월 가동)의 후속모델로 1년 8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7년 2월 시스템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말 현재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사 등 총 64개 기관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나. 유가증권시장 주식매매시스템

유가증권시장 주식매매시스템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접수된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을 자동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문호가의 접수 및 집계, 시장 운영, 매매체결, 심리,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동 시스템은 1988년 3월 최초 가동당시 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0% 정

도를 처리하는데 그쳤으나 1996년 11월에는 전체 거래량의 98%를 처리하는 신시스템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상장종목을 자동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중에는 시스템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시스템에의 무단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운용을 도모하고 토요일 휴장, 매매거래중 단제도(Circuit Breaker) 및 프로그램 호가지연처리(Side Car)제도 등 신규업무를 수용하였다. 또 2000년 6월에는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을 분리한 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리용량도 확대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각종 재난과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체제를 갖추었다.

다.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은 코스닥시장의 주식매매를 자동 매매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1996년 7월에 가동되었다.

2000년 중에는 유가증권시장 주식매매시스템으로부터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을 분리하였으며 비상장·비등록·장외주식 거래의 제도화를 위해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시스템 처리용량을 호가건수 기준으로 일 최대 20만건까지 확대하였다. 동년 10월에는 각종 재난과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체제를 구축하였다.

라. 주가지수 선물매매시스템

주가지수 선물매매시스템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의 주문접수, 매매 체결 및 결제 등을 자동처리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1996년 5월에 가동하였다.

1998년 중에는 선물시스템 기기를 추가로 도입하여 동 시스템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켰다. 또 2002년 9월에는 시스템 처리능력을 일 최대 15만건이던 것을 50만건까지 확대하였다.

마. 주가지수 옵션매매시스템

주가지수 옵션매매시스템은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매매체결 및 결제업무

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관련 시장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1997년 7월에 가동되었다.

1998년에는 동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옵션결제월 종목수 축소나 가격제한폭 변경 등 각종 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투자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였다. 또 2002년 12월에는 시스템 처리능력을 일 최대 50만건에서 150만건으로 확대하여 지연처리 현상을 해소하였다.

바. 기타

그 외에도 거래소 및 장외 채권매매시스템 등이 있다. 거래소 채권매매 시스템은 상장채권의 주문전달, 매매체결, 결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1996년 11월에 가동하였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국고채권 매매의 활성화 및 채권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채 및 일반채권 매매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2년 2월에는 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다.

한편 증권정보시스템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결과로 발생한 시세정보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분석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증권회사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90년 12월에 가동하였다. 1998년중에는 시스템 증설 및 회선 이중화 작업을 통하여 정보조회속도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정보제공 매체도 인터넷,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3. 보 험

보험회사의 공동시스템은 중계센터인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 유관기관 등의 컴퓨터를 상호 접속하여 보험관련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이다. 1992년 5월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1992년 11월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공동망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요 공동시스템으로는 대상업무에 따라 첫째, 자동차보험 분야의 경우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조회, 자동차보험 사고운전자 조회,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물건 배정,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관리, 보유자코드 및 정비공장코드 조회,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산출 및 조회, 자동차보험 통합조회, 수리비보험금 청구시스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공동관리,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등이 있고, 둘째,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적하보험 증계, 적하 및 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 근재보험 할인할증을 조회 등이 있으며 셋째, 기타분야로 인보험통합조회, 보험사고정보 제공, 자동차 이력 정보제공, 기초통계 자료교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확인 등이 있다.

<표2-9> 보험회사 공동시스템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조회 ¹⁾	자동차종합보험 할인·할증 조회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	자동차보험 사고운전자 조회 ²⁾
2006	9,116 (1,493.7)	488,690 (△8.0)	5,400 (20.2)	571 (31.3)
2007	15,802 (73.3)	455,810 (△6.7)	5,550 (2.7)	777 (36.1)
2008	17,241 (9.1)	575,477 (26.3)	4,746 (△14.5)	4,479 ³⁾ (476.4)
2009	26,889 (56.0)	741,338 (28.8)	5,277 (11.2)	6,465 (44.3)
2010	38,191 (42.0)	962,635 (29.9)	5,251 (△0.5)	26,935 (316.6)
2011	49,151 (28.7)	1,123,003 (16.7)	7,982 (52.0)	54,186 (101.2)

주 : 1) 2005년 이전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서비스 실적.
2006년 이후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조회'실적임
2) 2006년 이전은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조회 포함
3) 신규 보험회사 참여 및 보험인수 심사 강화 등으로 큰 폭 증가
4)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가. 자동차보험

(1)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 조회시스템

1992년 11월 보험업계 최초의 공동시스템으로 구축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은 사고발생시 종합보험 가입회사에서 사고처리 후 책

임보험 가입회사로 보험금을 구상하기 위해 해당 책임보험 가입회사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회사에 대한 유선 확인 등 중복업무를 제거하였다. 2006년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조회'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 대신 이용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개별 및 단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서비스는 종합보험의 계약, 사고, 배서, 적용률, 갱신률 등을 조회하여 온라인으로 타사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3년 6월에 구축되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타사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졌다. 자동차보험 단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의 단체업체별 실적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99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3) 자동차보험 사고운전자 조회시스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해당운전자의 중복여부와 과거 사고기록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적정한 주운전자를 선정하는 등 보험계약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995년 5월에 구축되었으며, 이후 피보험자 중심으로 보험요율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2006년 사고운전자 조회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4)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물건 배정시스템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의 일반물건 또는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하기를 거절한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을 보험회사간 합의된 배분비율 및 순번 등 일정기준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 배정하고, 동 보험회사는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불량보험계약자의 무보험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5년 5월에 구축되었다.

(5)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1995년 12월에 도입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통보업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정보종합망과의 연계를 통해 2002년 1월 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 전산망 구축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대인배상II 미가입자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5년 2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물보험 가입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다. 2011년말 현재 14개 손해보험회사, 5개 공제조합, 전국 시·군·구청 등 총 228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6) 보유자코드 및 정비공장코드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가입업체별 코드 및 정비공장별 코드를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계약 및 보상업무와 할인·할증 실적평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1997년 2월 가동되었다.

(7)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산출·조회시스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보험정보망을 통해 피보험자별 보험가입경력을 조회해주는 시스템으로 1997년 5월에 구축되었다.

(8) 자동차보험 통합조회시스템

개별 보험사가 보험정보망을 활용하여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고·적용률 등 개별조회시스템을 통합하여 1998년 7월부터 가동되었다.

(9) 수리비보험금청구시스템

보험사고차량 관련 수리업체(정비공장, 부품대리점, 유리 및 렌트업체 등)를 인터넷으로 연계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접수 및 완결사항 조회, 수리비 청구 및 지급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2003년 8월부터 가동되었다.

(10)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공동관리시스템

개별 보험사가 보험차보험 승용차요일제 특약의 약정요일 준수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2010년 5월부터 가동되었다.

(11)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시스템

개별 계약자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여부 및 환급액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2012년 1월부터 가동되었다.

나. 일반손해보험

(1) 전자 적하보험 증계시스템(청약 및 증권발급, 배서)

보험개발원의 EDI증계시스템을 이용하여 EDI형식으로 보험사와 무역업체간 적하보험 청약서, 증권발급통지서를 수수, 배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1995년 5월 적하보험 EDI증계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수출입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인력·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후,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06년 12월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연계 등 통합 전산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 적하보험 증계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였다.

(2) 적하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시스템

각 손보사가 인수한 적하·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를 매월 보험개발원에 전송하고 보험개발원은 이를 취합하여 참여사별로 공동인수 보험을 분류하여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의 마감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1997년 1월에 가동되었다.

(3) 근재보험 할인할증률 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근재보험⁵⁾ 계약자별 할인할증률 자료를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고 관련 실적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1997년 8월에 가동되었다.

다. 기 타

(1) 인보험통합 조회시스템

기존의 계약자조회시스템을 확장하여 장기보험의 계약·사고자료, 상해보험의 계약·사고자료, 자동차보험의 계약·피해자자료 등 인보험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1999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5)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근로자 재해 보험상품

(2) 보험사고 정보시스템

손·생보사의 보험종목별 사고관련 정보(Claim 정보)를 보험개발원의 교환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일일 집적하고, 보험회사에 해당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시스템으로 2001년 6월부터 정식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은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공동대처, 보험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조사전담팀(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자료출력 및 차량검색 기능,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3월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한 SIU용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plus)을 확충하였다.

(3) 자동차 이력정보시스템

자동차 이력정보시스템은 중고자동차 품질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를 중고차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2003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중고차 거래시 이전 소유자의 법률적, 행정적 문제점은 등록원부 공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기계적, 물리적 손상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차보험사고자료 이외에 자동차등록정보와 차량기준가액관련 자료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기초통계 자료교환시스템

손·생보사와 보험개발원간 비정형화된 보험관련 기초통계 자료교환 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집적기간 단축 등 업무효율성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2004년 1월 손보사용 자료교환시스템을, 동년 9월에는 생보사용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확인시스템

보험개발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간 실손의료보험 집적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보험회사 등에서 중복가입 및 비례보상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2009년 10월부터 가동되었다.

4. 기 타

가.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PG : Payment Gateway)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대금결제를 실시간으로 중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 주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확충하고 금융기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이 중계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2000년 12월부터 가동되었다.

(1) 참가기관

2011년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및 17개 금융투자회사 등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공공기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용하고 있다.

(2) 대상업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PG)은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PG, 계좌이체PG, 통신과금서비스(유·무선전화결제)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3) 이용시간 및 수수료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

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PG의 경우 연계된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사용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PG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전자상거래업체 등 가맹점이 PG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PG서비스의 업무처리 절차는 지급수단별로 상이하다.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PG를 통해 지급결제절차가 수행된다.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과 VAN사업자 사이에서 거래 및 승인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며 이후의 절차는 오프라인에서의 VAN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 지급결제절차와 동일하다. 통상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가맹점에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대략 3~10일 정도 소요된다.

은행과 직접 연계하여 계좌이체 PG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 LG데이콤, 이니시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며 그 외의 PG업자들은 동 4개 업체와 연계하여 계좌이체PG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정산대행 업무 없이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LG데이콤 등은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각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를 통한 정산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3월 이전까지 유·무선전화결제 PG로 불리던 통신과금서비스는 구매자가 상품구매 대금을 유·무선 전화료 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전화결제 PG업자는 통신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구매대금이 통신요금에 합산 고지되어 납부되므로 정산 완료까지 많은 시일(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무선전화결제방식, 사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결제절차를 수행하는 ARS결제방식,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결제하는 폰빌(phone bill)결제방식, 초고속인터넷 ID 사용료에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초고속인터넷 ID결제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이용실적

2011년중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이용실적은 3,972만건, 1조 4,4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2.0% 및 30.5%가 증가하였다.

<표2-10>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이용실적 주이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건 수	금 액
2006	24,326 (26.8)	3,629 (57.7)
2007	28,799 (18.4)	5,386 (48.4)
2008	30,014 (4.2)	6,547 (21.6)
2009	33,150 (10.4)	8,695 (32.8)
2010	35,474 (7.0)	11,097 (27.6)
2011	39,719 (12.0)	14,481 (30.5)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나. 신용정보공동망

1995년 4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정보공동망은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갱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974년부터 오프 라인으로 운영되다가 1997년 1월 온라인망이 가동되었다. 2003년부터는 본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CREDIT4U」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신용정보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제2절 대고객정보망

대고객정보망은 고객이 컴퓨터, 전화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네트워크이다.

대고객정보망의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업무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객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금관리, 송금, 증권매매, 보험계약, 금융경제정보 입수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1. 은행⁶⁾

가. 텔레뱅킹 서비스

텔레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식 전화기를 통하여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직원과 통화함으로써 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 및 Fax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각종 조회, 분실신고 등은 거래은행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가능하지만 자금이체, Fax통지 서비스 등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텔레뱅킹은 이용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보다 저렴하게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우체국 및 홍콩상하이은행 국내지점 등이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중 이용실적은 25억 6,110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17.3% 증가하였다. 내역별로는 각종 조회가 20억 9,560만건으로 81.8%, 자금이체가 4억 1,311만건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6) 우체국금융 및 외은지점 포함

<표2-11>**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이용실적		
					각종조회	자금이체	기 타
2006	19	27,150 (5.0)	11,815 (△2.6)	1,381,421 (△0.9)	927,127 <67.1>	386,127 <28.0>	68,167 <4.9>
2007	19	28,761 (5.9)	10,177 (△13.9)	1,530,734 (10.8)	1,061,304 <69.3>	395,638 <25.8>	73,792 <4.8>
2008	19	30,950 (7.6)	12,267 (20.5)	1,447,108 (△5.5)	970,390 <67.1>	417,057 <28.8>	59,661 <4.1>
2009	19	34,513 (11.5)	12,471 (1.7)	2,302,601 (59.1)	1,834,382 <79.7>	415,980 <18.0>	52,239 <2.3>
2010	19	36,762 (6.5)	12,971 (4.0)	2,184,278 (△5.1)	1,704,687 <78.0>	409,497 <18.7>	70,094 <3.3>
2011	19	38,919 (5.9)	12,810 (△1.2)	2,561,096 (17.3)	2,095,598 <81.8>	413,113 <16.1>	52,385 <2.1>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표2-12>**텔레뱅킹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조회	예금	. 입금, 출금, 입출금명세 조회 . 예금잔액조회 .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의 통장번호 조회 . 계좌이체 및 예약이체 결과확인 조회
	신용카드	. 결제대금, 사용한도,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거래명세, 결제통장번호 등 조회
	기타	. 자기앞수표, 환율, 대출금이자 및 원리금 조회
자금이체	계좌이체	. 자행 및 타행 계좌이체, 대출금이자 납부, 지로대금 납부 등 . 예약이체 및 취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체
분실신고		. 통장 및 인감,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전화 및 팩스통지 서비스		. 입금명세 전화통지 및 전화통지서비스 취소 . 입출금명세, 신용카드 이용명세, 환율 Fax통지
텔레뱅킹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안내, 비밀번호, 초기등록, 비밀번호 변경, 텔레뱅킹서비스 해지 등
텔레뱅킹 론		

한편 은행들은 텔레뱅킹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콜센터를 구축하여 전화를 매체로 고객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표2-13> 은행의 콜센터 운영 현황

연 말	서비스 제공 기관수(개)			근 무 인 원(명)			
	고객DB 구축	고객통화 녹취	통합안내	합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리직
2009	17	18	14	8,180	5,347	2,271	562
2010	17	19	15	8,587	5,741	2,201	645
2011	16	19	15	6,985	4,986	1,615	384

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인터넷뱅킹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은행업무를 원격지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인터넷뱅킹은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은 아니며 기존의 지점, CD/ATM, 전화기, PC통신 등과 같이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로(delivery channel)중의 하나이다. 휴대전화나 PDA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도 인터넷뱅킹서비스의 일종이다.

1995년 10월 세계 최초로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이래 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각종 금융상품정보의 제공, 홍보 등에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는 1999년 7월 신한, 한미, 주택은행 등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홍콩상하이, BANK OF AMERICA, JP모간체이스 및 도이치은행 국내지점 등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모바일뱅킹 등록고객 및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 등록한 고객수 포함)는 7,482만명이다. 2011년중 이용건수는 142억

4,322만건으로 전년대비 17.0% 증가하면서 인터넷뱅킹이 가장 주요한 금융서비스 채널로 이용되고 있다.

<표2-14>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개, 천명, 천건)

연 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정보조회	자금이체	대출
2006	21	35,912 (34.3)	16,618 ¹⁾ (35.5)	4,672,755 (16.7)	3,867,448 <82.8>	804,614 <17.2>	693 <0.0>
2007	21	44,699 (24.5)	18,067 (8.7)	6,526,922 (39.7)	5,528,577 <84.7>	997,622 <15.3>	723 <0.0>
2008	21	52,595 (17.7)	20,832 (15.3)	8,208,557 (25.8)	6,989,364 <85.2>	1,218,298 <14.8>	895 <0.0>
2009	22	58,994 (12.2)	29,287 (40.6)	9,686,307 (18.0)	8,435,651 <87.1>	1,249,919 <12.9>	737 <0.0>
2010	22	66,502 (12.7)	32,013 (9.3)	12,174,642 (25.7)	10,657,338 <87.5>	1,516,851 <12.5>	453 <0.0>
2011	22	74,817 (12.5)	36,142 (12.9)	14,243,218 (17.0)	12,512,598 <87.9>	1,730,095 <12.1>	525 <0.0>

주 : 1) 2007년 6월말 기준 실이용고객수임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나 PDA 등 이동통신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동 서비스는 통신회사가 은행에 무선결제 플랫폼(휴대전화를 금융서비스 전달경로로 활용)을 제공하고 은행이 고객정보와 대금결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 및 무선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인터넷뱅킹보다 공간적 제약이 적고 이동성이 매우 좋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1992년 핀란드의 Finland Nordea 은행이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에 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효시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9년 Nokia와 공동으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에 기반을 둔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국내의 경우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1999년 11월 농협이 국내 최초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초기에 메뉴검색방식에 의한 다단계의 복잡한 이용절차, 통신요금 부담 등으로 이용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3년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IC칩(Bank ON, M뱅크, K뱅크)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서비스 및 2007년 4월 출시된 VM뱅킹서비스를 통해 이용실적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 12월 하나은행을 필두로 각 은행들이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이용도 급성장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에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2,372만명이다. 2011년중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106.0% 증가한 28억 939만건으로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른 금융서비스 채널이다.

<표2-15>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천건)

연말	등록고객수 ¹⁾ (연말)	이용실적 (연중)	이용현황	
			각종조회	자금이체
2006	2,978,870 (60.0)	162,773 (55.6)	133,789 <82.2>	28,984 <17.8>
2007	5,009,336 (68.2)	261,158 (60.4)	218,378 <83.6>	42,780 <16.4>
2008	8,477,141 (69.2)	387,115 (48.1)	328,872 <85.0>	58,244 <15.0>
2009	11,167,825 (31.7)	628,175 (62.4)	533,697 <85.0>	94,478 <15.0>
2010	15,747,573 (41.0)	1,363,694 (117.1)	1,216,743 <89.2>	146,951 <10.8>
2011	23,719,740 (50.6)	2,809,387 (106.0)	2,529,684 <90.0>	279,703 <10.0>

주 : 1) 이동통신사별 중복가입자 포함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2. 증 권

가. 폰 트레이딩

폰 트레이딩은 전자식 전화기를 이용하여 증권 매매, 주식시황 등의 정보 획득 및 기타 증권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화를 이용한 증권거래 시스템은 코스콤이 운영하는 공동 ARS시스템과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구축한 폰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으며 시세정보 등 정보 조회, 주식매매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이후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의 판매호조에 따른 주식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폰 트레이딩 이용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인터넷트레이딩 이용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2-16>

폰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개, 천건)

연중	실시기관수	이용건수 ¹⁾
2006	29	373,973
2007	29	320,175
2008	30	296,066
2009	27	224,737
2010	27	130,207
2011	27	76,965

주 : 1)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통지 및 안내 등의 합계

나. 인터넷 트레이딩

인터넷 트레이딩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시세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매매, 청약 등을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트레이딩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는 홈트레이딩(HTS: Home Trading Service)방식과 인터넷 웹브라우저(MS 익스플로러 등)를 이용해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는 웹트레이딩(WTS: Web Trading Service)방식이 있다.

홈트레이딩 방식은 2011년말 현재 35개 금융투자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2,074만명,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362만명 정도이다. 2011년중 이용실적은 152억 9,842만건이며 그중 주식매매주문은 18억 1,484만건으로 전년대비 84.4% 증가하였다.

<표2-17> 홈트레이딩방식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 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조회	자금 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6	29	8,036,310 (23.7)	1,984,289 (31.3)	7,599,586 (9.1)	7,116,618	8,612	471,643	2,713
2007	30	11,984,719 (49.1)	3,034,247 (52.9)	8,173,816 (7.6)	7,472,468	38,250	663,052	45
2008	33	15,798,279 (31.8)	3,450,373 (13.7)	10,073,544 (23.2)	8,673,989	28,808	1,143,902	226,845
2009	33	13,989,425 (△11.4)	3,369,329 (△2.3)	10,437,014 (3.6)	8,664,195	96,925	999,128	676,766
2010	34	16,169,771 (15.6)	3,292,616 (△2.3)	16,178,926 (55.0)	14,744,091	69,377	984,316	381,142
2011	35	20,742,535 (28.3)	3,619,698 (9.9)	15,298,415 (△5.4)	12,906,195	28,988	1,814,840	548,392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웹트레이딩 방식은 2011년말 현재 27개 금융투자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 2,005만명, 연중 실이용고객수 327만명, 총 이용건수는 14억 1,726만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하였다.

<표2-18>

웹트레이딩방식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6	23	5,125,934 (18.9)	972,655 (94.9)	246,320 (2.4)	206,303	4,622	35,387	8
2007	25	8,086,961 (57.8)	2,789,578 (186.8)	645,154 (161.9)	563,580	17,613	63,150	811
2008	24	9,815,850 (21.4)	3,008,502 (7.8)	846,073 (31.1)	731,543	30,548	80,193	3,789
2009	22	12,884,565 (31.3)	2,909,991 (△3.3)	860,274 (1.7)	671,780	36,675	131,619	20,200
2010	26	15,038,127 (16.7)	3,201,051 (10.0)	1,584,017 (84.1)	963,546	38,326	559,713	22,432
2011	27	20,051,102 (33.3)	3,265,322 (2.0)	1,417,262 (△10.5)	1,235,418	93,802	75,989	12,053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다. 모바일 트레이딩

모바일 트레이딩(mobile trading)은 휴대용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및 PDA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매체로 이용하는 증권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2011년말 현재 증권거래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는 17개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및 PDA를 이용한 서비스는 각각 27개 및 21개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중 실이용고객수는 97만명으로 전년대비 52.6% 증가하였으며, 이용실적도 21억 2,648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269.4% 증가하였다.

<표2-19>

모바일 트레이딩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이동통신 기기	실시 기관 수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9	전용단말기	16	39,659 (△54.8)	30,847 (△24.6)	28,531	0	2,316	0
	휴대전화	20	258,355 (64.4)	395,559 (△4.7)	375,270	858	19,382	49
	PDA	20	23,760 (△12.4)	21,680 (△23.8)	15,254	953	5,291	182
	계	-	321,774 (18.3)	448,086 (△7.5)	419,055	1,811	26,989	231
2010	전용단말기	18	10,434 (△73.7)	9,889 (△67.9)	6,787	4	2,958	140
	휴대전화	24	503,158 (94.8)	486,557 (23.0)	442,155	1,126	39,629	3,647
	PDA	20	119,992 (405.0)	79,247 (265.5)	58,943	62	18,400	1,842
	계	-	633,584 (96.9)	575,693 (28.5)	507,885	1,192	60,987	5,629
2011	전용단말기	17	21,911 (110.0)	5,180 (△47.6)	2,871	2	1,193	1,114
	휴대전화	27	710,944 (41.3)	1,919,586 (294.5)	1,652,283	5,292	155,375	106,635
	PDA	21	234,020 (95.0)	201,711 (154.5)	182,225	1,875	14,823	2,789
	계	-	966,875 (52.6)	2,126,477 (269.4)	1,837,379	7,169	171,391	110,538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 보 험

가.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구축한 텔레마케팅시스템은 별도로 없으며 개별 보험회사가 구축한 콜센터를 중심으로 마케팅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말 현재 38개 기관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중 이용실적은 1억 3,329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계약 및 대출 체결 건수는 1,283만건으로 전년보다 29.7% 감소하였다.

<표2-20>

보험회사 텔레마케팅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연 중	합 계	조 회			체 결			상품안내	기 타 ¹⁾
		소 계	보험계약	대 출	소 계	보험계약	대 출		
2006	133,471 (42.0)	85,503 (36.8)	62,127	23,376	8,682 (47.5)	6,379	2,303	18,758 (14.7)	20,528 (123.1)
2007	143,617 (7.6)	76,407 (△10.6)	64,723	11,684	25,231 (190.6)	23,327	1,904	28,334 (51.1)	13,645 (△33.5)
2008	140,633 (△2.1)	84,143 (10.1)	70,022	14,121	19,522 (△22.6)	17,557	1,965	15,522 (△45.2)	21,446 (57.2)
2009	136,726 (△2.8)	84,247 (0.1)	74,334	9,913	17,931 (△8.1)	8,961	8,970	10,217 (△34.2)	24,331 (13.5)
2010	109,978 (△19.6)	44,627 (△47.0)	33,519	11,108	18,266 (1.9)	14,119	4,147	9,578 (△6.3)	37,507 (54.2)
2011	133,286 (21.2)	46,198 (3.5)	36,423	9,775	12,834 (△29.7)	8,408	4,426	25,082 (161.9)	49,172 (31.1)

주 : 1) 일반 안내서비스, 마감후 거래 등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편, 2011년말 현재 보험회사의 콜센터 근무인원은 15,476명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다.

<표2-21>**보험회사의 콜센터 운영 현황**

연 말	서비스 제공 기관수(개)			근 무 인 원(명)			
	고객DB 구축	고객통화 녹취	통합안내	합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리직
2009	34	37	17	17,035	7,354	8,420	1,261
2010	31	38	14	12,364	6,741	4,690	933
2011	27	38	13	15,476	8,485	5,650	1,341

나. 인터넷보험마케팅

인터넷보험마케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마케팅,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전송,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1년말 현재 22개 생명보험회사 및 16개 손해보험회사가 인터넷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4,729만명에 이르고 있다. 2011년중 실이용고객수는 1,196만명, 이용실적은 8억 1,016만건이며 이 중 보험체결 및 대출체결 건수는 1,926만건으로 전년보다 96.6% 증가하였다.

<표2-22>**인터넷 보험마케팅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 조회	자금 이체	보험 체결	대출 체결	기 타
2006	34	20,729,079 (44.0)	6,461,505 (6.2)	100,156 (11.4)	95,709	832	1,584	703	1,328
2007	37	21,648,195 (4.4)	9,027,940 (39.7)	159,175 (58.9)	148,871	1,432	3,114	3,178	2,580
2008	38	28,507,627 (31.7)	11,235,395 (24.5)	295,540 (85.7)	271,908	3,372	7,945	2,466	9,849
2009	37	44,261,700 (55.3)	10,298,655 (△8.3)	287,268 (△2.8)	274,696	1,952	7,370	2,789	461
2010	37	43,732,873 (△1.2)	16,638,437 (61.6)	761,766 (165.2)	746,512	4,536	5,340	4,459	919
2011	38	47,287,461 (8.1)	11,956,057 (△28.1)	810,160 (5.8)	778,411	9,313	7,935	11,325	924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제3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정보망의 연계

199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각 분야별로 구축된 정보망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중복 투자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망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점외 CD/ATM공동망, 종합무역자동화망, SWIFT, 경찰전산망 등 외부정보망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점외 CD/ATM공동망

점외 CD/ATM공동망은 은행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도 CD/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금융(주)이 설치·운영하는 CD/ATM 네트워크를 금융정보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에 연결한 네트워크로 1993년 10월부터 가동하였다.

은행들은 CD/ATM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동 공동망을 통해 은행 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참가기관

점외 CD/ATM공동망에는 2011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9개 금융투자회사 등이 참가하고 있다.

나. 대상업무

점외 CD/ATM공동망은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현금인출과 잔액조회업무만 취급하였으나 1999년 1월 및 2월에는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서비스 및 현금서비스업무가 각각 추가되었다.

점외 CD/ATM공동망을 이용한 현금인출한도는 대부분 1회 30만원이며 1일 인출한도는 각 참가은행별로 CD공동망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다. 운영시간 및 수수료

2011년말 현재 예금지급 서비스는 은행별 시스템 점검시간(약 1시간)외에는 상시 이용가능하다.

고객의 현금인출 수수료와 수수료 배분기준은 한국전자금융(주)과 개별은행의 협의하에 결정되고 있는데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대체로 타행인출 수수료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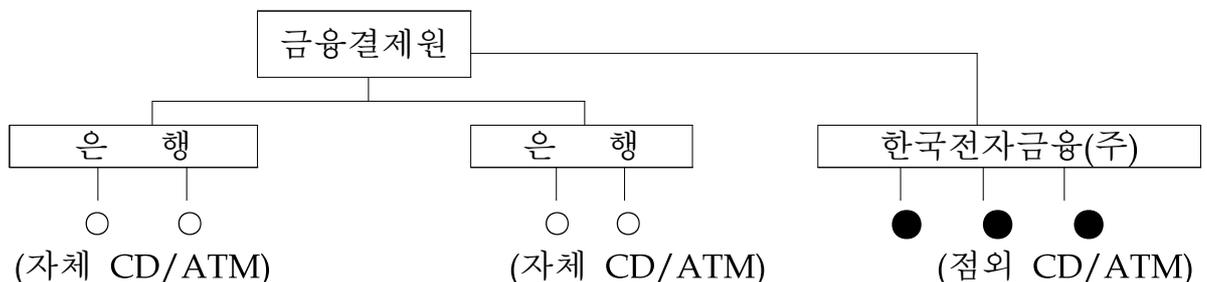
라.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한국전자금융(주)이 지하철역, 백화점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한 CD/ATM에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선택하면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해당은행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전자금융(주)은 매일 다음날의 CD/ATM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 은행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결제원에 송부한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동 회사 거래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수취할 금액과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CD공동망 이용과 관련한 은행간 자금결제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한국전자금융(주)은 매월 단위로 각 은행에 수수료 청구명세를 작성·송부하여 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림2-1>

네트워크 구성도



마. 이용실적

2011년중 점외 CD/ATM공동망에 접속된 기기 1대당 일평균 현금인출 이용실적은 19회 정도이며, 1회 현금인출 금액은 평균 15.9만원으로 CD공동망(21.9만원)의 약 73% 수준이다. 이는 점외 CD/ATM공동망의 설치지역이 고객의 내왕이 잦은 공공장소라는 특성상 주로 소액인출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2-23>

점외 CD/ATM공동망 이용 실적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설치대수 (연말)	현 금 인 출		
		건 수	금 액	건당이용금액(천원)
2006	2,509	34,136	39,281	115
2007	3,993	30,884	34,514	112
2008	4,610	32,177	37,042	115
2009	5,347	32,978	39,165	119
2010	5,809	35,038	42,789	122
2011	6,341	43,562	69,167	159

2. 종합무역자동화망

종합무역자동화망은 수출입업무 관련절차의 자동화 및 즉시 처리, 무역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무역업체와 은행, 보험회사, 무역관련 정부기관, 운송업체 등 무역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종합무역자동화망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국내은행이 1992년부터 공동 개발하여 1994년 1월 가동되었다. 은행은 신용장 통지 및 개설, 수출입 승인 및 수출입관련 대금결제업무를 EDI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별은행 시스템을 금융결제원(무역망접속센터)을 통해 한국무역정보통신 정보망과 연결하였다. 이어 1995년 7월에는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추가 지정된 데이콤(DACOM) 정보망을 무역망접속센터에 연결함으로써 무역업체 및 관련기관의 업무편의가 한층 증대되었다. 2011년말 현재 종합무역자동화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은 18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이다.

한편 무역업체는 총 72개 단위업무(수출 46개, 수입 26개)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금융공동망과 연계함으로써 대금결제 관련 비용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금융사무가 빠르게 처리되어 상품의 인도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걸쳐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2011년중 은행들의 종합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건수는 1,377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표2-24> 은행의 종합무역자동화망 이용실적 주이

(단위 : 천건)

연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용 건수	11,945 (4.8)	12,651 (5.9)	12,354 (△2.3)	11,901 (△3.7)	13,172 (10.7)	13,765 (4.5)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 SWIF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국제금융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은행간 국제데이터정보통신망으로서 해외은행간 자금결제 및 메시지 교환을 신속·저렴·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교환 규모의 증가에 따른 메시지표준의 필요성과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무역관련 업무, 은행간 자금이체, 외환거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1992년 3월 동 시스템에 가입하였다.

2004년 12월부터는 SWIFT 이용을 위한 통신방식을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을 통해 SWIFT망에 접속하던 방식에서 국내 개별금융기관들이 직접 SWIFTnet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1년말 현재 국내 SWIFT 가입기관은 총 81개이다.

SWIFT를 통한 통신메시지 종류로는 서비스메시지, 시스템메시지 및 은행간 메시지가 있다. SWIFT 이용실적은 경기부진으로 국제금융거래가 위축되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중 처리실적은 3,782만건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하였다.

<표2-25> SWIFT 이용실적¹⁾

(단위 : 천건, 개)

연 중	2006	2007	2008	2009	2010r	2011
이용실적 ²⁾	22,742 (11.8)	26,226 (15.3)	28,645 (9.2)	28,165 (△1.7)	33,940 (20.5)	37,820 (11.4)
가입기관수 (연말)	67	68	72	72	77	81

주 : 1) 메시지 송신 기준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4. 경찰전산망

현금카드, 통장 등의 도난·분실이 금융관련 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1991년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구축방안'을 의결한 뒤 CD공동망과 경찰전산망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1993년 2월 CD공동망과 경찰전산망 접속을 완료함에 따라 미리 신고된 은행계좌의 부정사용자가 CD/ATM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사고계좌 번호, 인출장소, 시간 등 관련정보가 즉시 경찰관서에 온라인으로 통지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있다.

동 시스템의 가동시간은 CD공동망과 동일한 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이다. 2011년중 CD공동망을 통해 관련정보가 경찰전산망에 통지된 건수는 9,170건이다.

<표2-26> CD공동망 이용정보의 경찰전산망 통지실적

(단위 : 건)

연 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용건수	642	4,165	6,125	6,612	6,091	9,170

제3장

2011년중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제1절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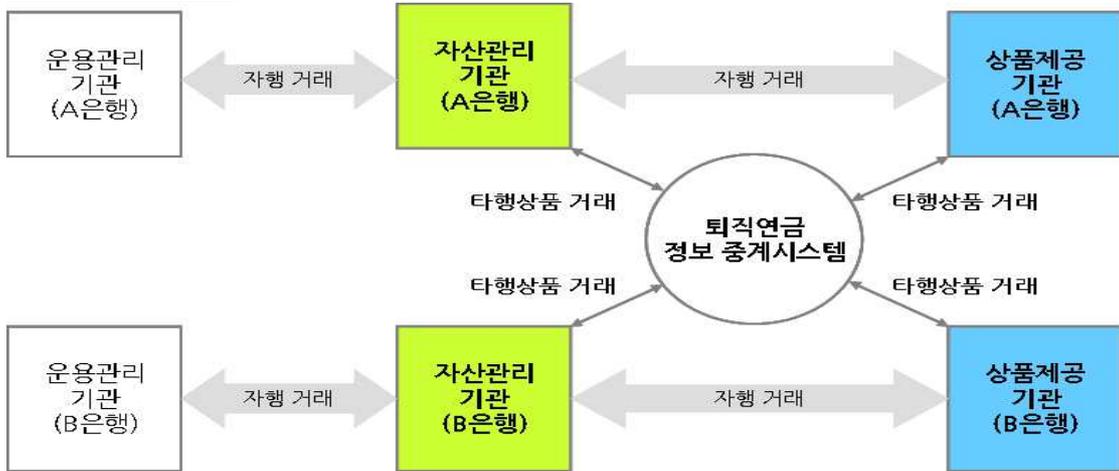
1. 사업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에 대하여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예·적금, 자사 ELS 등)을 과도하게 편입함에 따라 고금리 과열 경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년 10월 19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수탁받는 금융회사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투자상품 편입 비율을 70% 이내로 제한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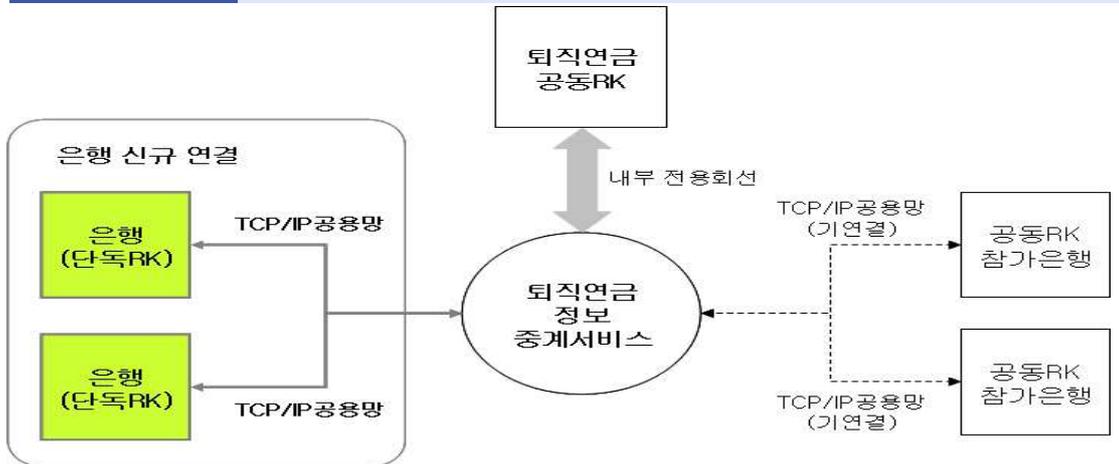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타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1년 11월 3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로 퇴직연금사업자의 타사 원리금 보장상품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사 원리금 보장상품 정보, 상품매매 등 운용지시 정보를 참가기관간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중계시스템을 은행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림3-1> 퇴직연금 정보중계 흐름도



사업시행은 금융결제원에 위탁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은 중계기관으로서 기 구축된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 운영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퇴직연금사업자 17개 참여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에 연결하여 타사 상품 매매를 위한 전문을 중계하고 송신기관이 중계시스템에 전문을 송신한 후 중계시스템이 다시 수신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문을 중계한다.

<그림3-2> 시스템 구성도



2. 추진경과 및 평가

2011년 11월 3일 2011년도 제4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하였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중계정보의 범위, 보안대책의 확보 등 세부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시스템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2011년 12월 1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 공동 구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 구축된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시스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은행공동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절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 제정

1. 사업 개요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자동화기기 제조사의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CD/ATM 응용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유럽 표준위원회(CEN :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에서 제정한 CEN/XFS (CEN/eXtensions for Financial Services)를 채택하고 있다. 동 표준은 CD/ATM의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간의 통신을 위하여 정의된 공통 언어로 서로 다른 자동화기기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상적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CD/ATM 응용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공통의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국내 환경에 특화된 지로, 공과금 수납 등의 기능은 CEN/XFS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제조사별로 상이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여 CD/ATM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가 복잡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검수 및 CD/ATM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 CD/ATM 제조사,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 표준은 CD/ATM 제조사가 국내환경에 적합한 자동화기기를 제작시 참조할 수 있도록 CEN/XFS에 기 정의된 센서류, 카메라, 장표(지로, 공과금)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CD/ATM 전면부에 형광표시 등의 방법으로 보조적인 정보(광고, 안내 등)를 출력할 수 있는 보조정보표시장치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총 5부의 부속 표준으로 구성하였다. 표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부 기본 요구사항
: 국내 환경에 특화된 기능(지로, 기기 관리 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CEN/XFS에 추가되는 서브클래스 식별정보, 에러 포맷 등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의한다.

- 제2부 센서류 인터페이스
 - : CD/ATM의 상태를 시스템상태표시장치 및 원격감시장치에 통보하는 등 국내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CEN/XFS의 센서 및 표시기 서비스 클래스(SIU : Sensors and Indicator Unit device class)에 추가되는 명령어들을 정의한다.
- 제3부 카메라 인터페이스
 - : 이미지 처리만 가능했던 기존 CD/ATM에 장착된 카메라 장치를 위한 CEN/XFS 인터페이스에 동영상 처리를 위해 필요한 녹화 제어 및 이미지 추출 등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CEN/XFS의 카메라 클래스(CAM : CaMeRa device class)에 추가되는 명령어들을 정의한다.
- 제4부 장표처리 인터페이스
 - : 지로/공과금 장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CEN/XFS의 장표처리 클래스(IPM : Item Processing Module device class)에 확장되거나 추가되는 명령어들을 정의한다.
- 제5부 보조정보표시장치 인터페이스
 - : CD/ATM 전면부에 형광표시 등의 방법으로 광고, 안내 등 보조적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부착된 보조정보표시장치를 제어 위해 추가된 보조정보표시장치 클래스(VFD : Vacuum Fluorescent Display device class)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정의한다.

2. 추진경과 및 평가

2009년 4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CD/ATM, 모바일뱅킹 등 각종 금융채널의 이용과 관련된 표준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금융표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표준안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동 표준은 2010년 11월 금융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금융표준 전담기관에 표준개발을 위탁하였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안 개발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표준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각 은행 및 자동화기기 제조사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은행, CD/ATM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동 표준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2년 1월 17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화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동년 2월 16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이 제정되었다.

동 표준의 제정으로 향후 서로 다른 CD/ATM 제조사가 개발한 자동화기기 간의 호환성이 확보되고, 기기 개발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개정

1. 사업 개요

2008년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동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및 고령자들에게 차별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무는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각각 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배려한 제품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0.6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금융자동화기기 이용 편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하여 전자금융서비스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총 장애인구의 50% 수준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이동보조기구에 대한 자동화기기 접근성 결여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 CD/ATM 제조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동 표준은 금융기관이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자동화기기 접근성을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부스(booth)의 설치 기준, 부스 이용 공간의 크기, CD/ATM의 규격 등을 정의하였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D/ATM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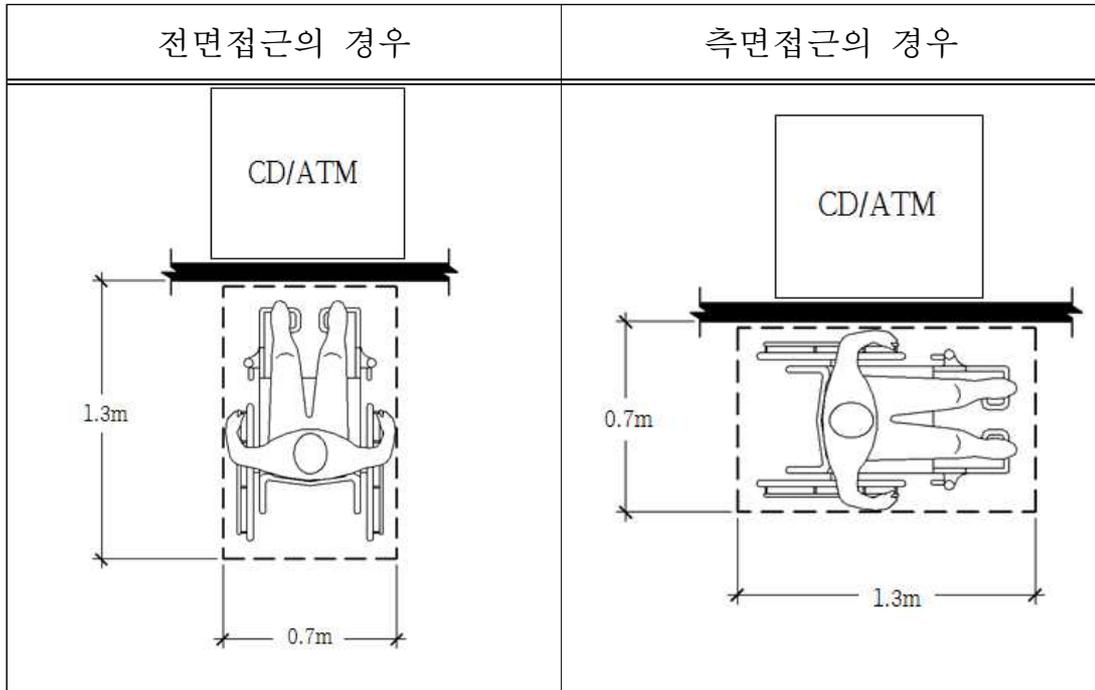
: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금융 고객이 접근성이 갖춰진 CD/ATM을 평균기준으로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② CD/ATM 사용을 위한 부스 공간의 크기

: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등급 B)의 규격⁷⁾을 고려하여, 부스의 길이 및 너비는 전면접근 부스의 경우 각각 1.3m 및 0.7m, 측면접근 부스의 경우 각각 0.7m 및 1.3m로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3-3>

접근방법별 부스 이용 공간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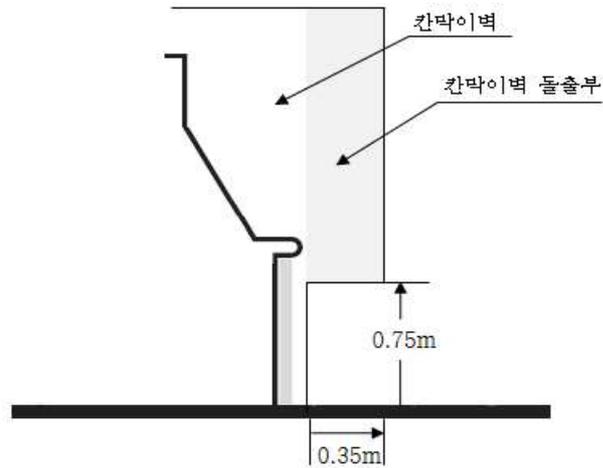
③ 칸막이벽의 규격

: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설치된 칸막이벽은 휠체어가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상, 칸막이벽 돌출부 시작면으로부터 0.35m 이상의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7) 최대 길이 : 130cm, 최대 너비 : 70cm

<그림3-4>

칸막이벽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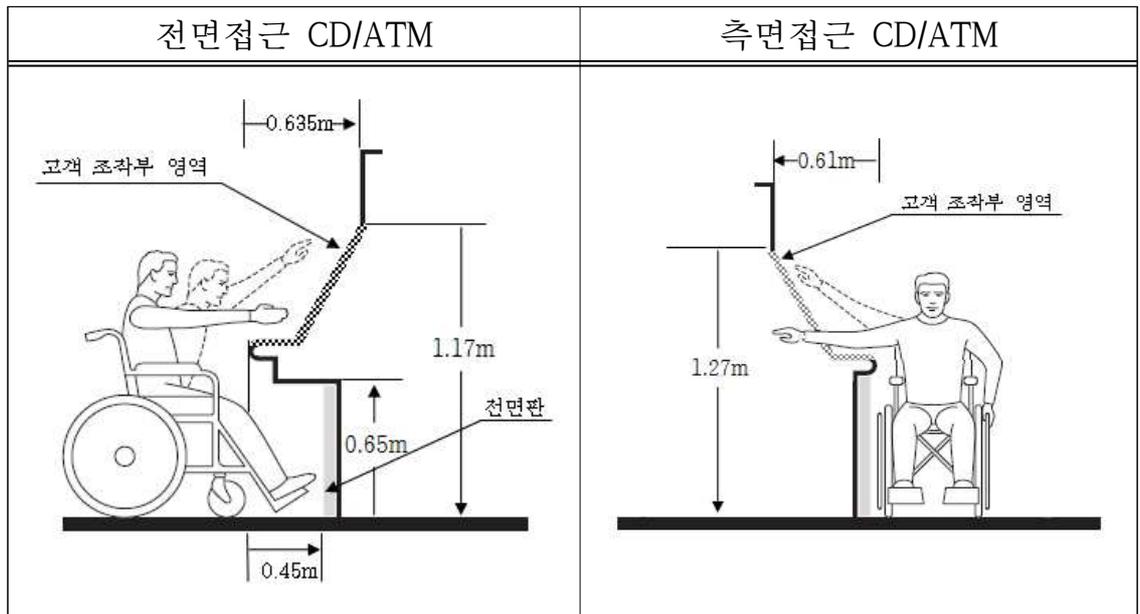


④ CD/ATM 규격

: 국내·외 CD/ATM 고객조작부의 높이 기준, 휠체어 접근방법 및 휠체어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고객조작부 위치와 하부 공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3-5>

CD/ATM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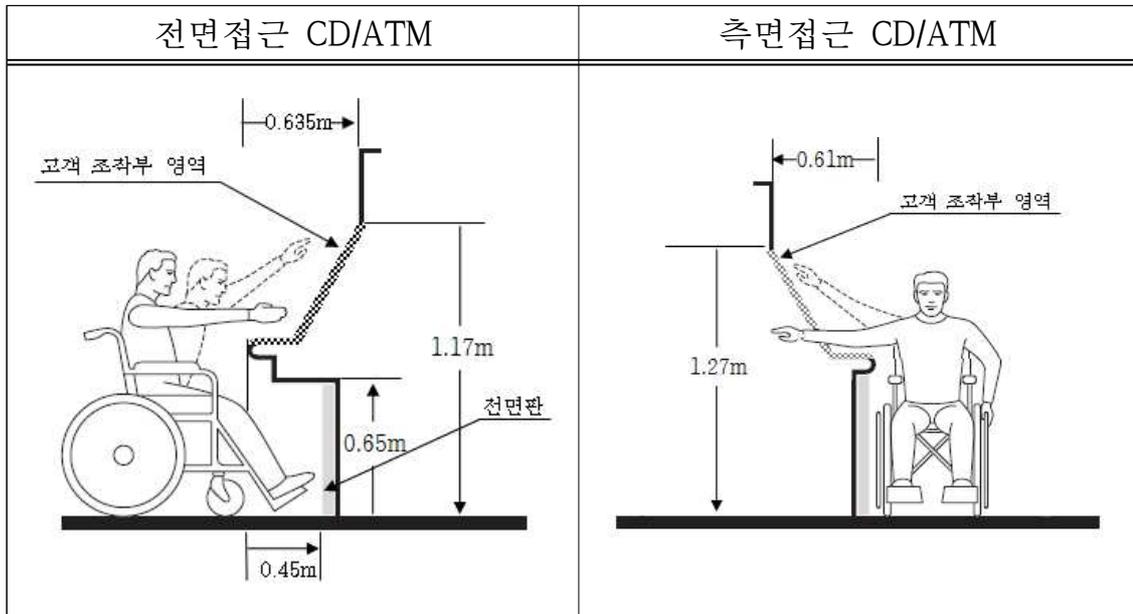


⑤ 인터폰 및 봉투 꽂이함의 위치

: 인터폰 및 봉투 꽂이함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 부스의 뒤쪽 벽면으로부터 0.3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3-6>

장애인용 CD/ATM의 조작부 배치도



2. 추진경과 및 평가

2009년 4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CD/ATM, 모바일뱅킹 등 각종 금융 채널의 이용과 관련된 표준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금융표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표준안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동 표준은 2010년 11월 금융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금융표준 전담기관에 표준개발을 위탁하였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안 개발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표준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각 은행 및 자동화기기 제조사,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은행, CD/ATM 제조사, 장애인협회 등을 대상으로 동 표준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1년 8월 24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화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동년 10월 19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이 개정되었다.

동 표준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제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과 함께 그동안 전자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자동화기기 이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 동향

제1절 현금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현금IC카드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만들어주는 카드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카드에 결제 기능이 추가되면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IC카드를 내고도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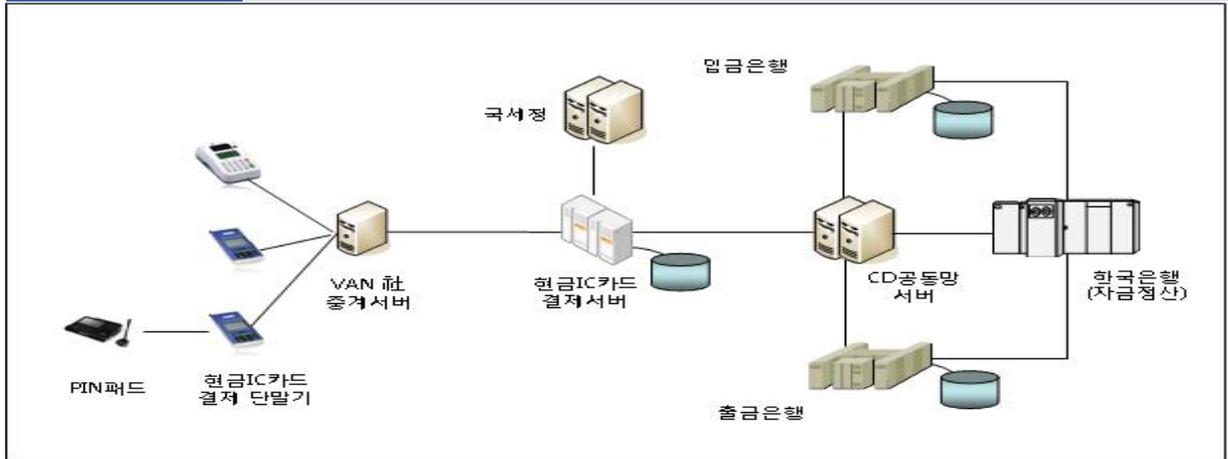
신용카드는 일반 상거래에서 현금이외의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신용카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이익증진은 물론 이용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등으로 국민 경제에 순기능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러한 신용카드 결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IC카드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은 금융결제원에 위탁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은 중계기관으로 서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17개 국내은행 및 결제대행업체(VAN)이 결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신청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현금IC카드로도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24시간 운영하고 이용한도는 예금잔액 범위 안에서 최저 1000원 이상으로 하되, 입출금 한도는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된다.

<그림4-1>

시스템 구성도



2. 추진경과 및 평가

시스템구축 사업계획 확정에 앞서 2011년 6월 이후 결제시스템 참여기관 및 정책당국들의 실무협의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금융결제원 및 참가은행 실무책임자 회의(2011년 6월~10월)에서 서비스 제공환경, 사업 타당성 및 추진방안이 협의되고 금융결제원과 VAN사 및 가맹점 협의(2011년 8월)가 진행되었으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가 조속한 결제시스템 구축을 금융권에 요청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참가은행과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앞 금융정보화 공동사업계획 심의를 요청하였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12년 1월 4일 2012년도 1차 회의에서 「현금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의결하여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하였다.

현금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직불형 결제수단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카드 사용자, 가맹점 및 은행에 모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는 현금 인출에서 대금 결제까지 한 장의 카드로 가능해 편의성이 증진된다. 현금IC카드에 결제기능이 추가되면 신규 발급되는 현금IC카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급된 현금IC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문화가 조성되어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칩과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체크, 신용카드와 달리 고객 서명을 받고 매출 전표를 보관,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결제시스템 운영비용이 낮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은행들도 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와 고객의 예금확보에 따른 저리자금 조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추진

1. 사업 개요

CD/ATM을 통한 현금인출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기띠(MS : Magnetic Stripe) 현금카드(이하 'MS현금카드')는 카드 내에 수록되어 있는 전자적 정보의 복제가 매우 용이하여 예금의 불법인출과 같은 금융사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공동망 운영의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MS현금카드를 보안성이 뛰어난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IC카드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5년 6월 「IC카드표준」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6회에 걸쳐 「IC카드표준」을 개정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추진」 사업 실시를 의결하여 IC카드의 확산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IC카드 전환사업 추진으로 현금카드가 대부분 IC카드로 전환되었지만 전환된 IC현금카드가 MS 겸용임에 따라 실제로 현금카드 불법 복제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MS/IC겸용 형태의 현금카드도 발급하더라도 현금카드 정보는 IC칩에만 수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정보화사업을 2009년 상반기부터 진행하였다.

이후 은행권의 전환노력에 힘입어 신규 발급되는 현금카드는 대부분 IC카드 형태로 전환(MS/IC겸용 카드의 경우 IC칩에만 현금카드 정보 수록)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된 복수기능카드와 기 발급된 MS현금카드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법복제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는 IC카드 전환대상을 복수기능카드로 확대하고 기 발급된 MS현금카드의 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CD/ATM의 MS카드 거래 제한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및 평가

가. 1단계 전환사업

은행권의 지속적인 전환 노력에 힘입어 2011년말 현재 IC현금카드 발급장수는 1억 1,027만장을 기록하였으며 IC카드를 처리할 수 있는 CD/ATM 설치 대수도 2006년말 4만대 수준에서 2011년말 5.3만대 수준으로 확대되어 전체 은행권 설치 CD/ATM중 99.9%가 IC카드를 처리할 수 있다.

<표4-1>

은행권¹⁾ IC현금카드 발급 및 CD/ATM 설치 추이

(단위 : 천장, 대)

연 말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IC현금카드 발급장수	39,182	56,280	80,163	94,192	110,270
복수기능 카드 ²⁾ 발급장수	35,096	50,042	75,434	89,549	105,130
전체 CD/ATM 대수(A)	51,390	51,632	50,074	52,356	52,883
IC카드 처리 가능대수(B)	50,135	50,133	49,773	52,254	52,847
비중(B/A, %)	<97.6>	<97.1>	<99.4>	<99.8>	<99.9>

주 : 1) 17개 시중·지방·특수은행 기준(농·수협 회원조합 제외)

2)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카드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급되는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IC현금카드는 대부분 자기띠와 IC칩이 함께 부착된 겸용카드로 정보 노출 등 자기띠 카드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C현금카드 발급시 자기띠를 삭제하지 못한 것은 IC카드 전환사업 추진 당시 MS현금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지급결제환경에 맞추어 국내 은행이 기존의 MS현금카드에 IC칩이 부가된 형태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온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IC카드 전환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실제 자기띠 겸용카드가 계속 사용됨에 따라 예금 불법인출과 같은 현금카드 관련 금융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나. 2단계 전환 사업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는 MS/IC겸용 형태의 현금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2월 24일 2단계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추진」안을 의결하여 MS/IC겸용 현금카드의 발급을 중지하고 CD/ATM의 자기띠 정보 인식 기능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10년 8월 13일 2010년도 제3차 회의에서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촉진방안」을 의결하였다. 동 촉진방안에 따라 IC카드 전환 대상을 복수기능 카드로 확대하는 한편, 기 발급 MS현금카드의 조기 교체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복수기능 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범금융권 공동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MS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IC카드로의 전환 발급 필요성과 IC카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 등을 안내하는 등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3절 **중장기 금융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1. 추진 배경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망 및 전자금융서비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월에는 이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표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산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 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정보망의 신뢰성(dependability)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스마트폰, NFC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및 기술의 출현으로 국내외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 편의성 제고 등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표준개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표준화 대상 영역을 대폭 확대·보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12년 2월 변화된 표준개발환경에 반영한 “중장기 금융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 기 사업추진 현황 및 금융표준 개발 환경의 변화

2009년 4월 수립한 “금융표준 개발사업”(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의결, 2009.4.27.)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 프로세스를 이용자구간, 서비스제공기관 접속구간 및 금융공동망 접속구간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1단계에서는 표준의 시급성 및 표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은 이용자구간에 대한 표준화를 우선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 2012년 2월말까지 총 4종의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여 표준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중 3종은 표준 제정을 완료하였다.

표 준 명	개발기간	비 고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2009. 6~2010. 5	제정(2010. 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2010.10~2011. 7	제정(2011.10)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	2010.10~2012. 2	제정(2012. 2)
NFC기반 금융 microSD 표준	2011. 9~	개발 중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생체인증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기법 등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NFC 등 모바일 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점이 인터넷, 유선PC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통신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으로 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인적·절차적 관리 부실 등으로 전산장애,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의 신뢰성은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platform) 제공사와 SKT, KT, LGT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appstore)에 등록되는 응용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시험이 정상동작 여부에 대한 확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품질(안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앱스토어 등록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어 삭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금융기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전자금융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권이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CD/ATM, 공과금 납부기 등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모바일 등 통신상에서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증장기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

2012년 2월 마련된 증장기 추진 계획에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NFC,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등에 대응한 신규 표준화 영역을 발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신뢰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표준개발에 집중되었던 표준화 사업을 금융IT시스템 전반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 평가, 인증 등의 운영·관리 분야로 확장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자금융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확대에 대비하여 ISO 20022 등 국제표준 수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수용

: NFC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금융정보 저장매체(금융microSD 등)에 대한 표준 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생체인증 등 신규 정보통신기술 및 기법 등의 활용을 위한 공동 플랫폼 및 이용절차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② 전자금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전자금융서비스 운영에 보안성이 우수한 IT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개발 초기에서부터 각종 결함 및 보안 위협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안 개발방법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및 표준적합성 평가 시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③ 보편적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④ 전자금융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에 대응

: 국내 전자금융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ISO 20022(universal financial industry message scheme : 범 금융산업 메시지 체계) 등 국제 표준의 국내 수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과 같은 세부 표준화 항목별 추진일정에 따라 표준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표4-3>

세부 표준화 항목별 추진 일정

분야	표준화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기 존 사 업 계 획	CD/ATM 인터페이스 표준	○				
	금융IC카드 표준(개정)	○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표준(개정)	○				
	모바일 전자화폐 등 소액지급결제관련 규격 및 인터페이스 표준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인터페이스 표준			○	○	
신 뢰 성 제 고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코딩 표준		○	○		
	금융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	○	
	금융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기준 및 방법론				○	○
	표준적합성 시험 대상 확대		○	○	○	○
약 자 배 려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표준 (웹 접근성 향상)	○	○			
신 기 술 수 용 등	NFC 기반 금융 microSD카드 표준	○				
	금융 클라우드 구성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관련 표준		○	○		
	ISO 20022 등 국제표준 수용		○	○	○	
	Biometrics 등 신규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이용 및 인증 절차 표준			○	○	○

제4절 모바일 결제서비스 분야의 혁신 가속화

1. 추진 배경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중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물품 구입, banking 등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이다. 이에 애플, 구글 등 모바일 플랫폼 제조사와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들은 모바일 지급결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외국기술 종속을 우려하면서 업종 간 연합을 통해 부분적인 기술표준화 및 시범사업이 시도되는 단계이다. 이에 따라 2011.2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통신과 금융이 융합된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표준(KS : Korean Standard) 및 원천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3월 이동통신사, 카드사, VAN사, 가맹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를 중심으로 NFC서비스를 실제로 시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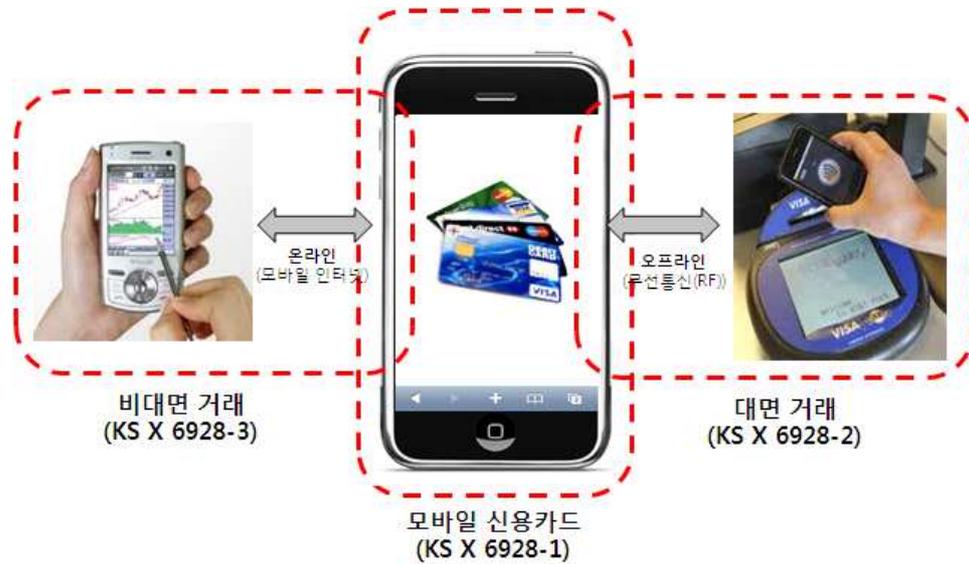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는 2011.9월부터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현재 유일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용 매체인 USIM 외에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매체인 금융 microSD에 대한 표준 개발을 시작하였다. 동 표준에서는 microSD 8)에 내장된 IC칩에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NFC 등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사항들을 정의한다.

8) microSD(Secure Digital)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로 15mm, 세로 11mm 크기의 최소형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 카드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를 활용해 일반 플라스틱 신용카드처럼 가맹점 RF통신모듈에 접촉시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면결제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비대면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상호호환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림4-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화 대상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11월부터 명동에서 3개 이동통신사, 11개 카드사, 3개 VAN사 및 6개 주요 가맹점 등과 함께 「명동 NFC Zone」을 선포하고, 다양한 NFC 기반의 응용서비스 시연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시범사업은 약 3개월 동안 커피숍, 편의점, 패스트푸드, 화장품 매장 등 명동 200여개 매장에 NFC 모바일 결제 인프라가 설치되어 NFC가 탑재된 단말기와 모바일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지급결제, 쿠폰 다운로드 및 스마트 주문 등의 시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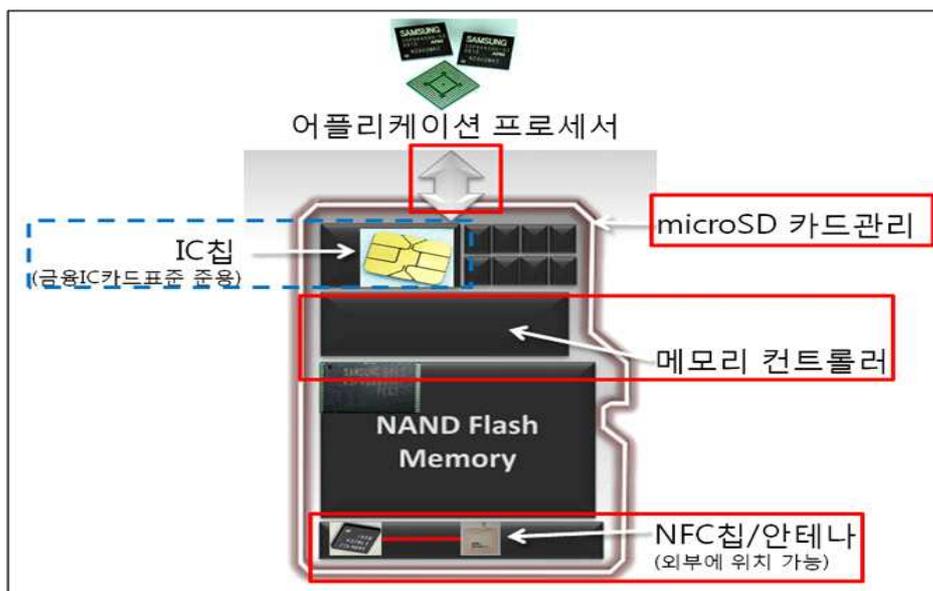
NFC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 활용을 위한 안전한 매체가 USIM에 국한되어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금융 서비스 이용고객이 번호나 기기 변경에 따라 금융정보를 다른 USIM으로 이동시켜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매체인 금융microSD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4-4>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microSD 표준화 대상



※ 범례 : 표준화 범위 기 제정 표준 준용

동 표준이 제정으로 USIM 외에 금융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안전한 매체가 추가되어 고객들은 이동통신사의 승인에 의해서만 제공되던 모바일 금융서비스 외에 금융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이동 장착이 편리한 금융microSD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변경에 따라 금융정보를 이동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있어 금융기관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동통신사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 과제

제1절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의 원활한 발전

1.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의 발전 주이 및 특징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기관 내부 전산화' → '금융공동망 구축' →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의 다양화'의 단계를 거치며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면·서면방식의 창구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비대면 전자방식 거래로 대체되고 있다.

전자금융서비스 채널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뱅킹이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가운데 하나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무실 및 가정의 PC 대신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수행하는 모바일뱅킹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휴대폰이 단순한 통화기능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고, 대용량 보조저장장치의 탑재로 인해 금융서비스 채널로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휴대폰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금융권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007년 9월에는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휴대폰을 은행 자동화기기에 접촉시키면 입출금 및 이체, 조회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방식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자동화기기 공동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9월에는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이 제정되어 하나의 휴대전화로 동 표준을 적용하는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USIM칩에 다수의 거래은행 계좌정보를 주입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이 하나의 휴대전화로 다수의 은행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보급을 계기로 은행권의 스마트폰 뱅킹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이 공간 및 이동성의 제약을 해소하고 고객의 금융편의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NFC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모바일 지급 결제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모바일기기 변경시 이동 장착이 필요한 NFC기반의 microSD 표준을 개발중이다. NFC는 읽기만 가능한 기존의 비접촉 근거리 무선통신기술과는 달리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며,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고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NFC 지원 스마트폰은 각종 카드는 물론 쿠폰, 포인트, 멤버쉽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모바일지갑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채널과 전자지급수단의 개발을 촉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의 유비쿼터스(ubiquitous)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의 유비쿼터스화는 대고객서비스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으로 금융기관 공동사업보다는 개별 기관의 독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공동망 연계, 법제도 개선 등 금융기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고객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과 IT의 융합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사회로의 진전으로 현금 대신 마그네틱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마그네틱카드는 다시 IC카드로 전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영업전략 면에서의 변화도 나타난다. 은행들은 영업직원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하는 한편, 내방고객에 대해 첨단IT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브랜치를 개설하고 있다.

한편, 금융과 IT의 융합이 고도화되면서 IT관련 업체 및 이동통신사업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금융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전자금융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모바일결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향후 과제

그 동안의 금융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국내 전자금융은 다양한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적극 개발·제공하면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전자금융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낙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도입 이후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최신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전성을 높여 4G기반 통신기술로의 전환 등 기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NFC,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최신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이용편의성 및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 등 지급결제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국가간 공동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모바일 결제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IT의 융합이 고도화되는 환경 하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해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금융정보망의 안전성 제고

전자금융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업계와 관련 당국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IT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객의 이용편의성, 금융기관 업무효율성 등 전자금융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전자금융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금융정보망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의 제공자인 금융기관, 보안연구기관, IT관련 업계, 중앙은행, 감독당국 등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전자금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공동망 구축으로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특정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및 전산사고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감시 및 감독 강화가 중요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의 확산,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진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 전자금융업 요건,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관계, 감독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2007.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전자금융 관련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각종 전산사고나 해킹·위변조 등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및 불법금융거래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각 금융기관별로 전산시스템 관리의 상당부분을 외주 용역직원이 담당함에 따라 이들에 의해 운영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응하여 MS현금카드의 금융IC카드로의 전환, 전산보안 인프라 확충,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수립, 내부 보안 및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금융정보화사업과 표준화

1. 표준의 개요

사전적 의미로 표준이란 사물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 또는 다른 것의 규범이 되는 준칙이나 규격으로 정의된다. 국제표준기구 중의 하나인 ISO는 “표준이란 기술적인 규격 혹은 정확한 기준(criteria)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합의사항(agreements)으로 규칙(rules), 지침(guidelines) 혹은 특성의 정의(definitions of characteristics)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표준은 일관성 있게 사용되며, 물질, 제품, 절차 및 그 서비스가 그 목적에 맞도록 보장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표준화에 맞게 과거의 표준화는 참여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것으로 상이한 제품과 서비스들의 단순 호환성에 중점이 두어졌다. 일례로, 과거 농경사회에서도 쌀 한 가마를 서로 사고 팔 때, 또는 교환 할 때, 쌀 한 가마 무게의 기준이 되는 양을 정해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 응용기술 간의 상호연동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때문에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그 활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다. 또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선진기업이 자신의 원천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여, 이를 확산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수단으로 표준을 이용하고 있어 표준화는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2. 표준의 분류

표준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주체의 참여범위 및 추진주체의 성격에 따라 나눌수 있다.

가. 표준화 참여 범위에 따른 분류

- 국제표준 : 전세계 국가가 참여해 합의한 표준으로 표준의 적용범위가 전세계에 미친다. 국제표준으로 ISO 표준, ITU 표준 등이 있다.
- 지역표준 : 어느 특정한 지역에 소속된 국가들이 참여해 합의한 표준이다. 대표적인 지역표준으로는 유럽의 ETSI가 있다.
- 국가표준 : 국가 내의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표준이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KS, 미국의 ANSI, 일본의 JIS, 영국의 BIS 등이 있다.
- 단체표준 : 한 국가내의 표준화 단체가 합의한 표준이다. 대표적인 단체표준으로는 우리나라의 TTA 표준 등이 있다.

나. 표준화 주체에 따른 분류

- 공식(De Jure) 표준 :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으로는 ISO, ITU 등에서 정해지는 표준이 있으며, 국내표준으로는 KS가 이에 해당한다.
- 사실상(De Facto) 표준 : 특정 제품이 압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획득할 때에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표준이다. 사실상표준의 예로는 MS 윈도우, 노벨의 IPX, IBM의 SNA 등이 있다.
- 포럼(Forum) 표준 : 특정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모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도와 목적이 구체적인 표준이다. IETF의 인터넷 표준, W3C의 웹 관련 표준 등이 있다.

※ 포럼 표준을 사실상 표준에 포함하여 공식표준과 사실상표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 표준의 법적 구속력

표준은 법적구속력 여부에 따라 임의 표준(voluntary consensus standard)과 규제적 표준(regulatory standar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의 표준은 표준의 준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표준이며, 규제적 표준은 법령 등에 의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표준을 말한다.

대부분의 표준은 임의 표준에 해당하여 표준의 구현 및 적용에 구속력이 없다. 다만, 보안 또는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경우 정부 및 관련기관은 법령에 의해 임의 표준을 규제적 표준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으로 인해 특정회사나 단체의 표준이 규제적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4. 금융업무의 표준화

금융업무의 표준화는 사무자동화, 신상품의 개발, 원활한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업무처리절차, 양식 또는 매체 등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표준화 대상업무로는 각종 금융거래메시지 양식, 메시지 구성요소의 코드화, IC카드 등 지급결제수단 사양 및 보안관련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5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발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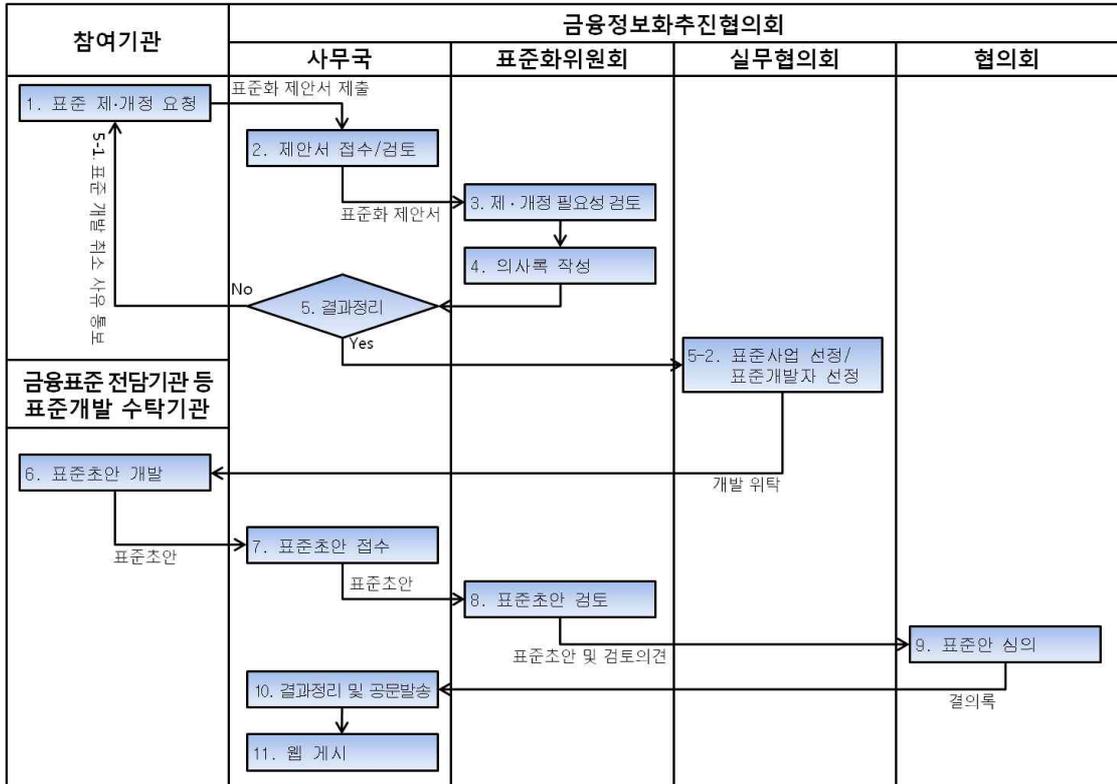
금융업무가 표준화되면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은 각종 서비스의 독자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 및 금융기관이 많을 수록 전체 효율이 증가하는 네트워크시스템이므로 관련기술 및 이용절차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 금융업무 표준화 추진 체계

금융부문의 국내표준화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사전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림5-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 제·개정 세부 절차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산하에 ISO의 분야별 기술위원회⁹⁾에 대응하는 분야별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에 대한 ISO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금융부문(ISO/TC68)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며 한국은행이 간사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ISO의 금융부문

9) 국제 표준화기구로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있으며 동 기구는 1947년 유엔 표준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정부간 협의기구 형태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기구로서 ISO에는 182개의 분야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있으며 이중 금융부문은 TC68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6월 공업진흥청(현재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대표기관으로 가입하였다.

국제표준안에 대한 찬·반 투표권 행사는 국내 대표기구(National Body)인 기술표준원이 하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2010년 7월 금융결제원을 금융정보 부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¹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나. 주요 표준 제·개정 실적 및 향후 표준화 방향

금융정보화추진협회의 표준화 사업은 1996년 「편뱅킹 서비스 파일포맷 표준」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표준 제·개정은 주로 금융IC카드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2002년 CD공동망 거래전문 개정 등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제안에 대해 표준 제·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을 개발하여 기 제정된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과 통합하여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기 접근이 어려웠던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 전자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2012.2월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을 개발하는 등 국제 호환성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하여 국내 금융환경에 필요한 표준화 영역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2년 2월에는 금융정보화추진협회 의결을 통하여 “중장기 금융표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정보망의 신뢰성 제고, 스마트폰, NFC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및 기술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최근 금융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반영한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향후 금융정보화추진협회는 「금융microSD 표준」 제정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연계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부문의 국가표준화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10) COSD(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정부주도 국가산업표준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표준화 수요조사, 분야별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국가표준 개발관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

<표5-1>**주요 표준 제·개정 실적**

제·개정 시기	표준 제·개정 내용
1996. 3	- 펌뱅킹 서비스 파일포맷 표준 제정
1997. 2	- 폐쇄형 금융IC카드표준 제정
1999. 7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비접촉식 기능 추가
2000.11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PIN위치변경, 단말기 최소구비요건 정의 등
2002.12	- CD공동망 거래전문 개정 ○ 거래전문에 지급계좌번호 Field 추가 -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전문 개정 ○ 현행 7개의 입금불능사유 코드를 19개로 확대
2003. 4 2003.11	-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제정 - 폐쇄형 및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현금카드 적용 보안알고리즘 지정 등
2004. 6 2004.10	- 폐쇄형 및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IC카드에 PIN System제도 도입 등 - 대학등록금 수납관련 File Layout 표준 제정 - CD공동망 3행이체 불능응답시 응답은행 표시 표준화
2005.11	- 지로 모계좌 보유은행에 이용기관별 이용정보 제공(업무개선) - CMS공동망 차액결제 집계표에 은행별 내역추가(업무개선)
2006.10	- 자동이체 등록처리시 오류처리기준을 통일하고 오류코드를 상세화(업무개선) - 금융공동망 데이터중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업무개선) -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청구 반환절차 통일(업무개선) - 우편번호의 갱신방법 일원화(업무개선)
2007. 11	-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표준 제정 - 금융IC카드 금융공동망(현금카드)표준 제정
2008. 4 2008. 8 2008. 9	-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표준 개정 ○ IC카드 공인인증서를 HSM으로 사용하기 위함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
2009. 2	-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부채널 공격의 유형 및 대응방법 추가, 국내외 공인된 시험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IC카드 사용 등
2010. 6 2010. 9	-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 -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공인인증서 규격 변경, 비접촉식 IC카드내 카드일련번호 암호화 및 검증 절차 추가, 전자화폐(K-CASH) 규격 변경 등
2011. 10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 기 제정된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과 통합

부 록

1.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	115
2. 금융정보화 연혁	178
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안목록	182
4.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세칙	212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절차	222
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244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절차	247

1. 금융정보화 관련통계

- 일 러 두 기 -

1.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0 】 단위 미만
- 【 - 】 해당사항 없음
- 【 .. 】 미 상
- 【 r 】 정 정

2. 일부 통계의 경우 표시자리수 이하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숫자와 상이할 수 있음

3. 금융기관의 포괄범위¹⁾(2011년 12월말 현재)

구 분		기 관 명
은행 (18)	시중은행 (7)	우리, SC제일, 외환, 국민, 신한, 한국씨티, 하나
	지방은행 (6)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5)	산업, 수출입, 기업, 농·수협 중앙회 ²⁾
금융투자업자 (93)	증권회사 (42)	교보, 대신, 대우, 동부, 동양, 리딩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바로투자, 부국, 삼성, 솔로몬투자, 신영, 신한금융투자, 애플투자, 우리투자, 유진투자, 유화, 이트레이드, 코리아RB, 키움, 토러스투자,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국SC, 한국투자, 한맥, 한양, 한화, 한화투자, 현대, 흥국, BNG, BS투자, HMC투자, IBK투자, JP모간, KB투자, KTB투자, LIG투자, NH투자, SK
	운용사 (51)	교보AXA, 대신, 동부, 동양, 드림, 라자드코리아, 리치먼드, 마이다스에셋, 마이에셋, 메리츠, 미래에셋, 블랙록, 삼성, 세이에셋코리아, 신영, 아시아, 아주, 알지에너지, 알파에셋, 에셋플러스, 에스크베리타스, 앰플러스, 와이즈에셋,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스, 지지, 칸서스, 코람코, 키움, 파인브릿지, 피닉스, 피델리티, 피에스, 하나디올, 하나UBS, 하이, 한국인프라, 한국투자밸류, 한주, 한화, 현대스위스, 현대인베스트먼트, 현대, GS, HDC, IBK, KB, KTB, LS, NH-CA

구 분		기 관 명
보험회사 (40)	생명 보험회사 (22)	교보, 대한, 동부, 동양, 라이나,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삼성, 신한, 알리안츠, 푸르덴셜, 하나HSBC, 현대라이프, 흥국, ACE, AIA, ING, KB, KDB, 우리아비바, Cardif, PCA
	손해 보험회사 (18)	그린,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롯데, 동부, 메리츠, 삼성, 서울보증, 코리안리재보험, 한화, 흥국,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현대해상, ACE, AXA다이렉트, FEDERAL, LIG, 더케이, 차티스
기타 관련 기관 (22)	카드사 (7)	BC, 신한, 롯데, 현대, 삼성, 하나SK, 산은캐피탈
	우체국금융 및 기금 (3)	우정사업본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련기관 (12)	은행(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증권(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보험(보험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협회)
저축기관중앙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7)	RBS, BOA, HSBC, 미쓰비시도쿄UFJ, MIZUHO CORPORATE, Deutsche, JP모간	

주 : 1) ()내는 기관수

2) 농·수협 회원조합의 경우 은행공동망 실적 및 CD/ATM대수만 중앙회(특수은행)에 포함

【 은 행 】

1. 전산직원 현황

가. 전산직원수 비중

(단위 : 명, %)

연말	총 직 원 (A)				전 산 직 원 (B)				B/A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중	지방	특수
1992	152,692	67,455	19,568	65,669	5,140	2,187	935	2,018	3.4	3.2	4.8	3.1
1993	152,349	67,181	19,647	65,521	5,328	2,235	968	2,125	3.5	3.3	4.9	3.2
1994	153,324	67,494	19,606	66,224	5,381	2,342	934	2,105	3.5	3.5	4.8	3.2
1995	153,851	83,135	19,855	50,861	5,380	2,723	922	1,735	3.5	3.3	4.6	3.4
1996	153,478	82,716	20,158	50,604	5,480	2,740	1,001	1,739	3.6	3.3	5.0	3.4
1997	151,337	93,575	19,872	37,890	5,611	3,232	968	1,411	3.7	3.5	4.9	3.7
1998	109,371	64,757	11,550	33,064	4,701	2,749	678	1,274	4.3	4.2	5.9	3.9
1999	106,558	66,198	10,207	30,153	4,398	2,698	576	1,124	4.1	4.1	5.6	3.7
2000	102,053	64,524	9,476	28,053	4,138	2,542	555	1,041	4.1	3.9	5.9	3.7
2001	109,186	71,412	10,601	27,173	3,799	2,406	535	858	3.5	3.4	5.1	3.2
2002	112,083	74,818	10,536	26,729	4,217	2,732	540	945	3.8	3.7	5.1	3.5
2003	107,681	68,345	10,283	29,053	3,985	2,624	404	957	3.7	3.8	3.9	3.3
2004	114,306	74,683	10,073	29,550	4,342	3,055	414	873	3.8	4.1	4.1	3.0
2005	117,131	76,492	9,951	30,688	4,253	2,947	434	872	3.6	3.9	4.4	2.8
2006	122,066	80,812	10,113	31,141	4,150	2,887	423	840	3.4	3.6	4.2	2.7
2007	127,430	83,495	10,333	33,602	4,097	2,885	411	801	3.2	3.5	4.0	2.4
2008	126,637	81,509	10,578	34,550	4,011	2,789	400	822	3.2	3.4	3.8	2.4
2009	127,318	82,194	11,263	33,861	3,876	2,651	432	793	3.0	3.2	3.8	2.3
2010	125,352	78,723	11,786	34,843	3,169	1,873	449	847	2.5	2.4	3.8	2.4
2011	125,685	78,427	11,275	35,983	3,167	1,766	453	948	2.5	2.3	4.0	2.6

나. 업무별 전산직원수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2	5,140	278	1,047	2,784	353	107	31	346	194
1993	5,328	298	1,146	2,789	326	129	31	460	149
1994	5,381	325	1,157	2,820	293	141	22	476	147
1995	5,380	408	1,205	2,684	271	161	12	463	176
1996	5,480	323	1,188	2,975	242	189	3	374	186
1997	5,611	591	1,198	2,881	213	181	17	451	79
1998	4,701	560	1,012	2,398	173	148	1	334	75
1999	4,398	406	1,078	2,196	138	155	-	335	90
2000	4,138	444	971	1,966	112	185	1	412	47
2001	3,799	327	1,019	1,771	95	126	1	373	87
2002	4,217	348	1,259	1,769	125	156	1	507	52
2003	3,985	245	844	2,131	97	133	-	432	103
2004	4,342	278	964	2,144	126	148	-	486	196
2005	4,253	363	870	2,200	135	144	-	435	106
2006	4,150	332	968	2,044	107	138	-	450	111
2007	4,097	385	1,002	1,959	154	105	-	462	30
2008	4,011	356	1,074	2,005	96	94	-	330	56
2009	3,876	382	978	2,000	96	76	-	294	50
2010	3,169	382	653	1,718	86	53	-	230	47
2011	3,167	391	745	1,536	78	87	-	264	66

2. 전산사무기기 현황

가. 주전산기¹⁾

(단위 : 대)

연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1991	134	68	34	32	-	-	-	-	-	-	-	-
1992	228	80	95	53	86	17	56	13	37	17	14	6
1993	368	102	152	114	74	17	42	15	40	20	14	6
1994	544	138	218	188	81	21	45	15	55	18	29	8
1995	993	299	248	446	78	30	33	15	51	21	20	10
1996	1,652	637	439	576	56	41	8	7	24	12	7	5
1997	1,556	944	462	150	75	49	11	15	39	24	10	5
1998	1,401	518	294	589	62	43	9	10	51	26	4	21
1999	1,226	740	300	186	54	39	4	11	50	22	7	21
2000	2,229	1,393	476	360	50	34	4	12	64	36	7	21
2001	2,521	1,574	500	447	68	54	3	11	76	49	17	10
2002	2,795	2,040	489	266	41	29	1	11	107	47	9	51
2003	3,024	2,133	590	301	43	28	3	12	126	60	9	57
2004	4,561	3,359	636	566	62	43	4	15	199	160	6	33
2005	5,321	3,803	717	801	65	47	4	14	334	291	5	38
2006	5,296	3,640	669	987	53	34	3	16	339	257	7	75
2007	6,486	4,356	640	1,490	113	95	2	16	265	173	11	81
2008	6,223	3,762	690	1,771	132	123	2	7	236	118	13	105
2009	6,820	4,229	662	1,929	160	127	4	29	260	148	15	97
2010	7,422	4,811	890	1,721	140	104	6	30	214	140	9	65
2011	7,156	4,998	614	1,544	166	113	12	41	227	130	11	86

주 : 1) '92년부터 규모별[구입가(US\$)기준]로 구분하여 집계 :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 형 : 70~150만불 미만
 중 형 : 30~70만불 미만 소 형 : 10~30만불 미만 초소형 : 10만불 미만

(계 속)

(단위 : 대)

연말	중 형				소 형				초 소 형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1992	35	14	5	16	40	22	11	7	30	10	9	11
1993	39	18	6	15	104	30	24	50	111	17	66	28
1994	54	30	5	19	88	45	31	12	266	24	108	134
1995	51	32	7	12	138	81	37	20	675	135	151	389
1996	68	47	6	15	144	97	30	17	1,360	440	388	532
1997	89	62	5	22	223	150	43	30	1,130	659	393	78
1998	108	70	5	33	338	159	48	131	842	220	228	394
1999	51	29	4	18	297	209	54	34	774	441	231	102
2000	115	65	5	45	352	243	50	59	1,648	1,015	410	223
2001	198	130	14	54	494	322	59	113	1,685	1,019	407	259
2002	912	844	6	62	291	159	39	93	1,444	961	434	49
2003	936	841	14	81	356	199	61	96	1,563	1,005	503	55
2004	1,904	1,538	14	352	511	342	73	96	1,885	1,276	539	70
2005	1,916	1,548	41	327	888	567	72	249	2,118	1,350	595	173
2006	2,022	1,772	23	227	1,562	859	241	462	1,320	718	395	207
2007	2,518	2,239	22	257	1,598	998	57	543	1,992	851	548	593
2008	2,277	2,008	27	242	1,168	591	54	523	2,410	922	594	894
2009	2,343	2,135	27	181	1,669	922	218	529	2,388	897	398	1,093
2010	2,447	2,271	32	144	1,830	1,130	235	465	2,791	1,166	608	1,017
2011	2,443	2,249	24	170	1,851	1,213	182	456	2,469	1,293	385	791

나. 단말기/개인용 컴퓨터(PC)

(단위 : 대)

연말	단 말 기 ¹⁾				개 인 용 컴 퓨 터 (PC) ²⁾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1991	48,410	18,932	5,146	24,332	6,910	3,027	769	3,114
1992	56,210	21,406	6,378	28,426	13,525	4,701	1,233	7,591
1993	66,657	24,867	6,556	35,234	20,553	9,047	3,129	8,377
1994	69,032	29,881	7,508	31,643	31,100	14,082	4,971	12,047
1995	82,257	46,147	8,803	27,307	46,276	24,858	7,134	14,284
1996	71,868	47,015	9,477	15,376	48,224	30,879	8,124	9,221
1997	74,783	51,224	7,957	15,602	77,827	45,668	12,021	20,138
1998	69,146	46,764	6,267	16,115	82,612	49,780	10,333	22,499
1999	59,182	38,448	4,193	16,541	91,458	55,838	9,888	25,732
2000	50,074	33,353	2,883	13,838	100,487	62,681	10,704	27,102
2001	45,808	29,092	2,723	13,993	99,858	69,240	9,647	20,971
2002	51,258	39,863	4,298	7,097	96,960	59,941	8,009	29,010
2003	45,249	33,185	2,984	9,080	102,265	65,986	8,199	28,080
2004	36,489	26,215	2,605	7,669	133,613	92,119	10,182	31,312
2005	36,563	24,722	3,843	7,998	135,846	91,590	10,782	33,474
2006	21,666	10,613	2,760	8,293	155,510	108,425	10,037	37,048
2007	16,035	5,271	2,892	7,872	163,583	114,570	10,118	38,895
2008	43,017	31,807	2,831	8,379	133,847	85,377	10,772	37,698
2009	44,064	32,326	2,855	8,883	117,571	77,007	11,009	29,555
2010	35,812	20,558	4,837	10,417	125,686	80,768	11,224	33,694
2011	51,845	36,042	4,559	11,244	124,440	88,653	9,361	26,426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 겸용 PC 포함

다. 휴대용 노트북/PDA

(단위 : 대)

연말	휴 대 용 노 트 북				PDA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2002	13,650	10,457	1,004	2,189	68	68	-	-
2003	18,095	13,264	2,585	2,246	973	942	7	24
2004	17,087	12,086	1,904	3,097	1,019	950	39	30
2005	16,865	11,513	1,863	3,489	1,140	1,060	39	41
2006	16,660	11,838	477	4,345	1,391	1,309	41	41
2007	20,544	14,567	1,543	4,434	2,040	1,257	46	737
2008	19,876	14,347	1,603	3,926	2,259	1,366	46	847
2009r	17,373	12,215	1,662	3,496	2,230	1,922	53	848
2010	42,466	38,734	948	2,784	2,755	1,304	96	1,355
2011	13,464	10,645	695	2,124	2,185	1,270	73	842

3. 전산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C)									공동 ¹⁾ 이용 분담금 (C)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 (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3	72,606	5,144	7.1	2,183	2,632	451	472	257	1,229	223	329
1994	84,411	6,913	8.2	3,565	3,015	516	551	308	1,421	219	333
1995	104,515	9,033	8.6	4,949	3,643	557	689	425	1,723	249	441
1996	107,581	8,975	8.4	4,697	3,796	441	763	458	1,792	342	482
1997	126,621	9,083	7.2	4,165	4,381	500	909	535	1,967	471	536
1998	112,007	7,731	6.9	3,309	3,993	437	982	530	1,605	439	429
1999	97,973	9,070	9.3	4,183	4,388	534	994	644	1,754	462	499
2000	92,076	11,834	12.9	6,583	4,887	538	1,063	774	1,869	644	364
2001	110,772	15,582	14.1	9,516	5,545	683	1,176	858	2,032	795	521
2002	133,334	18,824	14.1	11,412	7,069	1,211	1,275	1,117	2,832	634	343
2003	130,353	17,211	13.2	7,611	8,966	1,800	1,512	1,258	3,820	576	634
2004	144,945	18,857	13.0	6,965	11,284	2,877	1,500	1,410	3,339	2,158	608
2005	167,209	18,025	10.8	7,647	9,721	3,119	1,325	1,429	3,051	797	657
2006	192,221	21,285	11.1	10,878	9,702	2,221	1,943	1,515	3,570	453	705
2007	200,305	23,097	11.5	11,490	10,845	2,701	2,217	1,629	3,837	462	761
2008	216,074	24,600	11.4	12,417	11,412	2,538	2,646	1,763	3,847	618	771
2009r	206,618	22,142	10.7	8,453	12,918	2,517	2,687	1,670	4,031	1,824	321
2010r	216,080	19,691	9.1	7,014	11,906	2,563	2,811	1,461	4,395	675	519
2011	220,245	20,293	9.2	6,943	13,149	1,879	3,554	1,631	5,108	976	519

주 : 1) 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에 분담하는 금액

4.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가. 텔레뱅킹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 시 기 관					이 용 고 객 수 ¹⁾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등록고객수 (연말)	실이용고객수 (연중)
1995	16	10	3	3
1996	24	14	7	3
1997	26	15	8	3
1998	24	12	7	5
1999	20	10	6	4
2000	22	11	6	4	1
2001	21	10	6	4	1
2002	21	8	6	4	3	21,064,308	12,187,075
2003	21	8	6	4	3	26,426,478	11,091,600
2004	20	8	6	4	2	28,088,003	15,311,319
2005	20	8	6	4	2	25,864,557	12,135,047
2006	19	7	6	4	2	27,150,246	11,814,633
2007	19	7	6	4	2	28,760,897	10,177,474
2008	19	7	6	4	2	30,949,636	12,267,067
2009	19	7	6	4	2	34,512,794	12,470,661
2010	19	7	6	4	2	36,761,926	12,970,883
2011	19	7	6	4	2	38,918,895	12,810,338

주 : 1)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이 용 실 적				
	계	정보조회	자금이체 ¹⁾	대 출	기 타
1995	25,729	20,705	2,311	..	2,713
1996	91,663	70,837	9,724	167	10,935
1997	312,867	228,047	54,748	466	29,606
1998	434,327	319,723	81,753	257	32,594
1999	651,356	443,479	126,055	870	80,952
2000	904,285	599,453	201,763	276	102,794
2001	1,440,918	884,644	347,296	12,255	196,722
2002	1,219,469	803,534	320,454	1,007	65,811
2003	1,194,338	761,371	334,057	374	83,585
2004	1,421,372	921,302	425,278	784	74,008
2005	1,393,367	956,822	368,419	248	67,878
2006	1,381,421	927,127	386,127	771	67,396
2007	1,530,734	1,061,304	395,638	140	73,652
2008	1,447,108	970,390	417,057	666	58,995
2009	2,302,602	1,834,382	415,980	3,461	48,778
2010	2,184,278	1,704,687	409,497	3,064	67,030
2011	2,561,096	2,095,598	413,113	776	51,609

주 : 1) 현금서비스 이체실적을 포함

나. PC뱅킹¹⁾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시기관 ²⁾										이용고객수 ³⁾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등록고객수 (연말)			실이용고객수 (연중)		
	H	F	H	F	H	F	H	F	H	F	개인	기업	계	개인	기업	계
1994	18	23	11	14	3	4	4	5	160,104	14,616	174,720
1995	24	26	13	15	7	7	4	4	535,869	24,858	560,727
1996	25	27	14	15	7	8	4	4	1,345,984	47,142	1,393,126
1997	27	28	15	16	9	9	3	3	4,547,353	65,076	4,612,429
1998	26	24	13	13	7	7	6	4	6,403,297	75,822	6,479,119
1999	22	20	11	11	6	5	5	4	6,557,851	89,408	6,647,259
2000	22	21	11	11	6	6	4	3	1	1	8,638,752	116,019	8,754,771
2001	20	20	10	10	6	6	3	3	1	1	11,664,948	99,477	11,764,425
2002	16	24	7	8	6	6	2	4	1	6	9,725,191	223,801	9,948,992	1,800,253	89,071	1,889,324
2003	12	19	6	7	4	5	2	3	0	4	11,561,765	316,343	11,878,108	1,830,125	51,966	1,882,091
2004	7	17	3	7	3	4	1	3	0	3	4,667,531	210,952	4,878,483	528,339	35,379	563,796
2005	1	6	0	2	1	1	0	0	0	3	264,550	12,064	276,614	97,510	4,873	102,383
2006	0	0	0	0	0	0	0	0	0	0	-	-	-	-	-	-

- 주 : 1) 인터넷공중망의 발달로 internet banking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은행별로 PC Banking(PC통신사업자망을 이용) 고객들의 internet banking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2005년중 전 은행이 PC banking 서비스를 중단
 2) H : 홈뱅킹 실시기관수, F : 펌뱅킹 실시기관수
 3)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중	개 인					기 업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¹⁾	대 출	기타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대 출	일괄 데이터 전송	기타
1992	353	247	106	..	-	6,427	630	1,409	..	4,388	..
1993	1,373	1,090	283	..	-	33,481	1,625	4,547	..	27,309	..
1994	3,796	2,888	908	..	-	85,309	4,981	36,027	..	44,300	1
1995	15,721	12,032	3,685	..	4	147,742	10,892	77,089	..	59,759	2
1996	30,901	23,122	7,746	..	34	257,697	19,302	126,510	..	111,876	10
1997	89,096	67,679	20,161	..	1,256	495,852	35,026	371,219	..	79,945	9,662
1998	252,286	170,737	46,347	..	35,202	762,683	54,964	614,805	..	80,767	12,148
1999	404,556	216,390	92,173	..	95,993	993,493	110,350	793,297	..	55,919	33,928
2000	464,209	307,479	111,997	..	44,733	1,238,630	125,477	976,448	..	58,239	78,466
2001	150,216	89,063	37,009	..	24,144	1,421,097	191,894	1,053,166	-	73,923	102,113
2002	80,340	57,329	16,265	3	6,743	479,359	100,273	312,231	-	29,323	37,532
2003	51,644	34,961	12,661	1	4,021	348,863	67,571	223,577	43	27,083	30,589
2004	49,286	35,606	12,790	-	860	371,698	46,883	290,207	-	34,468	140
2005	32,793	28,422	4,371	-	-	115,699	29,189	83,677	-	2,826	7
2006	-	-	-	-	-	-	-	-	-	-	-

주 : 1) 현금서비스 이체실적을 포함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합 계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대 출	일괄데이터 전송	기 타
1992	6,780	877	1,515	..	4,388	..
1993	34,854	2,715	4,830	..	27,309	..
1994	89,105	7,869	36,935	..	44,300	1
1995	163,463	22,924	80,774	..	59,759	6
1996	288,598	42,424	134,256	..	111,876	42
1997	584,948	102,705	391,380	..	79,945	10,918
1998	1,014,969	225,701	661,152	..	80,767	47,349
1999	1,398,049	326,740	885,470	..	55,919	129,920
2000	1,702,839	432,956	1,088,445	..	58,239	123,199
2001	1,571,313	280,957	1,090,175	..	73,923	126,257
2002	559,699	157,602	328,506	3	29,323	44,268
2003	400,506	102,532	236,239	44	27,083	34,652
2004	444,705	82,489	302,502	-	34,468	1,000
2005	148,492	57,611	88,048	-	2,826	7
2006	-	-	-	-	-	-

다. 인터넷뱅킹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시기관					이용고객수 ¹⁾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등록고객수(연말)			실이용 고객수(연중)
						개인	기업	계	
2000	20	11	6	3	-	4,090,000	..
2001	21	9	6	3	3	10,916,000	394,000	11,310,000	..
2002	22	8	6	4	4	17,020,000	690,000	17,710,000	8,614,363
2003	23	8	6	4	5	21,752,000	1,002,000	22,754,000	10,507,310
2004	22	8	6	4	4	23,093,723	1,177,141	24,270,864	11,376,276
2005	22	8	6	4	4	25,303,243	1,434,651	26,737,894	12,265,966
2006	21	7	6	4	4	34,123,111	1,789,341	35,912,452	16,617,501 ²⁾
2007	21	7	6	4	4	42,396,221	2,302,565	44,698,786	18,067,407
2008	21	7	6	4	4	50,074,848	2,520,517	52,595,365	20,832,487
2009	22	7	6	4	5	56,047,229	2,946,382	58,993,611	29,286,838
2010	22	7	6	4	5	62,951,676	3,550,022	66,501,698	32,013,443
2011	22	7	6	4	5	70,624,802	4,191,875	74,816,677	36,142,252

주 : 1) 모바일뱅킹 이용고객 포함.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2) 2007년 6월말 기준

2) 이용실적¹⁾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이용건수				이용금액	
	계	정보조회	자금이체	대출신청	자금이체	대출신청
2000	219,863	187,042	32,821	..	4,241,076	..
2001	1,002,947	828,809	170,941	3,197	13,642,194	280,057
2002	1,838,698	1,498,170	337,357	3,171	22,371,998	295,960
2003	2,634,961	2,248,164	384,972	1,825	28,435,211	135,415
2004	3,292,274	2,745,281	546,143	850	32,907,138	57,905
2005	4,004,369	3,311,946	691,774	649	44,854,112	42,264
2006	4,672,755	3,867,448	804,614	693	54,359,852	49,352
2007	6,526,922	5,528,577	997,622	723	67,782,333	49,131
2008	8,208,557	6,989,364	1,218,298	895	82,917,481	58,348
2009	9,686,307	8,435,651	1,249,919	737	92,850,278	57,365
2010r	12,174,642	10,657,338	1,516,851	453	107,860,811	73,323
2011	14,243,218	12,512,598	1,730,095	525	116,407,524	90,142

주 : 1)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을 포함

3) 보안서비스

연 말	OTP 발급개수						HSM(보안토큰) 발급개수	기 타 ²⁾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¹⁾		
2007	1,019,423	713,810	27,662	106,045	127,166	44,670	274	468,540
2008	2,593,608	1,708,894	121,864	463,395	96,337	203,118	25,175	135,983
2009	3,879,436	2,323,996	195,460	809,702	80,907	469,371	151,605	153,686
2010	5,287,115	3,103,454	244,277	1,204,486	118,043	616,855	23,679	62,565
2011	6,497,360	3,904,750	316,304	1,497,946	52,651	725,709	30,737	65,888

주 : 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2) 바이오인증 및 전화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한 고객인증 등록고객수

라. 모바일뱅킹

1) 등록고객수(연말기준)

(단위 : 명)

연 도	계	IC칩 ¹⁾	VM	스마트폰 ²⁾
2003	189,221	189,221	-	-
2004	893,592	893,592	-	-
2005	1,861,419	1,861,419	-	-
2006	2,978,870	2,978,870	-	-
2007	5,009,336	4,411,987	597,349	-
2008	8,477,141	4,693,883	3,783,258	-
2009	11,167,825	4,627,267	6,527,964	12,594
2010	15,747,573	4,578,502	8,560,563	2,608,508
2011	23,719,740	4,434,115	8,927,821	10,357,804

주 : 1) 2세대폰 IC칩 기반 모바일뱅킹(BankON, M뱅크, K뱅크) 등록고객수 기준
2)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억원)

연 도	이용건수(연중)			이용금액(연중)
	계	각종 조회서비스	자금이체서비스	자금이체
2003	17,919	16,442	1,478	..
2004	51,312	41,674	9,638	..
2005	104,618	84,467	20,151	206,955
2006	162,773	133,789	28,984	286,235
2007	261,158	218,378	42,780	386,964
2008	387,115	328,872	58,244	551,916
2009	628,175	533,697	94,478	971,538
2010r	1,363,694	1,216,743	146,951	1,516,789
2011	2,809,387	2,529,684	279,703	2,381,858

5. CD/ATM 현황

가. 설치현황

1) 종류별

(단위 : 대)

연말	C				D			A T M						
	소계	시중	지방	특수 ¹⁾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²⁾	기기 운영자 ³⁾	소계	시중	지방	특수 ¹⁾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²⁾	기기 운영자 ³⁾
1992	9,659	4,339	1,223	4,097	61	24	9	28
1993	12,296	6,119	1,467	4,710	188	106	13	69
1994	17,047	9,292	2,068	5,687	1,145	663	46	436
1995	22,799	14,716	2,867	5,216	3,432	2,566	245	621
1996	31,259	16,696	3,465	9,409	1,689	5,345	3,815	403	1,127
1997	35,470	19,945	3,989	9,264	2,272	7,204	5,491	567	1,127	19
1998	32,223	17,029	3,042	9,492	2,660	9,174	7,188	529	1,112	345
1999	32,741	16,600	2,682	10,710	2,749	9,734	7,105	605	1,581	443
2000	34,971	17,871	2,886	11,465	2,749	12,793	9,103	793	2,354	543
2001	36,619	17,263	2,965	12,559	3,832	16,335	11,529	978	3,195	633
2002	42,492	13,599	2,862	12,992	4,178	5,872	2,989	23,567	15,343	1,523	5,134	698	869	-
2003	46,556	11,716	2,625	16,773	4,014	6,707	4,721	33,597	19,206	2,085	10,364	622	1,116	204
2004	44,908	10,102	2,362	12,141	3,975	8,707	7,621	35,926	21,984	2,455	8,948	821	1,510	208
2005	45,112	9,782	2,244	11,706	4,026	6,164	11,190	37,860	21,788	2,627	10,378	938	1,937	192
2006	44,491	7,707	2,211	11,361	3,706	5,864	13,642	41,842	22,736	2,959	12,760	1,135	2,120	132
2007	46,229	7,100	2,351	10,058	3,677	5,958	17,085	47,499	24,786	3,194	15,360	1,339	2,682	138
2008	46,003	5,570	2,385	9,111	3,667	6,104	19,166	52,168	26,846	3,439	17,053	1,514	3,168	148
2009	46,404	4,994	2,330	8,424	3,566	5,453	21,637	55,137	27,200	3,622	18,144	1,709	4,117	345
2010	48,283	3,698	2,158	8,041	3,566	4,628	26,192	62,047	28,243	3,923	20,129	1,837	5,665	2,250
2011	47,530	1,830	1,954	5,995	3,546	4,021	30,184	70,977	30,740	4,367	23,287	1,955	6,458	4,170

주 : 1) 농·수협 회원조합의 CD/ATM 보유대수 포함

2)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3) 한국전자금융, 노틸러스호성, 게이트뱅크, 케이아이뱅크, 청호컴넷, 키스뱅크, 한네트 등 자동화기기사업자가 은행점포 이외의 공공장소에 설치한 기기수

(계 속)

(단위 : 대)

연말	합 계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기기운영자
1992	9,720	4,363	1,232	4,125
1993	12,484	6,225	1,480	4,779
1994	18,192	9,955	2,114	6,123
1995	26,231	17,282	3,112	5,837
1996	36,604	20,511	3,868	10,536	1,689
1997	42,674	25,436	4,556	10,391	2,291
1998	41,397	24,217	3,571	10,604	3,005
1999	42,475	23,705	3,287	12,291	3,192
2000	47,764	26,974	3,679	13,819	3,292
2001	52,954	28,792	3,943	15,754	4,465
2002	66,059	28,942	4,385	18,126	4,876	6,741	2,989
2003	80,153	30,922	4,710	27,137	4,636	7,823	4,925
	(2,300)	(1,976)	(25)	(299)	(-)	(-)	(-)
2004	80,834	32,086	4,817	21,089	4,796	10,217	7,829
	(3,992)	(2,876)	(351)	(376)	(389)	(-)	(-)
2005	82,972	31,570	4,871	22,084	4,964	8,101	11,382
	(6,662)	(3,702)	(514)	(1,930)	(441)	(75)	(-)
2006	86,333	30,443	5,170	24,121	4,841	7,984	13,774
	(8,576)	(5,970)	(704)	(1,230)	(479)	(193)	(-)
2007	93,728	31,886	5,545	25,418	5,016	8,640	17,223
	(9,537)	(6,246)	(804)	(1,679)	(546)	(244)	(-)
2008	98,171	32,416	5,824	26,164	5,181	9,272	19,314
	(11,678)	(4,669)	(765)	(5,365)	(567)	(312)	(-)
2009	101,541	32,194	5,952	26,568	5,275	9,570	21,982
	(12,577)	(4,650)	(827)	(6,069)	(610)	(421)	(-)
2010	110,330	31,941	6,081	28,170	5,403	10,293	28,442
	(13,073)	(4,647)	(844)	(6,488)	(610)	(484)	(-)
2011	118,507	32,570	6,321	29,282	5,501	10,479	34,354
	(13,968)	(4,744)	(909)	(7,137)	(610)	(568)	(-)

주 : ()내는 공과금수납전용단말기수

2) 설치장소별¹⁾

(단위 : 대)

연말	계	점 내							점 외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근자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근자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1992	9,720	8,695	3,714	1,128	3,853	1,025	649	104	272	-
1993	12,484	10,302	4,700	1,237	4,365	2,182	1,525	243	414	-
1994	18,192	13,803	6,734	1,639	5,430	4,389	3,221	475	693	-
1995	26,231	18,412	11,307	2,192	4,913	7,819	5,974	921	924	-
1996	36,604	27,168	13,551	2,792	9,136	1,689	9,436	6,960	1,076	1,400	-
1997	42,674	32,354	17,760	3,348	8,955	2,291	10,320	7,676	1,208	1,436	-
1998	41,397	30,016	15,397	2,559	9,210	2,850	11,381	8,820	1,012	1,394	155
1999	42,475	30,684	14,980	2,274	10,606	2,824	11,791	8,725	1,013	1,685	368
2000	47,764	36,350	19,033	2,487	11,936	2,894	11,414	7,941	1,192	1,883	398
2001	52,954	36,606	20,359	2,621	9,284	4,342	16,348	8,433	1,322	6,470	123
2002	66,059	50,067	21,296	2,909	16,678	4,803	4,381	..	15,992	7,646	1,476	1,448	73	4,682	2,989
2003	80,153	60,848	22,218	3,184	24,905	4,563	5,978	..	19,305	8,704	1,526	2,232	73	6,686	4,925
2004	80,834	54,224	23,346	3,134	19,835	4,712	3,197	..	26,610	8,740	1,683	1,254	84	7,020	7,829
2005	82,972	54,841	22,858	3,110	20,840	4,865	3,168	..	28,131	8,712	1,761	1,244	99	4,933	11,382
2006	86,333	55,696	22,475	3,227	21,901	4,743	3,350	..	30,637	7,968	1,943	2,220	98	4,634	13,774
2007	93,728	63,358	23,251	3,346	22,500	4,768	3,695	..	30,370	8,635	2,199	2,918	248	4,945	17,223
2008	98,171	59,883	23,628	3,517	23,465	5,073	4,200	..	38,288	8,788	2,307	2,699	108	5,072	19,314
2009	101,541	60,446	23,281	3,444	24,268	5,156	4,297	..	41,095	8,913	2,508	2,300	119	5,273	21,982
2010	110,330	66,270	22,422	3,532	25,748	5,101	9,467	..	44,060	9,519	2,549	2,422	302	826	28,442
2011	118,507	65,772	22,461	3,624	25,586	5,199	8,902	..	52,735	10,109	2,697	3,696	302	1,577	34,354

주 : 1) 점포외벽 설치분 포함

나. 설치장소별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중	점 내							점 외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 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 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1992	202,381	104,599	23,247	74,535	15,709	8,644	1,114	5,951
1993	263,726	132,785	34,999	95,942	21,718	12,926	2,115	6,677
1994	419,810	243,392	56,240	120,178	66,680	43,121	7,727	15,832
1995	576,708	384,814	89,540	102,354	91,665	71,805	14,490	5,370
1996	794,927	511,213	120,504	151,978	11,232	193,297	158,344	23,862	11,091	-
1997	999,654	655,173	147,887	175,351	21,243	348,992	288,835	40,050	20,107	-
1998	1,234,523	845,177	160,172	207,050	22,124	332,000	253,730	46,402	31,035	833
1999	1,516,179	952,244	190,041	340,133	33,761	343,831	242,318	48,664	50,269	2,580
2000	1,909,420	1,247,827	188,802	435,691	37,100	427,013	306,126	55,292	62,804	2,791
2001	2,279,376	1,351,913	242,864	645,831	38,768	537,984	366,718	70,400	98,075	2,791
2002	2,923,485	1,687,364	262,164	868,038	72,204	33,715	..	715,171	412,748	72,455	122,633	1,087	5,479	100,769
2003	2,639,871	1,272,180	245,790	1,054,426	37,023	30,452	..	773,825	400,370	87,582	149,906	43,498	570	91,899
2004	2,528,338	1,353,602	253,692	850,989	41,645	28,410	..	783,258	345,264	111,463	120,193	65,899	32,305	108,134
2005	2,717,773	1,202,513	248,234	1,180,392	42,223	44,411	..	866,951	359,219	126,921	92,940	83,428	64,858	139,585
2006	2,957,688	1,295,548	292,271	1,285,613	42,404	41,852	..	952,493	349,603	155,658	102,813	88,480	71,414	184,525
2007	3,028,366	1,315,119	309,588	1,337,762	17,860	48,037	..	945,149	353,205	155,161	99,838	55,501	77,982	203,462
2008	3,066,188	1,261,653	295,424	1,459,908	27,986	21,137	..	1,084,399	389,628	161,624	117,991	100,923	91,393	222,840
2009	3,411,597	1,398,773	322,864	1,521,498	138,523	29,939	..	877,933	252,326	190,470	127,688	3,394	84,725	219,330
2010	3,397,301	1,298,480	264,465	1,561,561	125,978	146,817	..	937,601	406,595	159,123	120,743	7,469	11,536	232,135
2011	3,381,635	1,271,050	259,377	1,574,162	127,062	149,984	..	978,386	413,393	155,302	137,202	2,550	22,918	247,020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합 계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기기운영자
1991	164,946	81,186	18,146	65,614
1992	218,090	113,243	24,361	80,486
1993	285,444	145,711	37,114	102,619
1994	486,490	286,513	63,967	136,010
1995	668,373	456,619	104,030	107,724
1996	988,224	669,557	144,366	163,069	11,232
1997	1,348,646	944,008	187,937	195,458	21,243
1998	1,566,523	1,098,907	206,574	238,085	22,957
1999	1,860,010	1,194,562	238,705	390,402	36,341
2000	2,336,433	1,553,953	244,094	498,495	39,891
2001	2,817,360	1,718,631	313,264	743,906	41,559
2002	3,638,656	2,100,112	334,619	990,671	73,291	39,194	100,769
2003	3,413,696	1,672,550	333,372	1,204,332	80,521	31,022	91,899
2004	3,311,596	1,698,866	365,155	971,182	107,544	60,715	108,134
2005	3,584,724	1,561,732	375,155	1,273,332	125,651	109,269	139,585
2006	3,910,181	1,645,151	447,929	1,388,426	130,884	113,266	184,525
2007	3,973,515	1,668,324	464,749	1,437,600	73,361	126,019	203,462
2008	4,150,587	1,651,281	457,048	1,577,899	128,909	112,530	222,840
2009	4,289,530	1,651,099	513,334	1,649,186	141,917	114,664	219,330
2010	4,334,902	1,705,075	423,588	1,682,304	133,447	158,357	232,135
2011	4,360,021	1,684,443	414,679	1,711,364	129,612	172,902	247,020

6. 직불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단위 : 천매, 건, 백만원, 개)

연 중	카드발급매수	이용 실적		가맹점수 ¹⁾
		건 수	금 액	
1996	12,290	659,900	33,663	121,788
1997	24,423	1,118,842	57,015	181,412
1998	33,636	1,444,273	64,533	183,017
1999	39,315	1,891,669	97,728	198,208
2000	53,758	1,786,068	106,360	246,012
2001	63,078	1,622,420	97,600	284,113
2002	65,362	1,170,998	75,510	282,496
2003	65,818	904,374	61,985	281,183
2004	63,173	1,105,741	70,381	303,348
2005	62,030	3,532,786	174,091	295,961
2006	63,432	2,465,714	113,004	280,455
2007	62,608	1,834,000	79,000	252,000
2008	64,319	1,335,000	57,000	252,000
2009	60,114	1,027,359	49,816	250,591
2010	51,403	949,524	39,349	248,801
2011	51,204	792,114	33,673	248,240

주 : 1) 하나의 가맹점이 다수의 은행에 가입된 경우 중복 합산

7.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단위 : 천매, 천건, 십억원, 천개)

연 중	카드발급매수	이 용 실 적		가맹점수 ¹⁾
		건 수	금 액	
2004	11,782	77,632	2,628	17,499
2005	19,620	195,516	7,774	19,103
2006	26,799	328,896	12,330	20,807
2007 ²⁾	39,346	510,877	18,855	14,732
2008	54,457	742,592	26,802	15,436
2009	64,230	1,049,027	36,462	16,466
2010	74,185	1,416,598	51,781	21,160
2011	84,641	1,898,335	69,458	20,606

주 : 1) 하나의 가맹점이 다수의 카드사 또는 은행에 가입된 경우 중복 합산
 2) 2007년 가맹점수 감소는 일부 카드사 합병으로 중복 가맹점이 제외된 데다 일부 카드사에서 실적없는 가맹점을 2007년중 일괄적으로 통계에서 제외한데 기인

8. 은행공동망 현황

가. CD 공동망

1) 예금인출¹⁾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현 금 인 출												잔 액 조 회 건 수					
	건 수						금 액						잔 액 조 회 건 수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외환점 및 저축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외환점 및 저축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외환점 및 저축관	금융 투자 회사
1991	16062	9405	1739	4918	-	-	28488	16529	3074	8885	-	-	6482	3882	660	1920	-	-
1992	23029	12313	1062	9654	-	-	48334	23081	1998	18255	-	-	8473	4415	354	3704	-	-
1993	32480	18582	4213	9635	-	-	66598	37264	8878	20456	-	-	11041	6547	1309	3185	-	-
1994	46976	26888	6674	13419	-	-	110042	61413	15989	32600	-	-	16626	9904	2180	4542	-	-
1995	68009	42313	9873	15588	235	-	164531	99329	24719	40100	383	-	26581	17187	3567	5711	116	-
1996	117824	72381	15604	28247	1592	-	268561	157555	36926	71156	2924	-	48742	31171	6178	10590	808	-
1997	170730	123806	14752	30355	1817	-	388286	273568	28888	63352	2479	-	141377	99880	12305	26512	2670	-
1998	189651	135421	14923	36997	2310	-	373187	273361	26802	69954	3070	-	211801	142180	19233	45841	4547	-
1999	231613	162735	14592	50768	3518	-	465952	341656	26027	94205	4064	-	106606	76437	6565	21679	1925	-
2000	254370	179852	15009	56945	2564	-	531875	384210	29419	114029	4217	-	109212	77806	6594	23340	1532	-
2001	297089	213690	16916	63200	3288	-	665215	491766	35670	132108	5671	-	126937	90073	7498	27457	1909	-
2002	331494	231642	19964	72463	7425	-	789751	568846	44383	162362	14160	-	146310	101217	8999	32255	3879	-
2003	294679	192802	19811	70623	11448	-	641715	429162	41096	149607	11184	-	135206	88158	8924	31810	6314	-
2004	279928	175681	18359	72126	13762	-	571506	366325	36378	143381	21850	-	131944	82132	8489	33497	7826	-
2005	275778	168967	17200	72717	16874	-	553190	347292	33878	140668	31352	-	134618	81722	8272	35009	9615	-
2006	272708	166154	16368	71196	18985	-	549990	343773	32238	138236	35743	-	128474	70657	8514	37678	11625	-
2007	253133	148320	14989	70103	19721	-	507153	303694	29593	136206	37660	-	146624	85428	8487	39518	13191	-
2008	246411	144036	14018	68790	19507	-	494824	296356	27815	132858	37795	-	151432	88199	8455	40935	13843	-
2009	238735	138061	13044	65784	19231	2615	478983	283061	25937	126391	38277	5317	151141	87570	8060	40399	14231	881
2010	243967	135884	12331	66728	19564	9460	515716	288643	25940	137260	42243	21630	150610	85864	7502	39983	13979	3282
2011	242932	134765	11574	66758	18981	10854	531499	293248	25943	141904	42947	27397	144260	82363	6802	38394	13183	3518

주 : 1) 1988년 7월부터 가동. 취급은행 기준

2) 현금서비스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현금서비스인출								현금서비스 잔액조회 건수			
	건 수				금 액							
	계 ¹⁾	BC계 ²⁾	외환계	국민계	계 ¹⁾	BC계 ²⁾	외환계	국민계	계 ¹⁾	BC계 ²⁾	외환계	국민계
1994	7,158	5,235	1,522	401	18,363	12,230	4,804	1,329	1,045	707	264	74
1995	13,809	7,463	4,792	1,554	39,962	18,472	16,098	5,392	2,193	1,066	875	252
1996	17,041	9,126	5,413	2,502	50,698	23,214	18,637	8,847	2,878	1,416	1,039	423
1997	10,565	1,131	4,881	4,553	35,741	3,082	16,887	15,772	2,045	182	996	867
1998	10,414	..	5,482	4,932	32,563	..	17,474	15,089	2,666	..	1,365	1,301
1999	9,771	..	4,547	5,224	29,024	..	13,929	15,095	2,995	..	1,360	1,635
2000	19,205	..	8,097	11,108	67,755	..	28,465	39,290	5,021	..	2,116	2,905
2001	32,566	..	12,434	20,132	121,712	..	44,616	77,096	10,276	..	4,155	6,121
2002	38,109	..	12,177	25,932	151,948	..	48,103	103,845	12,634	..	4,175	8,459
2003	6,731	..	3,104	3,627	24,301	..	11,825	12,476	2,291	..	949	1,342
2004	3,416	11,030	1,160
2005	2,254	7,222	720
2006	1,771	5,590	458
2007	1,348	4,153	516
2008	1,290	4,034	531
2009	1,379	4,127	530
2010	1,513	4,674	513
2011	1,465	4,692	493

주 : 1) 2004년부터 외환카드, 국민카드 등의 모은행 합병 등으로 통합실적만 기재

2) CD공동망을 이용하던 BC카드계 제휴은행의 현금서비스는 1997년 2월 BC카드 현금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3) 계좌이체¹⁾

(단위 : 천건, 억원)

연중	계좌이체건수						계좌이체금액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외은지점 및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외은지점 및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1995	11,765	8,223	802	2,698	42	-	105,921	73,836	7,222	24,521	342	-
1996	24,019	15,947	1,757	5,838	477	-	221,005	145,574	16,455	55,621	3,355	-
1997	39,344	25,995	2,794	9,768	787	-	378,232	275,012	63,451	38,263	1,506	-
1998	44,459	29,401	3,229	10,904	925	-	381,302	267,661	61,042	50,589	2,010	-
1999	64,551	40,461	4,554	18,216	1,320	-	586,780	422,131	58,792	101,836	4,021	-
2000	103,490	68,438	6,551	26,810	1,691	-	1,029,644	689,766	87,748	247,553	4,577	-
2001	119,715	72,933	7,868	37,087	1,827	-	1,259,022	820,900	85,261	345,012	7,849	-
2002	128,384	74,614	8,129	43,208	2,433	-	1,521,137	943,815	91,137	461,693	24,493	-
2003	132,145	70,144	8,152	49,844	4,005	-	1,456,527	819,837	84,572	515,369	36,749	-
2004	123,325	72,609	8,387	37,013	5,316	-	1,254,993	771,899	79,191	359,030	44,873	-
2005	141,026	80,541	9,421	43,658	7,406	-	1,433,534	860,785	90,656	419,950	62,143	-
2006	165,784	91,730	10,982	53,300	9,772	-	1,693,440	989,213	106,314	514,830	83,083	-
2007	188,757	99,293	12,620	64,590	12,254	-	1,866,910	1,049,160	117,857	598,635	101,258	-
2008	218,458	115,300	14,026	74,669	14,463	-	1,899,296	1,056,694	118,135	615,215	109,252	-
2009	239,770	123,032	15,197	84,108	16,850	583	1,911,537	1,034,041	118,921	632,200	117,437	8,938
2010	266,524	117,072	20,726	103,016	23,677	2,033	2,250,975	1,000,838	147,542	922,906	151,859	27,830
2011	294,269	127,041	22,753	114,977	26,909	2,589	2,494,008	1,103,668	160,993	1,019,648	172,701	36,998

주 : 1) 1994년 2월부터 실시. 수취은행 기준

나. 타행환공동망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현 금 송 금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1991	21,682	10,643	1,536	9,503	-	-	218,472	110,004	16,104	92,364	-	-
1992	37,211	17,985	2,907	16,319	-	-	379,021	191,253	29,310	158,458	-	-
1993	54,911	29,905	7,077	17,929	-	-	699,685	444,591	74,401	180,693	-	-
1994	88,924	48,807	10,866	29,251	..	-	1,733,915	1,192,957	148,340	392,618	..	-
1995	137,716	85,345	14,307	36,093	1,971	-	3,481,307	2,636,192	261,689	562,885	20,540	-
1996	197,288	119,881	19,872	51,689	5,846	-	6,005,254	4,602,482	450,697	897,080	54,995	-
1997	241,990	153,632	22,885	57,763	7,710	-	9,794,009	7,855,947	671,172	1,188,147	78,743	-
1998	270,262	172,797	22,195	66,161	9,109	-	11,542,943	9,326,947	697,574	1,416,600	101,822	-
1999	320,603	211,618	20,680	78,269	10,036	-	15,892,011	12,950,447	902,978	1,883,883	154,703	-
2000	392,112	265,846	22,215	94,137	9,914	-	19,221,154	15,465,727	1,071,376	2,435,905	248,146	-
2001	380,462	253,777	20,701	95,120	10,864	-	14,872,444	11,541,017	803,112	2,290,356	237,959	-
2002	315,092	186,541	17,051	78,726	32,774	-	10,977,252	7,644,521	610,801	1,958,497	763,433	-
2003	259,682	138,727	16,481	71,335	33,139	-	8,959,192	5,594,815	565,497	1,930,954	867,926	-
2004	223,434	123,318	16,056	55,307	28,753	-	8,019,252	4,911,735	547,110	1,852,100	708,307	-
2005	179,940	94,867	13,343	45,804	25,926	-	7,881,831	4,561,933	545,344	1,970,300	804,254	-
2006	181,770	101,411	13,161	42,235	24,963	-	8,058,899	4,585,941	577,310	2,034,117	861,531	-
2007	163,899	87,135	14,231	38,805	23,728	-	8,120,239	4,447,180	612,416	2,106,170	954,473	-
2008	134,531	58,272	17,205	36,044	23,010	-	8,123,766	4,306,606	662,896	2,178,151	976,113	-
2009	123,648	50,466	16,916	32,742	22,647	877	8,037,461	4,058,368	658,342	2,149,243	1,023,334	148,174
2010	107,973	37,957	14,269	30,333	23,102	2,312	8,143,943	3,952,551	660,687	2,145,879	1,013,147	371,679
2011	103,561	35,592	13,217	29,277	23,602	1,873	8,664,696	4,182,029	709,405	2,284,534	1,175,862	312,846

(계 속)

(단위 : 건, 백만원)

연 중	추 심 대 전 송 금 ¹⁾								자 기 앞 수 표 조 회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중	지방	특수	계	시중	지방	특수							
1991	12	240	62,832	-	-	
1992	17	4	2	11	24	5	10	9	11,092	6,575	823	3,694	-	-	
1993	2	0	0	2	0	0	0	0	8,922	4,849	147	3,926	-	-	
1994	10	2	6	2	24	4	15	5	141,533	84,395	5,409	51,729	-	-	
1995	19	6	12	1	80	11	67	2	349,320	193,688	16,410	123,918	15,304	-	
1996	8	-	2	6	19	-	2	16	455,000	297,000	17,000	135,000	6,000	-	
1997	4	1	3	-	138	5	133	-	526,836	343,988	18,615	159,360	4,873	-	
1998	9	-	8	1	25	-	25	-	581,020	397,841	27,756	149,731	5,692	-	
1999	6	1	4	1	11	10	1	-	615,889	420,691	29,784	157,229	8,185	-	
2000	5	1	-	4	14	5	-	9	424,170	273,680	12,685	129,002	8,803	-	
2001	5	-	2	3	7	-	6	1	489,572	256,236	11,022	195,258	27,056	-	
2002	15	2	4	9	37	6	6	25	547,378	108,939	7,617	229,974	200,848	-	
2003	-	-	-	-	-	-	-	-	622,237	113,564	7,119	248,340	253,214	-	
2004	-	-	-	-	-	-	-	-	601,152	89,178	7,414	230,584	273,976	-	
2005	15,698	-	15,698	-	167,697	-	167,697	-	680,975	124,449	7,961	206,094	342,471	-	
2006	19,009	2	19,007	-	190,121	40	190,081	-	735,879	143,347	9,335	197,696	385,501	-	
2007	17,000	-	17,000	-	181,100	-	181,100	-	735,000	174,000	9,000	182,000	370,000	-	
2008	14,981	-	14,981	-	178,916	-	178,916	-	949,419	186,236	11,684	183,742	566,757	-	
2009	12,319	-	12,319	-	156,528	-	156,528	-	918,456	147,655	10,810	166,673	577,352	15,966	
2010	8,868	-	8,868	-	89,572	-	89,572	-	790,944	156,062	8,214	142,390	380,788	103,490	
2011	-	-	-	-	-	-	-	-	723,087	201,488	12,799	109,454	237,520	161,826	

주 : 1) 어음 이미지 교환으로 인해 2011년에는 거래가 없음

다. ARS 공동망¹⁾

(단위 : 천건)

연 중	총이용 건수	잔 액 조 회					무통장거래내역 조회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1	23,837	7,786	3,491	1,032	3,263	-	14,060	5,723	1,498	6,839	-
1992	35,453	11,245	5,133	1,781	4,331	-	20,602	8,507	3,034	9,061	-
1993	48,216	15,406	7,088	2,457	5,861	-	27,131	11,845	4,047	11,239	-
1994	61,013	20,664	9,164	3,172	8,328	-	32,600	12,945	4,658	14,997	-
1995	75,247	27,357	16,091	4,210	6,744	312	39,137	22,428	5,613	10,657	439
1996	104,344	46,001	27,785	5,434	11,350	1,432	50,323	29,821	5,195	13,625	1,682
1997	123,878	59,741	40,108	6,804	10,485	2,344	54,890	35,537	4,955	12,339	2,059
1998	120,766	60,693	39,502	6,610	11,342	3,239	52,092	32,687	4,365	12,660	2,379
1999	106,300	50,426	31,207	4,032	11,478	3,709	47,620	28,634	2,982	13,462	2,542
2000	103,983	45,774	28,956	3,242	9,871	3,705	47,388	30,145	2,431	12,319	2,493
2001	103,195	43,175	22,944	3,379	13,200	3,652	47,290	24,589	2,971	17,267	2,463

주 : 1) 1989년 4월부터 가동하여 2002년 12월 전자금융공동망으로 업무이관으로 사용 중단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신용카드 관련처리 ²⁾	환율안내 ³⁾	금 용 상 품 안 내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1	1,501	471	29	-
1992	2,428	524	15	7	2	6	-
1993	4,363	577	12	6	1	5	-
1994	6,256	550	12	6	1	5	-
1995	6,533	616	10	7	1	2	..
1996	5,222	703	16	10	2	3	1
1997	3,918	786	12	9	1	2	..
1998	1,885	754	5	3	1	1	0
1999	570	488	3	2	0	1	0
2000	1,397	420	3	2	0	1	0
2001	809

주 : 2) 수협, 축협, 신한비자, 동화카드, 동남카드, 대동비자, 광주비자, 제주비자, 강원비자, 충북비자, 국민카드, 장은카드, 외환카드, 하나비자, 보람비자, 평화비자 카드사를 통한 결제대금 조회, 이용내역 조회, 카드조회, 현금서비스 업무, 안내업무, 거래승인 업무 처리분

3) 2001년부터 ARS를 통한 환율안내, 금융상품안내, 통지서비스, 계좌이체, 지로이용안내 서비스 중단

(계 속)

(단위 : 천건)

연중	통 지 서 비 스 ⁴⁾					자 기 앞 수 표 조 회					계 좌 이 체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3	378	-	295	114	19	162	-	54	18	7	29	-
1994	270	198	0	72	-	580	317	39	224	-	79	38	11	30	-
1995	232	197	0	35	-	1,262	928	80	250	4	95	58	16	20	1
1996	184	159	0	25	-	1,702	1,198	114	376	14	189	130	19	35	5
1997	429	156	0	21	252	3,864	2,629	311	871	53	249	184	26	30	9
1998	119	83	0	13	23	4,976	3,284	365	1,248	79	230	165	21	32	12
1999	115	80	0	9	26	6,934	4,346	350	2,107	131	142	92	8	28	14
2000	61	61	0	-	-	8,889	6,038	402	2,309	140	56	35	3	11	7
2001	11,613	6,232	531	4,681	169

주 : 4) 수시통지, 건수통지, 영업종료후 통지, 익영업일 통지, 환율통지, PC 조회통지분임

(계 속)

(단위 : 건)

연 중	가 계 수 표 조 회 ⁵⁾					지로 이용 안내 ⁶⁾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및 외은지점	
1995	3,195	2,364	173	609	49	1,635
1996	2,252	1,659	171	416	6	1,543
1997	1,869	1,548	74	243	4	1,370
1998	1,353	1,070	75	204	4	1,351
1999	744	585	28	130	1	873
2000	546	358	39	147	2	1,246
2001	308	229	27	47	5	..

주 : 5) 1994년 10월부터 실시 6) 1994년 12월부터 실시

라. CMS공동망¹⁾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계		입금이체		출금이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6	2,826	6,680	891	512	1,935	6,168
1997	44,924	48,894	2,345	3,389	42,579	45,505
1998	103,533	85,264	2,469	7,029	101,064	78,235
1999	172,717	145,816	8,181	27,017	164,536	118,799
2000	289,881	324,658	26,105	84,570	263,776	240,088
2001	438,787	629,433	48,724	164,191	390,063	465,242
2002	593,753	1,051,085	65,380	251,179	528,373	799,906
2003	576,247	863,868	60,745	228,933	515,502	634,935
2004	630,764	727,112	65,777	218,747	564,987	508,365
2005	709,901	799,979	62,440	208,196	647,461	591,783
2006	790,497	898,469	62,829	205,597	727,668	692,872
2007	850,207	1,019,220	71,052	221,350	779,155	797,870
2008	794,689	1,103,301	81,568	258,799	713,121	844,502
2009	753,492	1,020,085	67,753	219,138	685,739	800,947
2010	748,553	1,078,970	62,033	222,111	686,520	856,859
2011	771,625	1,171,160	67,967	269,235	703,658	901,925

주 : 1) 1996년 8월부터 실시

마. 전자금융공동망¹⁾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총 이용 실적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외은지점 및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외은지점 및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2001	258,130	156,578	19,751	73,643	8,158	-	7,124,912	5,514,928	466,309	994,626	149,049	-
2002	513,764	345,778	34,185	122,437	11,364	-	20,248,725	16,292,026	1,031,078	2,509,781	415,840	-
2003	641,368	429,613	40,553	151,675	19,526	-	28,092,897	22,754,339	1,233,538	3,310,959	1,490,397	-
2004	756,579	500,346	45,275	185,636	25,322	-	31,798,107	25,704,477	1,442,347	3,923,501	727,782	-
2005	915,836	595,322	54,020	233,484	33,010	-	39,256,765	31,848,409	1,687,799	4,846,793	873,764	-
2006	1,034,799	669,844	60,680	266,393	37,882	-	49,389,355	40,428,007	1,866,161	6,063,578	1,031,609	-
2007	1,231,444	823,430	65,824	297,978	44,212	-	60,858,130	49,718,032	2,173,037	7,612,193	1,354,868	-
2008	1,461,189	1,013,148	76,979	318,781	52,282	-	71,725,540	58,608,338	2,628,313	8,953,305	1,535,584	-
2009	1,627,593	1,121,269	85,364	349,526	58,258	13,176	83,235,554	67,704,674	3,039,288	10,369,283	1,597,308	525,001
2010	1,844,809	1,236,413	97,119	404,428	66,723	40,126	95,910,589	76,192,890	3,408,588	12,588,500	1,969,840	1,750,771
2011	2,072,035	1,369,719	109,748	471,797	75,683	45,088	111,808,668	88,038,360	3,984,162	15,139,990	2,700,236	1,945,920

주 : 1) 2001년 4월부터 가동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잔 액 조 회						무통장거래내역조회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외은지점 및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외은지점 및 저축기관	금융 투자 회사
2001	43,175	22,944	3,379	13,200	3,652	-	47,290	24,589	2,971	17,267	2,463	-
2002	40,045	23,773	3,017	10,409	2,846	-	46,934	26,760	2,765	15,317	2,092	-
2003	42,359	24,955	2,989	11,858	2,557	-	46,344	25,353	2,585	16,454	1,952	-
2004	43,240	25,293	2,847	12,719	2,381	-	48,020	26,467	2,530	17,178	1,845	-
2005	35,507	20,910	2,315	10,353	1,929	-	42,261	23,518	2,101	15,041	1,601	-
2006	27,585	15,931	1,933	8,223	1,498	-	32,643	19,031	1,542	10,932	1,138	-
2007	22,196	12,475	1,590	6,822	1,309	-	22,078	12,025	1,198	7,993	862	-
2008	21,703	11,983	1,515	6,872	1,333	-	21,078	11,508	1,081	7,671	819	-
2009	20,415	11,365	1,342	6,406	1,284	18	19,949	10,794	945	7,361	843	6
2010	19,770	11,194	1,233	6,174	1,136	33	20,440	10,665	861	7,762	1,125	27
2011	18,447	10,468	1,130	5,827	985	37	19,314	9,951	804	7,457	1,073	29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신용카드관련업무				자기앞수표조회					기 타 (단위 : 건)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²⁾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2001	809	760	21	28	11,613	6,232	531	4,681	169	8,813	5,433	533	1,107	1,740
2002	124	73	31	20	15,033	10,020	679	4,105	229	886	273	206	337	70
2003	38	14	16	8	20,249	13,196	977	5,756	320	146	50	12	65	19
2004	20	8	9	3	23,531	15,105	1,199	6,840	387	92	25	7	18	42
2005	19	9	8	2	26,417	16,668	1,323	7,984	442	84	33	5	36	10
2006	3	0	3	0	23,208	14,287	1,173	7,361	387	80	39	16	19	6
2007	2	0	2	0	19,229	11,816	1,122	5,953	338	65	19	10	25	11
2008	2	0	2	0	16,161	9,712	895	5,048	506	46	0	0	0	46
2009	2	0	2	0	12,376	7,065	575	4,123	613	50	24	2	2	22
2010	0	0	0	0	8,884	5,011	395	3,012	466	21	15	1	0	5
2011	1	0	1	0	6,368	3,637	239	2,151	341	78	18	21	16	23

주 : 2) 2008년부터는 저축기관 포함

(계 속)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물품대금 무선결제시스템 ³⁾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2001	6	6	-	-	28	28	-	-
2002	5,615	1,381	388	3,846	15,662	5,167	1,117	9,378
2003	12,971	8,763	1,763	2,445	44,220	32,014	4,983	7,223
2004	13,671	9,511	2,940	1,220	48,179	36,179	7,800	4,200
2005	13,019	9,026	3,042	951	50,581	38,556	8,371	3,654
2006	14,460	9,457	3,896	1,107	53,477	39,563	9,760	4,154
2007	14,952	5,964	1,700	7,288	58,959	30,151	5,531	23,277
2008	14,157	8,880	3,967	1,310	58,638	42,431	10,667	5,540
2009	13,245	8,178	3,803	1,264	61,932	44,070	11,852	6,010
2010	12,896	7,918	3,735	1,243	60,718	42,085	12,488	6,145
2011	12,502	8,191	3,256	1,055	59,952	43,480	11,135	5,337

주 : 3) 2001년 9월부터 가동

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¹⁾

(단위 : 건, 억원)

연 중	전자외상매출채권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2002	9,774	9,774	-	-	4,431	4,431	-	-
2003	36,229	30,364	-	5,865	18,937	17,522	-	1,415
2004	57,069	48,743	340	7,986	28,917	26,494	11	2,412
2005	105,685	86,332	1,658	17,695	36,375	31,606	173	4,596
2006	115,105	93,995	850	20,260	49,095	42,707	246	6,142
2007	101,902	84,927	191	16,784	50,486	45,503	62	4,921
2008	88,393	67,296	262	20,835	40,750	33,444	94	7,212
2009	74,576	50,791	178	23,607	34,147	27,716	68	9,363
2010	77,153	43,739	397	33,017	40,997	25,724	238	15,035
2011	71,482	37,187	362	33,933	38,103	22,031	260	15,812

주 : 1) 2002년 3월부터 가동

9. 은행공동망의 외부정보망과의 접속 현황

(단위 : 개, 건)

연말	점외CD/ATM 공동망 ¹⁾		경찰전산망 ²⁾		종합무역 자동화망 ³⁾		SWIFT ⁴⁾		e-L/C공동망 ⁵⁾	
	가입 은행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가입 은행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가입 은행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가입 기관수 (연말)	이용건수 ⁶⁾ (연중)	가입 기관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1992	-	-	-	-	-	-	57	1,754,727	-	-
1993	30	..	-	-	64	3,726,556	-	-
1994	..	3,633,000	30	326	33	99,217	66	5,324,391	-	-
1995	..	15,060,000	30	324	33	960,741	75	7,093,774	-	-
1996	..	25,265,000	30	207	34	3,358,883	82	8,572,803	-	-
1997	32	25,254,000	32	282	35	5,456,181	92	9,553,975	-	-
1998	33	23,212,000	27	480	30	4,968,426	83	9,553,985	-	-
1999	22	35,285,000	22	493	25	6,743,670	74	11,705,000	-	-
2000	23	25,295,000	21	345	24	8,088,046	72	11,204,000	-	-
2001	20	30,836,000	19	411	21	9,928,482	66	14,323,000	-	-
2002	22	39,473,000	19	866	19	10,288,914	70	15,917,708	-	-
2003	22	38,026,000	21	581	21	11,778,924	68	17,073,913	-	-
2004	22	34,321,000	21	372	20	11,599,191	68	18,280,538	-	-
2005	22	35,006,000	20	1,354	20	11,397,595	69	20,337,081
2006	21	35,488,000	19	642	19	11,944,637	67	22,742,214	14	370,207
2007	21	46,180,000	19	4,165	19	12,650,857	68	26,226,476	18	414,002
2008	21	47,936,000	19	6,125	19	12,354,194	72	28,645,323	18	380,208
2009	21	49,281,000	22	6,612	19	11,901,116	72	28,164,791	18	380,499
2010	21	52,664,000	23	6,091	19	13,171,991	77	33,936,676	18	377,447
2011	21	48,689,000	22	9,170	19	13,764,895	81	37,820,000	19	465,774

주 : 1) 1993년 10월부터 가동

2) 1993년 2월 접속

3) 1994년 1월 접속. 체신금융(1996년 가입) 포함

4) 1992년 3월 접속. SWIFT 본부의 통신방식 변경(X.25 Protocol→Internet Protocol)에 따라 2004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을 통해 SWIFT망과 접속하지 않고 국내 개별금융기관들이 직접 SWIFTnet에 접속. 2005년부터 SWIFTnet 이용건수 기재

5) 2005년 9월부터 가동

6) 메시지 송신 기준

【 증 권 】

1. 전산직원 현황

가. 전산직원수 비중

(단위 : 명, %)

연 말	총 직 원(A)			전 산 직 원(B)			B/A		
	계	증 권	자산운용	계	증 권	자산운용	전 체	증 권	자산운용
1993	30,278	24,736	5,542	1,393	1,091	302	4.6	4.4	5.4
1994	33,947	28,067	5,880	1,446	1,148	298	4.3	4.1	5.1
1995	33,775	28,994	4,781	1,463	1,218	245	4.3	4.2	5.1
1996	33,581	27,663	5,918	1,560	1,241	319	4.6	4.5	5.4
1997	30,041	25,942	4,099	1,443	1,246	197	4.8	4.8	4.8
1998	26,071	21,861	4,210	1,295	1,072	223	5.0	4.9	5.3
1999	35,239	31,317	3,922	1,494	1,291	203	4.2	4.1	5.2
2000	37,026	35,776	1,250	1,869	1,777	92	5.0	5.0	7.4
2001	36,763	35,425	1,338	2,152	2,064	88	5.9	5.8	6.6
2002	33,880	32,520	1,360	1,922	1,838	84	5.7	5.7	6.2
2003	33,023	31,823	1,200	1,822	1,757	65	5.5	5.5	5.4
2004	30,109	28,958	1,151	1,651	1,593	58	5.5	5.5	5.0
2005	29,784	28,719	1,065	1,463	1,423	40	4.9	5.0	3.8
2006	29,281	28,142	1,139	1,424	1,380	44	4.9	4.9	3.9
2007	36,533	35,021	1,512	1,457	1,406	51	4.0	4.0	3.4
2008	39,366	37,180	2,186	1,583	1,516	67	4.0	4.1	3.1
2009	39,508	37,251	2,257	1,581	1,515	66	4.0	4.1	2.9
2010	42,316	39,981	2,335	1,761	1,679	82	4.2	4.2	3.5
2011	44,384	41,698	2,686	1,819	1,734	85	4.1	4.2	3.2

나. 업무별 전산직원수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행정지원 요 원	기타
1993	1,394	204	283	632	102	71	78	24
1994	1,446	207	340	603	87	85	97	27
1995	1,464	184	316	646	84	87	111	36
1996	1,560	203	350	709	85	89	94	30
1997	1,442	207	355	567	123	88	62	40
1998	1,295	242	322	441	55	70	56	109
1999	1,494	281	322	579	62	63	59	128
2000	1,869	401	355	806	75	57	142	33
2001	2,152	478	441	925	83	79	123	23
2002	1,922	275	411	960	60	61	136	19
2003	1,822	232	492	788	64	70	164	12
2004	1,651	189	565	667	25	53	145	7
2005	1,463	155	494	586	34	51	136	7
2006	1,424	222	489	494	43	49	119	8
2007	1,457	183	540	511	44	51	146	2
2008	1,583	246	657	431	34	42	159	17
2009	1,581	210	634	451	27	45	197	17
2010	1,761	214	698	537	52	45	204	11
2011	1,819	253	716	512	27	43	263	14

2. 전산사무기기 현황

가. 주전산기¹⁾

(단위 : 대)

연 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1994	1,386	1,279	107	26	24	2	23	17	6
1995	1,860	1,736	124	27	25	2	26	19	7
1996	2,276	2,124	152	23	20	3	33	27	6
1997	2,506	2,278	228	22	20	2	27	26	1
1998	2,502	2,188	314	17	17	-	41	37	4
1999	3,381	3,093	288	25	25	-	42	36	6
2000	4,042	3,919	123	109	109	-	92	87	5
2001	4,739	4,610	129	57	57	-	97	95	2
2002	3,784	3,689	95	34	34	-	72	70	2
2003	3,874	3,777	97	35	35	-	73	71	2
2004	4,470	4,358	112	38	37	1	350	349	1
2005	4,570	4,477	93	35	34	1	365	363	2
2006	4,287	4,195	92	87	86	1	165	163	2
2007	4,979	4,837	142	72	70	2	104	96	8
2008	5,694	5,368	326	81	81	0	98	98	0
2009	6,161	5,932	229	73	73	0	142	142	0
2010	6,492	6,174	318	96	96	0	187	187	0
2011	6,820	6,500	320	138	138	0	238	238	0

주 : 1) 규모별[구입가(US\$)] 분류기준 :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형 : 70~150만불 미만, 중형 : 30~70만불 미만,
 소형 : 10~30만불 미만, 초소형 : 10만불 미만

(계 속)

(단위 : 대)

연 말	종 형			소 형			초 소 형		
	소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1994	23	18	5	79	76	3	1,235	1,144	91
1995	36	32	4	140	131	9	1,631	1,529	102
1996	53	46	7	210	203	7	1,957	1,828	129
1997	71	47	24	288	229	59	2,098	1,956	142
1998	93	60	33	221	112	109	2,130	1,962	168
1999	202	179	23	851	724	127	2,261	2,129	132
2000	433	412	21	1,424	1,371	53	1,984	1,940	44
2001	719	689	30	1,682	1,620	62	2,184	2,149	35
2002	362	345	17	953	921	32	2,363	2,319	44
2003	372	354	18	969	937	32	2,425	2,380	45
2004	550	526	24	970	923	47	2,562	2,523	39
2005	496	478	18	1,036	1,007	29	2,638	2,595	43
2006	680	668	12	951	923	28	2,404	2,355	49
2007	1,025	1,009	16	1,063	1,022	41	2,715	2,640	75
2008	628	619	9	1,410	1,361	49	3,500	3,232	268
2009	682	678	4	1,372	1,326	46	3,892	3,713	179
2010	761	742	19	1,531	1,476	55	3,917	3,673	244
2011	744	734	10	1,533	1,482	51	4,167	3,908	259

나. 사무자동화기기

(단위 : 대)

연 말	단 말 기 ¹⁾			개인용컴퓨터(PC) ²⁾			휴대용노트북			PDA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증 권	자산 운용
1993	14,790	13,465	1,325	11,402	10,356	1,046
1994	13,260	11,886	1,374	23,933	21,278	2,655
1995	10,248	8,751	1,497	31,641	27,761	3,880
1996	5,301	4,035	1,266	39,474	35,218	4,256
1997	2,414	2,254	160	42,224	37,806	4,418
1998	1,919	1,675	244	43,369	37,873	5,496
1999	697	680	17	60,520	55,440	5,080
2000	1,095	1,063	32	91,197	89,661	1,536
2001	500	480	20	90,947	89,455	1,492
2002	398	358	40	80,217	78,698	1,519	3,257	3,037	220	1,514	1,514	-
2003	137	60	77	83,307	81,863	1,444	2,930	2,646	284	216	180	36
2004	291	246	45	76,131	74,819	1,312	3,622	3,353	269	3,366	3,366	0
2005	411	331	80	68,615	67,309	1,306	3,484	3,258	226	2,834	2,834	0
2006	405	294	111	67,902	66,611	1,291	4,331	4,103	228	2,826	2,826	0
2007	139	22	117	76,696	74,751	1,945	6,213	5,912	301	2,226	2,226	0
2008	98	54	44	77,540	74,822	2,718	6,401	6,036	365	274	253	21
2009	77	55	22	81,650	79,017	2,633	6,925	6,519	406	174	174	0
2010	2,212	1,978	234	82,409	79,353	3,056	9,787	9,352	435	459	324	135
2011	2,407	2,189	218	82,801	79,172	3,629	10,914	10,238	676	215	180	35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 겸용 PC 포함

3. 전산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산예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예산 (A)	전산업무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3	18,788	1,536	8.2	449	1,087	416	134	116	283	139
1994	25,196	2,067	8.2	822	1,245	439	180	137	363	127
1995	26,033	3,147	12.1	1,197	1,950	394	186	527	660	184
1996	25,341	3,012	11.9	1,298	1,714	551	192	309	447	215
1997	28,166	2,691	9.6	860	1,831	462	258	322	518	270
1998	23,370	2,737	11.7	988	1,749	330	303	325	529	262
1999	38,972	6,608	17.0	3,435	3,173	867	272	487	953	593
2000	53,767	9,394	17.5	5,116	4,278	875	481	1,096	1,220	606
2001	47,675	8,969	18.8	3,737	5,232	1,233	711	1,261	1,240	786
2002	46,100	7,188	15.6	2,149	5,039	1,015	746	1,278	1,360	640
2003	44,824	6,707	15.0	1,665	5,042	880	911	1,153	1,185	913
2004	42,711	5,302	12.4	981	4,321	534	927	1,029	1,197	634
2005	39,142	4,538	11.6	962	3,576	473	755	870	992	486
2006	43,373	5,019	11.6	1,187	3,832	505	733	818	1,343	434
2007	58,291	6,902	11.8	2,278	4,624	479	864	909	1,674	699
2008	64,022	8,803	13.7	3,602	5,201	497	1,095	1,083	1,937	589
2009	70,219	9,050	12.9	3,702	5,348	766	904	1,101	1,965	612
2010	75,423	9,881	13.1	3,681	6,200	1,015	934	1,058	2,288	905
2011	84,595	10,435	12.3	3,748	6,687	1,261	958	1,082	2,432	955

4.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가. 폰 트레이딩

(단위 : 개, 천건)

연 말	실 시 기 관			이 용 실 적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조 회 ¹⁾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통지 및 안내	기 타
1991	1	1	-	1,000	1,000	-	-	..	-
1992	2	2	-	2,000	2,000	-	-	..	-
1993	2	2	-	3,157	3,040	-	13	..	105
1994	4	3	1	4,424	4,173	12	19	..	221
1995	7	5	2	6,482	6,171	25	16	..	271
1996	12	10	2	12,226	12,105	27	27	..	67
1997	15	13	2	78,082	77,847	94	109	..	32
1998	13	10	3	142,217	141,414	68	716	..	19
1999	15	13	2	193,851	175,121	98	18,491	..	141
2000	25	25	-	133,316	107,636	435	24,362	..	883
2001	21	21	-	71,941	46,205	278	23,356	..	2,101
2002	27	27	-	316,244	271,127	685	17,269	846	26,317
2003	28	28	-	230,982	215,482	558	7,903	567	6,471
2004	29	29	-	214,083	202,379	595	8,050	521	2,539
2005	31	31	-	326,510	317,003	327	6,686	540	1,954
2006	29	29	-	373,973	361,863	500	10,723	322	565
2007	29	29	-	320,175	302,651	1,862	13,980	642	1,039
2008	30	30	-	296,066	215,544	7,243	74,897	349	5,898
2009	27	27	-	224,737	137,380	5,282	78,934	359	2,782
2010	27	27	-	130,207	89,455	3,154	32,405	1,461	3,732
2011	27	27	-	76,965	57,818	3,381	10,117	10	5,639

주 : 1) 잔액조회, 시세조회, 금융상품안내 등

나. 인터넷 트레이딩

1) HTS(Home Trading System)

(단위 : 개, 명, 천건)

연 말	실시기관	이용고객수		이 용 실 적				
		등록고객 (연말)	실이용고객 (연중)	계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2	30	3,436,519	1,522,171	5,073,756	4,701,039	3,898	339,502	4,266
2003	33	4,661,548	1,666,381	5,242,146	4,668,190	4,519	521,506	5,597
2004	33	5,283,511	1,289,258	5,278,736	5,035,674	2,001	239,501	1,599
2005	31	6,498,049	1,510,892	6,968,543	6,582,881	4,529	378,576	2,557
2006	29	8,036,310	1,984,289	7,599,586	7,116,618	8,612	471,643	2,713
2007	30	11,984,719	3,034,247	8,173,816	7,472,468	38,250	663,052	45
2008	33	15,798,279	3,450,373	10,073,544	8,673,989	28,808	1,143,902	226,845
2009r	33	13,989,425	3,369,329	10,437,014	8,664,195	96,925	999,128	676,766
2010r	34	16,169,771	3,292,616	16,178,926	14,744,091	69,377	984,316	381,142
2011	35	20,742,535	3,619,698	15,298,415	12,906,195	28,988	1,814,840	548,392

2) WTS(Web Trading System)

(단위 : 개, 명, 천건)

연 말	실시기관	이용고객수		이 용 실 적				
		등록고객 (연말)	실이용고객 (연중)	계	조 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2	28	4,041,198	1,112,037	441,703	392,896	406	48,081	320
2003	25	4,223,012	939,113	106,334	90,045	390	15,894	5
2004	23	4,069,944	354,719	63,590	51,701	478	11,408	3
2005	23	4,311,994	498,936	240,515	219,371	1,041	20,098	5
2006	23	5,125,934	972,655	246,320	206,303	4,622	35,387	8
2007	25	8,086,961	2,789,578	645,154	563,580	17,613	63,150	811
2008	24	9,815,850	3,008,502	846,073	731,543	30,548	80,193	3,789
2009	22	12,884,565	2,909,991	860,274	671,780	36,675	131,619	20,200
2010	26	15,038,127	3,201,051	1,584,017	963,546	38,326	559,713	22,432
2011	27	20,051,102	3,265,322	1,417,262	1,235,418	93,802	75,989	12,053

다. 모바일 트레이딩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기기종류	실시기관	실이용고객수 (연중)
2003	전용단말기	26	154,044
	휴대전화	19	40,726
	PDA	14	17,954
	계		212,724
2004	전용단말기	23	99,369
	휴대전화	20	40,445
	PDA	18	15,864
	계		155,678
2005	전용단말기	20	38,368
	휴대전화	21	32,991
	PDA	18	12,221
	계		83,580
2006	전용단말기	23	17,497
	휴대전화	23	83,722
	PDA	20	16,838
	계		118,057
2007	전용단말기	23	37,090
	휴대전화	22	143,126
	PDA	20	21,152
	계		201,368
2008	전용단말기	16	87,803
	휴대전화	21	157,183
	PDA	20	27,119
	계		272,105
2009	전용단말기	16	39,659
	휴대전화	20	258,355
	PDA	20	23,760
	계		321,774
2010	전용단말기	18	10,434
	휴대전화	24	503,158
	PDA	20	119,992
	계		633,584
2011	전용단말기	17	21,911
	휴대전화	27	710,944
	PDA	21	234,020
	계		966,875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기기종류	이 용 실 적				
		계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3	전용단말기	57,676	42,659	268	9,118	5,631
	휴대전화	20,933	19,118	1	1,520	294
	PDA	24,764	22,866	8	1,856	34
	계	103,373	84,643	277	12,494	5,959
2004	전용단말기	59,030	47,611	19	9,041	2,359
	휴대전화	56,276	55,085	16	1,175	0
	PDA	32,405	30,853	9	1,543	0
	계	147,711	133,548	44	11,795	2,359
2005	전용단말기	35,796	31,867	21	3,905	3
	휴대전화	57,546	55,405	18	2,123	0
	PDA	38,141	36,489	7	1,645	0
	계	131,483	123,761	46	7,673	3
2006	전용단말기	24,750	21,257	20	3,473	0
	휴대전화	78,143	71,059	22	7,062	0
	PDA	59,372	58,016	6	1,350	0
	계	162,265	150,332	48	11,885	0
2007	전용단말기	54,362	50,515	137	3,710	0
	휴대전화	235,339	218,582	4,934	11,762	60
	PDA	25,057	21,739	1,393	1,838	87
	계	314,757	290,836	6,465	17,309	147
2008	전용단말기	40,908	38,762	0	2,146	0
	휴대전화	415,029	395,917	465	18,539	108
	PDA	28,434	25,415	10	2,461	548
	계	484,371	460,094	475	23,146	656
2009	전용단말기	30,847	28,531	0	2,316	0
	휴대전화	395,559	375,270	858	19,382	49
	PDA	21,680	15,254	953	5,291	182
	계	448,086	419,055	1,811	26,989	231
2010	전용단말기	9,889	6,787	4	2,958	140
	휴대전화	486,557	442,155	1,126	39,629	3,647
	PDA	79,247	58,943	62	18,400	1,842
	계	575,693	507,885	1,192	60,987	5,629
2011	전용단말기	5,180	2,871	2	1,193	1,114
	휴대전화	1,919,586	1,652,283	5,292	155,375	106,635
	PDA	201,711	182,225	1,875	14,823	2,789
	계	2,126,477	1,837,379	7,169	171,391	110,538

3) 공인인증서 및 OTP 발급개수

(단위 : 개)

연 말	공인인증서 발급개수			OTP 발급개수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2007	4,178,419	4,087,426	90,993	8,757	8,670	87
2008	4,253,329	4,146,674	106,655	71,161	68,472	1,278
2009	4,522,086	4,407,913	114,173	267,037	242,528	5,114
2010	4,571,507	4,445,543	125,964	302,012	297,423	4,589
2011	4,743,645	4,601,376	142,269	305,388	299,566	5,822

5. 자체 CD/ATM¹⁾

가. 설치현황

(단위 : 대)

연 말	합 계			C D			A T M		
	계	증 권	자산운용	소 계	증 권	자산운용	소 계	증 권	자산운용
1991	38	18	20	38	18	20	-	-	-
1992	43	18	25	43	18	25	-	-	-
1993	48	18	30	48	18	30	-	-	-
1994	50	18	32	50	18	32	-	-	-
1995	62	18	44	59	18	41	3	-	3
1996	67	18	49	59	18	41	8	-	8
1997	70	5	65	52	5	47	18	-	18
1998	99	55	44	85	55	30	14	-	14
1999	217	158	59	203	158	45	14	-	14
2000	618	618	-	424	424	-	194	194	-
2001	700	700	-	407	407	-	293	293	-
2002	415	415	-	415	415	-	-	-	-
2003	388	388	-	388	388	-	-	-	-
2004	287	287	-	287	287	-	-	-	-
2005	293	293	-	293	293	-	-	-	-
2006	228	228	-	228	228	-	-	-	-
2007	379	379	-	279	279	-	100	100	-
2008	431	431	-	273	273	-	158	158	-
2009	528	528	-	271	271	-	257	257	-
2010	495	495	-	171	171	-	324	324	-
2011	746	237	-	237	237	-	509	509	-

주 : 1) 증권회사가 증권객장에 설치한 CD/ATM

나.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계	현금인출	현금입금	잔액조회	계좌이체	기 타
1991	20	15	-	5	-	-
1992	24	18	-	6	-	-
1993	29	23	-	6	-	-
1994	29	22	-	7	-	-
1995	55	40	..	14	1	-
1996	62	44	..	16	2	-
1997	165	97	..	56	1	11
1998	207	149	..	34	3	21
1999	532	279	..	236	9	8
2000	1,128	396	..	533	91	108
2001	1,765	878	..	274	169	444
2002	1,867	855	-	843	158	11
2003	730	380	-	210	130	10
2004	384	238	-	9	120	16
2005	362	213	-	28	102	19
2006	358	277	-	19	55	7
2007	865	400	89	97	143	136
2008r	1,993	1,103	496	99	294	1
2009r	4,531	2,660	824	590	432	25
2010r	3,715	2,150	983	237	309	36
2011	5,224	2,316	1,043	1,170	574	121

6. 증권 공동정보망

가. 이용기관수

(단위 : 개)

연 말	바로 매매 ¹⁾	주식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선물거래 시스템	코스닥주식 매매시스템	증권정보 시스템	증권망	증권 ARS
1990	-	25	-	-	-	33	15
1991	-	31	-	-	-	39	16
1992	-	32	-	-	-	40	16
1993	-	32	-	-	-	43	17
1994	-	32	-	-	86	47	17
1995	-	33	-	-	87	47	16
1996	-	36	32	33	125	60	13
1997	-	39	39	39	..	62	19
1998	-	41	41	41	..	53	24
1999	-	40	38	44	..	273	23
2000	-	51	47	63	208	715	24
2001	-	51	53	63	230	651	7
2002	-	49	47	59	278	511	5
2003	-	49	46	65	582	450	5
2004	-	48	55	55	273	498	5
2005	-	46	46	46	275	485	4
2006	-	52	56	55	283	442	4
2007	-	53	51	53	280	440	4
2008	13	60	72	60	354	170	1
2009	24	60	63	60	352	138	1
2010r	26	60	61	60	119	203	2
2011	26	61	61	61	119	214	2

주 : 1) 2008년 11월 서비스 개시

(계 속)

(단위 : 개)

연 말	Power Base ²⁾	HTS 시스템	주가지수 옵션시스템	채권매매 시스템	장외채권 시스템	프리보드 시스템 ³⁾	개별주식 옵션시스템
2002	36	8	47	180	68	46	29
2003	36	8	46	143	71	45	29
2004	40	11	55	178	37	41	24
2005	33	8	54	176	35	40	24
2006	48	10	56	141	27	37	24
2007	50	50	51	140	39	39	51
2008	61	10	72	224	28	60	72
2009	62	10	63	217	31	41	63
2010	64	11	61	220	67	41	61
2011	60	10	61	224	70	41	61

주 : 2) 2007년 1월까지 Base21, 2007년 2월부터 PowerBase

3) 2005년 7월 OTC-BB 시스템에서 프리보드(Freeboard) 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나.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바로 매매 ¹⁾	주식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선물시스템	코스닥주식 매매시스템	증권정보 시스템	증권 ARS ³⁾
1990	-	25,863	-	1	49,476	27,590
1991	-	27,204	-	1	50,737	33,202
1992	-	39,320	-	14	70,495	45,871
1993	-	52,504	-	20	92,044	54,585
1994	-	57,319	-	23	98,464	71,957
1995	-	38,238	-	32	67,527	57,434
1996	-	50,857	48	136	93,735	47,862
1997	-	97,381	2,684	1,269	..	28,200
1998	-	150,270	10,814	1,021	..	4,864
1999	-	434,492	14,690	82,969	..	29,974
2000	-	471,651	23,902	372,463	..	14,907
2001	-	321,250	23,697	204,774	..	348
2002	-	192,594	12,285	148,156	..	28
2003	-	139,600	14,338	265,074	..	-
2004	-	294,393	34,262	210,779	..	-
2005	-	326,447	37,179	235,324	..	-
2006	-	530,023	45,734	238,572	..	-
2007	-	314,601	66,321	311,465	..	-
2008	9 ²⁾ ²⁾	182,500	..	-
2009	361	1,494,606	94,205	732,039	..	30
2010r	1,532	566,375	112,010	446,016	50	1
2011	4,732	1,861,155	160,297	881,534

주 : 1) 2008년 11월 서비스 개시

2) 2009년초 시스템 전면교체로 실적파악이 불가능

3) 2011년부터 PowerBase시스템을 통해 처리

(계 속)

(단위 : 천건)

연 말	Power Base ⁴⁾	HTS 시스템 ⁵⁾	주가지수 옵션시스템	채권매매 시스템	장외채권 시스템	프리보드 시스템 ⁶⁾	개별주식 옵션시스템
2002	291,211	45,650	56,657	1,280	440	166	2
2003	124,404	118,830	68,597	1,620	548	44	0.2
2004	144,741	80,280	183,712	1,490	598	125	25
2005	127,560	67,290	215,006	1,520	610	112	18
2006	156,839	200,156	313,792	1,121	620	137	26
2007	190,474	-	573,600	1,196	560	578	5
2008	1,787,917	-	.. ⁷⁾	1,929	730	913	.. ⁷⁾
2009r	2,070,222	-	1,087,923	4,496	816	216	20
2010r	2,752,097	-	1,476,128	4,928	720	348	4
2011	2,716,965	-	2,062,892	4,512	201	283	1

주 : 4) 2007년 1월까지 Base21, 2007년 2월부터 PowerBase

5) 2007년부터 PowerBase시스템을 통해 처리

6) 2005년 7월 OTC-BB 시스템에서 프리보드(Freeboard) 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7) 2009년초 시스템 전면교체로 실적파악이 불가능

【 보 험 】

1. 전산직원 현황

가. 전산직원 비중

(단위 : 명, %)

연말	총 직 원(A)			전 산 직 원(B)			B/A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1992	66,557	45,541	21,016	1,459	1,014	445	2.2	2.2	2.1
1993	70,946	49,353	21,593	1,616	1,162	454	2.3	2.4	2.1
1994	74,567	51,945	22,622	1,708	1,242	466	2.3	2.4	2.1
1995	80,092	54,826	25,266	1,986	1,306	680	2.5	2.4	2.7
1996	85,359	55,097	30,262	1,995	1,285	710	2.3	2.3	2.3
1997	84,664	52,681	31,983	1,671	1,126	545	2.0	2.1	1.7
1998	64,990	39,102	25,888	1,403	978	425	2.2	2.5	1.6
1999	61,617	36,557	25,060	1,287	879	408	2.1	2.4	1.6
2000	56,427	32,841	23,586	1,269	740	529	2.2	2.3	2.2
2001	50,509	29,058	21,451	1,245	740	505	2.5	2.5	2.4
2002	47,969	26,559	21,410	1,325	791	534	2.8	3.0	2.5
2003	48,392	27,130	21,262	1,400	841	559	2.9	3.1	2.6
2004	45,694	25,452	20,242	1,354	828	526	3.0	3.3	2.6
2005	48,360	25,179	23,181	1,376	766	610	2.8	3.0	2.6
2006	50,685	26,159	24,526	1,443	839	604	2.8	3.2	2.5
2007	51,359	25,001	26,358	1,536	922	614	3.0	3.7	2.3
2008	56,192	27,866	28,326	1,417	947	470	2.5	3.4	1.7
2009	54,973	26,778	28,195	1,226	821	405	2.2	3.1	1.4
2010	55,333	26,300	29,033	1,239	830	409	2.2	3.1	1.4
2011	58,679	28,112	30,567	1,234	862	372	2.1	3.1	1.2

나. 업무별 전산직원수

1) 전 체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2	1,459	194	277	786	56	34	70	42
1993	1,616	211	320	860	60	42	87	36
1994	1,708	238	323	896	63	57	90	41
1995	1,986	309	392	973	69	84	113	46
1996	1,995	339	375	948	60	113	100	60
1997	1,671	315	357	726	47	93	99	34
1998	1,403	273	299	606	31	76	104	14
1999	1,287	292	322	516	32	44	77	5
2000	1,269	291	266	528	32	36	100	16
2001	1,245	270	235	505	30	69	111	25
2002	1,325	244	321	516	55	49	133	7
2003	1,400	266	354	516	53	42	145	24
2004	1,354	204	272	557	59	40	181	41
2005	1,376	183	298	571	62	37	210	15
2006	1,443	168	408	523	47	52	234	11
2007	1,536	190	370	639	70	40	220	7
2008	1,417	168	341	561	66	28	233	23
2009	1,226	135	367	442	33	14	224	11
2010	1,239	157	372	417	56	16	204	17
2011	1,234	150	441	379	49	24	169	22

2) 생명보험회사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행정지원 요원	기 타
1992	1,014	135	178	556	46	22	47	30
1993	1,162	155	203	642	46	29	59	28
1994	1,242	179	229	659	46	40	59	30
1995	1,306	205	262	648	47	42	70	32
1996	1,285	225	262	597	47	51	62	41
1997	1,126	210	245	491	37	56	67	20
1998	978	187	234	398	30	50	69	10
1999	879	203	236	340	31	23	41	5
2000	740	169	161	309	20	18	60	3
2001	740	174	133	299	24	41	63	6
2002	791	146	199	297	44	23	80	2
2003	841	162	209	308	40	23	94	5
2004	828	124	156	348	45	29	116	10
2005	766	95	133	354	50	22	102	10
2006	839	93	203	331	39	35	135	3
2007	922	101	196	409	56	28	126	6
2008	947	110	193	425	55	23	130	14
2009	821	82	255	337	22	11	113	1
2010	830	84	264	320	43	12	94	13
2011	862	96	296	292	39	12	106	21

3) 손해보험회사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2	445	59	99	230	10	12	23	12
1993	454	56	117	218	14	13	28	8
1994	466	59	94	237	17	17	31	11
1995	680	104	130	325	22	42	43	14
1996	710	114	113	351	13	62	38	19
1997	545	105	112	235	10	37	32	14
1998	425	86	65	208	1	26	35	4
1999	408	89	86	176	-	21	36	-
2000	529	122	105	219	12	18	40	13
2001	505	96	102	206	6	28	48	19
2002	534	98	122	219	11	26	53	5
2003	559	104	145	208	13	19	51	19
2004	526	80	116	209	14	11	65	31
2005	610	88	165	217	12	15	108	5
2006	604	75	205	192	8	17	99	8
2007	614	89	174	230	14	12	94	1
2008	470	58	148	136	11	5	103	9
2009	405	53	112	105	11	3	111	10
2010	409	73	108	97	13	4	110	4
2011	372	54	145	87	10	12	63	1

2. 전산사무기기 현황

가. 주전산기¹⁾

(단위 : 대)

연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중 형			소 형			초 소 형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1992	249	217	32	12	8	4	17	9	8	25	19	6	176	170	6	19	11	8
1993	367	259	108	15	10	5	18	10	8	29	23	6	208	203	5	97	13	84
1994	421	284	137	15	10	5	21	12	9	25	20	5	235	227	8	125	15	110
1995	406	255	151	17	12	5	23	11	12	34	20	14	192	185	7	140	27	113
1996	530	325	205	25	14	11	26	13	13	54	24	30	203	197	6	222	77	145
1997	840	257	583	24	15	9	28	16	12	59	30	29	151	72	79	578	124	454
1998	770	221	549	28	16	12	20	12	8	77	35	42	91	62	29	554	96	458
1999	990	440	550	29	22	7	32	12	20	92	50	42	121	54	67	716	302	414
2000	1,385	565	820	31	22	9	29	16	13	79	35	44	299	84	215	947	408	539
2001	1,674	717	957	36	23	13	24	14	10	105	55	50	392	136	256	1,117	489	628
2002	2,026	1,090	936	33	21	12	130	110	20	398	297	101	653	165	488	812	497	315
2003	2,302	1,247	1,055	34	21	13	132	111	21	416	304	112	760	212	548	960	599	361
2004	2,242	1,418	824	47	32	15	58	30	28	371	142	229	468	407	61	1,298	807	491
2005	3,382	1,890	1,492	43	25	18	131	52	79	405	136	269	657	518	139	2,146	1,159	987
2006	3,911	2,088	1,823	45	29	16	89	40	49	394	166	228	907	680	227	2,476	1,173	1,303
2007	4,913	2,705	2,208	65	51	14	102	43	59	335	118	217	1,348	671	677	3,063	1,822	1,241
2008	5,928	3,064	2,864	76	65	11	105	35	70	532	235	297	1,340	636	704	3,875	2,093	1,782
2009	6,665	3,546	3,119	57	49	8	153	68	85	515	218	297	1,782	1,073	709	4,158	2,138	2,020
2010r	6,931	3,637	3,294	36	28	8	145	79	66	414	185	229	1,248	799	449	5,088	2,546	2,542
2011	7,945	4,129	3,816	32	17	15	115	44	71	512	212	300	983	688	295	6,303	3,168	3,135

주 : 1) '92년부터 규모별[구입가(US\$)] 분류기준 :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형 : 70~150만불 미만, 중형 : 30~70만불 미만,
 소형 : 10~30만불 미만, 초소형 : 10만불 미만

나. 단말기/개인용 컴퓨터(PC)

(단위 : 대)

연말	단 말 기 ¹⁾			개인용컴퓨터(PC) ²⁾			휴대용노트북			PDA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1992	4,096	336	3,760	26,538	21,781	4,757
1993	4,054	383	3,671	35,379	28,298	7,081
1994	3,596	369	3,227	52,015	39,128	12,887
1995	3,025	218	2,807	80,011	56,123	23,888
1996	1,998	205	1,793	109,640	66,084	43,556
1997	1,043	65	978	125,777	71,863	53,914
1998	811	47	764	121,950	66,287	55,663
1999	1,188	531	657	124,940	67,402	57,538
2000	675	13	662	138,956	80,379	58,577
2001	57	28	29	153,047	89,127	63,920
2002	12	9	3	126,570	69,409	57,161	11,501	5,923	5,578	1,226	976	250
2003	13	13	..	145,369	82,201	63,168	16,458	10,670	5,788	1,276	976	300
2004	129	55	74	148,434	80,735	67,699	15,922	9,253	6,669	1,022	1,022	0
2005	73	..	73	157,173	82,376	74,797	27,335	10,473	16,862	980	980	0
2006	6	2	4	164,155	92,529	71,626	35,023	12,658	22,365	23	23	0
2007	18	3	15	174,264	90,753	83,511	37,535	14,002	23,533	30	18	12
2008	16	2	14	187,693	93,097	94,596	37,433	13,973	23,460	8	8	0
2009r	31	0	31	200,738	97,257	103,481	50,826	14,097	36,729	8	8	0
2010r	31	0	31	218,223	98,464	119,759	48,292	16,723	31,569	1,063	178	885
2011	141	100	41	219,830	91,471	128,359	60,953	14,181	46,772	1,449	11	1,438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겸용 PC 포함

3. 전산예산 현황

가. 전 체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2	49,111	1,406	2.9	455	951	320	86	155	259	131
1993	57,617	1,716	3.0	570	1,146	328	121	172	358	167
1994	67,774	2,353	3.5	954	1,398	397	146	227	471	167
1995	84,514	3,057	3.6	1,341	1,715	435	194	306	603	177
1996	106,806	3,973	3.7	1,603	2,369	564	238	413	900	254
1997	113,177	4,640	4.1	1,682	2,957	774	338	527	1,216	102
1998	118,029	4,241	3.6	1,321	2,921	825	387	555	979	175
1999	114,195	4,989	4.4	1,987	3,002	734	480	550	1,066	173
2000	125,161	6,299	5.0	3,135	3,164	655	511	663	1,237	98
2001	123,102	7,201	5.8	3,581	3,621	755	613	791	1,296	165
2002	139,957	7,507	5.4	3,865	3,642	652	676	763	1,384	168
2003	143,019	8,067	5.6	3,952	4,115	582	773	805	1,775	180
2004	144,111	8,143	4.9	3,347	4,796	832	650	747	2,335	232
2005	158,531	7,288	4.6	3,521	3,767	720	633	693	1,452	269
2006	177,335	8,350	4.7	3,474	4,876	642	791	702	2,211	530
2007	184,003	10,157	5.5	3,777	6,380	650	977	742	2,293	787
2008	219,190	10,608	4.8	4,224	6,373	442	1,266	845	2,746	1,075
2009	197,885	10,451	5.3	4,020	6,431	417	1,395	1,038	2,416	1,165
2010	212,030	12,059	5.7	5,045	7,054	564	1,353	1,049	2,927	1,161
2011	255,459	12,137	4.8	4,453	7,684	584	1,540	877	3,874	809

나. 생명보험회사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2	37,915	944	2.5	386	558	176	64	105	137	76
1993	44,710	1,160	2.6	498	662	164	90	117	213	78
1994	52,978	1,521	2.9	757	763	178	114	156	252	63
1995	64,476	1,889	2.9	998	891	172	146	208	315	51
1996	77,467	2,062	2.7	1,002	1,060	182	159	241	414	63
1997	78,969	2,050	2.6	893	1,157	182	201	252	459	62
1998	84,593	1,924	2.3	820	1,105	179	206	250	392	77
1999	81,176	2,438	3.0	1,229	1,209	184	240	249	461	75
2000	88,105	3,801	4.3	2,238	1,563	208	256	358	665	76
2001	81,792	4,354	5.3	2,512	1,842	347	323	446	615	111
2002	92,563	4,318	4.7	2,345	1,973	269	393	458	735	118
2003	94,576	4,743	5.0	2,431	2,312	350	488	516	883	75
2004	97,097	4,418	4.5	2,072	2,346	465	323	471	963	124
2005	110,782	4,396	4.0	2,061	2,335	438	332	448	971	146
2006	117,269	4,690	4.0	1,946	2,744	304	425	441	1,140	434
2007	120,232	5,379	4.7	2,117	3,262	324	537	459	1,301	640
2008	144,338	6,004	4.2	2,545	3,449	230	759	490	1,383	587
2009	129,151	5,089	3.9	1,647	3,293	158	794	436	1,295	610
2010	135,914	5,714	4.2	1,990	3,746	313	760	430	1,608	635
2011	148,857	5,898	4.0	1,657	4,240	324	852	467	1,906	691

다. 손해보험회사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2	11,197	463	4.1	69	393	144	22	50	121	55
1993	12,907	556	4.3	71	485	163	31	55	145	90
1994	14,796	832	5.6	197	636	220	32	71	208	104
1995	20,038	1,168	5.8	343	825	263	48	99	288	127
1996	29,339	1,911	6.5	601	1,309	382	79	172	486	190
1997	34,208	2,589	7.6	789	1,800	592	136	275	757	40
1998	33,436	2,317	6.9	501	1,816	645	181	305	587	98
1999	33,019	2,551	7.7	758	1,793	549	240	301	605	98
2000	37,056	2,497	6.7	897	1,601	446	255	305	572	22
2001	41,310	2,848	6.9	1,069	1,778	408	290	346	680	54
2002	47,394	3,190	6.7	1,521	1,669	383	283	304	648	50
2003	48,443	3,324	6.9	1,521	1,803	233	285	289	891	105
2004	47,014	3,725	5.5	1,275	2,450	367	327	276	1,372	108
2005	47,749	2,892	6.1	1,460	1,432	282	301	245	481	123
2006	60,066	3,660	6.1	1,528	2,132	338	366	261	1,071	96
2007	63,771	4,468	7.0	1,728	2,740	351	485	305	1,053	146
2008	74,852	4,603	6.1	1,679	2,924	212	506	355	1,363	488
2009	68,734	5,512	8.0	2,373	3,137	259	601	602	1,120	555
2010	76,117	6,345	8.3	3,055	3,306	251	593	618	1,318	526
2011	106,602	6,240	5.9	2,796	3,444	260	688	410	1,968	118

4.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가. 텔레마케팅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기관			이용실적						
	계	생보	손보	계	보험계약 조회	보험계약 체결	대출관련 조회	대출계약 체결	상품안내	기타
1991	5	2	3	1,359	1,105	..	9	..	18	227
1992	7	2	5	2,519	2,129	..	16	..	32	341
1993	8	2	6	2,165	1,794	..	14	..	25	333
1994	11	3	8	711	468	..	8	..	11	223
1995	12	4	8	1,354	999	..	39	..	22	295
1996	16	8	8	2,171	1,735	..	36	..	28	372
1997	18	11	7	3,953	1,141	..	1,855	..	483	475
1998	15	10	5	5,075	3,537	..	559	..	184	795
1999	16	11	5	5,312	2,429	..	1,067	..	818	998
2000	14	9	5	12,028	6,614	..	2,498	..	1,124	1,792
2001	25	14	11	20,296	14,287	..	2,987	..	860	2,163
2002	31	20	11	54,191	19,372	1,324	16,782	1,384	5,017	10,313
2003	33	19	14	85,567	48,577	1,678	7,600	2,731	14,529	10,452
2004	28	16	12	66,248	19,511	2,063	5,392	1,281	18,825	19,176
2005	31	17	14	93,969	49,448	4,718	13,075	1,168	16,357	9,203
2006	31	17	14	133,471	62,127	6,379	23,376	2,303	18,758	20,528
2007	32	19	13	143,617	64,723	23,327	11,684	1,904	28,334	13,645
2008	33	19	14	140,633	70,022	17,557	14,121	1,965	15,522	21,446
2009	35	21	14	136,726	74,334	8,961	9,913	8,970	10,217	24,331
2010	34	19	15	109,978	33,519	14,119	11,108	4,147	9,578	37,507
2011	38	33	16	133,286	36,423	8,408	9,775	4,426	25,082	49,172

나. 인터넷 마케팅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기관			이용실적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계	생보	손보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보험 체결	대출 체결	기타		
2002	27	15	12	37,037	34,980	267	571	567	651	7,252,620	2,886,991
2003	28	16	12	67,963	64,570	503	1,165	804	921	13,535,532	3,534,481
2004	26	14	12	69,709	66,303	479	762	968	1,198	10,528,381	5,694,242
2005	29	16	13	89,903	86,340	281	396	1,059	1,827	14,396,453	6,085,505
2006	34	18	16	100,156	95,709	832	1,584	703	1,328	20,729,079	6,461,505
2007	37	22	15	159,175	148,871	1,432	3,114	3,178	2,580	21,648,195	9,027,940
2008	38	22	16	295,540	271,908	3,372	7,945	2,466	9,849	28,507,627	11,235,395
2009	37	22	15	287,268	274,696	1,952	7,370	2,789	461	44,261,700	10,298,655
2010	37	21	16	761,766	746,512	4,536	5,340	4,459	919	43,732,873	16,638,437
2011	38	22	16	810,160	778,411	9,313	7,935	11,325	924	47,287,461	11,956,057

5.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실적

가. 조회 및 배정시스템

(단위 : 천건)

연 중	자 동 차 보 험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조회	종합보험개별 할인·할증	사고피해자	사고운전자 ¹⁾	보험가입경력	인수거부물건 배정
1994	5,520	5,400	72	-	-	-
1995	4,051	11,031	181	100	-	-
1996	4,918	12,134	119	199	-	0.071
1997	10,523	16,948	754	492	-	20
1998	11,352	35,201	659	955	-	1
1999	19,489	155,267	940	192	-	3
2000	11,240	220,550	1,560	340	-	110
2001	591	372,664	1,662	373	-	898 ²⁾
2002	1,352	569,905	1,795	271	23,405	317
2003	380	558,014	2,248	278	8,284	302
2004	122	488,584	3,073	307	7,102	245
2005	572	531,445	4,491	435	13,156	849
2006	9,116	488,690	5,400	571	17,700	1,040
2007	15,802	455,810	5,550	777	16,820	620
2008	17,241	575,477	4,746	4,479	25,029	156
2009	26,889	741,338	5,277	6,465	40,471	83
2010	38,191	962,635	5,251	26,935	61,996	102
2011	49,151	1,123,003	7,982	54,186	61,996	704

주 : 1) 2006년 이전은 주운전자 조회 포함

2) 보험사별 인수거부물건 판정기준 강화로 이용실적 급증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기타			
	장기보험계약자조회	보유자코드 및 정비공장코드 조회	근재보험 계약자별손해율조회	인보험통합
1998	1,653	157	51	-
1999	1,426	156	66	-
2000	10,100	130	90	-
2001	11,039	981	70	-
2002	41,722	99,149	86	5
2003	19,665	81	106	7,694
2004	14,122	102	68	12,187
2005	16,795	145	194	11,845
2006	12,990	145	450	12,710
2007	21,151	310	460	32,221
2008	26,817	783	456	11,266
2009	37,190	707	411	17,135
2010	40,651	1,238	429	15,124
2011	42,417	1,747	496	14,856

나. 통보 및 EDI 시스템

(단위 : 천건)

연 중	생명보험 거절체 정보교환	적하·선박 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	자배책 미가입 통 보	적하보험계약 및 배서EDI ¹⁾
1996	20	9	-	1,528	84
1997	21	100	-	1,282	160
1998	..	117	-	1,264	235
1999	..	10	-	1,228	394
2000	..	190	..	1,200	340
2001	..	198	..	1,279	213
2002	..	211	2,200	7,132	290
2003	..	199	2,886	7,774	241
2004	..	250	2,350	3,393	286
2005	..	307	2,208	3,341	318
2006	..	201	4,589	2,557	201
2007	..	272	3,070	2,486	703
2008	..	310	2,629	3,060	783
2009	..	300	3,895	2,951	1,723
2010	..	420	4,887	3,069	1,531
2011	..	363	3,579	2,682	181

주 : 1) 2011년부터 송수신되는 문서 중 실제 중계문서 기준으로 집계

【기타 관련기관】

1. 전산직원 현황

가. 전산직원 비율

(단위 : 명, %)

연말	총 직 원 (A)				전 산 직 원 (B)				전 산 직 원 비 율 (B/A)			
	계	카드사 ¹⁾	우체국 및 기금 ²⁾	관련 기관 ³⁾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7	31,049	2,906	16,886	11,257	2,025	310	599	1,116	6.5	10.7	4.9	9.9
1998	21,009	2,428	10,370	8,211	1,754	268	473	1,013	8.3	11.0	4.6	12.3
1999	20,214	2,314	9,667	8,233	1,757	256	462	1,039	8.7	11.1	4.8	12.6
2000	22,872	2,540	11,721	8,611	1,900	294	427	1,179	8.3	11.6	3.6	13.7
2001	23,201	3,047	11,308	8,846	1,850	336	312	1,202	8.0	11.0	2.8	13.6
2002	25,404	4,602	11,599	9,203	2,004	480	316	1,208	7.9	10.4	2.7	13.1
2003	23,030	3,103	10,644	9,283	2,133	498	329	1,306	9.3	16.0	3.1	14.1
2004	18,840	988	11,932	5,920	1,762	171	327	1,264	9.4	17.3	2.7	21.4
2005	18,205	1,040	11,882	5,283	1,600	171	254	1,175	8.8	16.4	2.1	22.2
2006	19,352	1,572	12,074	5,706	1,521	194	258	1,069	7.9	12.3	2.1	18.7
2007	28,680	11,264	11,350	6,066	1,767	418	219	1,130	6.2	3.7	1.9	18.6
2008	29,883	12,246	11,486	6,151	1,921	406	229	1,286	6.4	3.3	2.0	20.9
2009	30,480	13,667	10,703	6,110	1,861	392	221	1,248	6.1	2.9	2.1	20.4
2010	27,819	13,789	8,075	5,955	1,864	401	219	1,244	6.7	2.9	2.7	20.9
2011	30,310	12,015	12,295	6,000	1,918	403	229	1,286	6.3	3.4	2.7	21.4

주 : 1) 2006년까지는 은행계(BC, 신한, 산은캐피탈) 카드사. 2007년부터는 삼성, 현대, 롯데 등 모든 카드사

2) 우체국금융,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3) 은행관련(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증권관련(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보험관련(보험개발원,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기관

나. 업무별 전산직원

1) 전 체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7	2,025	155	285	779	188	108	35	214	261
1998	1,754	152	251	585	142	100	191	133	200
1999	1,757	197	233	491	166	82	206	182	200
2000	1,900	219	358	749	161	90	34	212	77
2001	1,850	226	354	754	145	82	28	168	93
2002	2,004	211	503	749	114	52	22	228	125
2003	2,133	260	570	702	151	60	25	283	82
2004	1,762	172	577	511	140	57	-	220	85
2005	1,600	183	498	513	135	44	-	208	19
2006	1,521	190	627	353	120	53	-	165	13
2007	1,767	221	705	438	123	65	-	201	6
2008	1,921	227	657	500	125	79	-	228	105
2009	1,861	246	489	539	80	114	-	277	116
2010	1,864	271	405	626	159	99	-	285	19
2011	1,918	284	432	610	160	93	-	307	31

2) 카드사¹⁾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7	310	33	58	161	26	14	17	1
1998	268	25	60	136	25	6	16	..
1999	256	27	52	120	32	9	12	4
2000	294	44	75	141	12	8	14	..
2001	336	82	77	152	8	5	12	..
2002	480	47	118	247	6	6	48	8
2003	498	48	129	227	29	4	61	..
2004	171	10	66	57	24	2	10	2
2005	171	10	55	69	23	2	10	2
2006	194	11	42	87	23	4	25	2
2007	418	41	130	128	37	18	64	-
2008	406	45	131	106	29	18	77	-
2009	392	43	135	129	11	10	64	-
2010	401	46	121	137	16	10	69	2
2011	403	61	100	136	10	12	84	-

주 : 1) 2006년까지는 은행계 카드사. 2007년부터는 전업계(삼성, 현대, 롯데, 舊LG) 포함

3) 우체국금융 및 기금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7	599	31	28	115	17	23	-	137	248
1998	473	38	22	91	15	32	-	80	195
1999	462	49	18	78	15	28	-	80	194
2000	427	32	52	143	15	27	-	82	76
2001	312	20	30	112	11	13	-	36	90
2002	316	18	27	109	12	12	-	48	90
2003	329	56	54	91	12	16	-	37	63
2004	327	46	54	91	14	19	-	41	62
2005	254	50	58	91	12	9	-	33	1
2006	258	20	153	57	7	7	-	13	1
2007	219	19	150	30	3	3	-	14	-
2008	229	21	21	63	-	10	-	21	93
2009	221	20	25	57	-	3	-	13	103
2010	219	21	24	85	75	3	-	11	-
2011	229	21	20	85	79	8	-	14	2

4) 관련기관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6	1,222	155	231	425	119	59	116	108	9
1997	1,116	91	199	503	145	71	35	60	12
1998	1,013	89	169	358	102	62	191	37	5
1999	1,039	121	163	293	119	45	206	90	2
2000	1,179	143	231	465	134	55	34	116	1
2001	1,202	124	247	490	126	64	28	120	3
2002	1,208	146	358	393	96	34	22	132	27
2003	1,306	156	387	384	110	40	25	185	19
2004	1,264	116	457	363	102	36	-	169	21
2005	1,175	123	385	353	100	33	-	165	16
2006	1,069	159	432	209	90	42	-	127	10
2007	1,130	161	425	280	83	44	-	131	6
2008	1,286	161	505	331	96	51	-	130	12
2009	1,248	183	329	351	69	101	-	200	13
2010	1,244	204	260	404	68	86	-	205	17
2011	1,286	202	312	389	71	73	-	209	29

2. 전산사무기기 현황

가. 주전산기¹⁾

(단위 : 대)

연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계	카드사 ²⁾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7	463	59	113	291	24	10	3	11	50	2	2	46
1998	425	64	120	241	21	3	4	14	30	13	-	17
1999	579	59	186	334	24	5	3	16	23	5	1	17
2000	941	126	238	577	50	8	1	41	42	5	1	36
2001	2,261	280	247	1,734	297	14	1	282	115	7	2	106
2002	3,113	636	270	2,207	912	18	..	894	155	17	4	134
2003	3,243	662	289	2,292	916	20	..	896	165	23	4	138
2004	1,859	77	338	1,444	68	19	..	49	88	4	23	61
2005	2,053	197	234	1,622	50	23	2	25	118	5	21	92
2006	2,111	201	281	1,629	66	23	3	40	126	20	11	95
2007	3,300	1,084	288	1,928	105	68	2	35	143	75	19	49
2008	3,615	1,033	331	2,251	69	56	2	11	186	67	47	72
2009	3,883	1,227	312	2,344	64	51	2	11	195	61	20	114
2010	4,439	1,397	300	2,742	95	82	2	11	196	72	14	110
2011	5,518	1,544	308	3,666	89	78	2	9	257	132	14	111

주 : 1) 규모별[구입가(US\$)] 분류기준 :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형 : 70~150만불 미만, 중형 : 30~70만불 미만,

소형 : 10~30만불 미만, 초소형 : 10만불 미만

2) 2006년까지는 은행계 카드사. 2007년부터는 전업계(삼성, 현대, 롯데, 舊LG) 포함

(계 속)

(단위 : 대)

연 말	중 형				소 형				초 소 형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7	68	8	-	60	60	11	2	47	261	28	106	127
1998	68	7	1	60	60	11	5	44	246	30	110	106
1999	75	7	1	67	202	13	71	118	255	29	110	116
2000	106	11	45	50	332	79	80	173	411	23	111	277
2001	115	17	46	52	741	79	15	647	993	163	183	647
2002	257	56	36	165	809	207	6	596	980	338	224	418
2003	268	61	39	168	849	210	14	625	1,045	348	232	465
2004	501	13	23	465	402	10	27	365	800	31	265	504
2005	474	17	36	421	672	19	22	631	739	133	153	453
2006	635	39	23	573	674	71	10	593	610	48	234	328
2007	629	138	18	473	771	321	22	428	1,652	482	227	943
2008	672	166	13	493	1,025	313	29	683	1,663	431	240	992
2009	531	248	11	272	1,089	472	27	590	2,004	395	252	1,357
2010	288	155	21	112	734	524	24	186	3,126	564	239	2,323
2011	355	219	22	114	624	397	24	203	4,193	718	246	3,229

나. 사무자동화기기

(단위 : 대)

연 말	단 말 기 ¹⁾				개인용컴퓨터(PC) ²⁾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7	2,061	864	-	1,197	22,494	3,955	9,280	9,259
1998	3,839	404	2	3,433	25,302	5,041	10,894	9,367
1999	3,431	-	-	3,431	25,846	5,489	11,353	9,004
2000	3,590	-	-	3,590	31,283	7,211	11,796	12,276
2001	3,598	-	-	3,598	34,425	11,133	12,128	11,164
2002	4,065	490	1	3,574	44,089	22,156	15,080	6,853
2003	4,091	240	-	3,851	45,184	24,898	13,118	7,168
2004	3,406	241	-	3,165	24,926	3,301	14,322	7,303
2005	3,291	240	-	3,051	26,042	4,362	13,935	7,745
2006	7,668	-	3	7,665	29,281	5,097	15,531	8,653
2007	169	31	2	136	54,885	25,358	15,370	14,157
2008	430	31	-	99	56,633	27,558	15,700	13,375
2009	131	-	-	131	62,330	32,331	14,936	15,063
2010	851	-	-	851	57,796	28,709	16,332	12,755
2011	638	-	-	638	67,391	36,816	17,102	13,473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 겸용 PC 포함

(계 속)

(단위 : 대)

연 말	휴대용노트북				PDA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기타 기관	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기타 기관
2002	2,285	991	265	1,029	33	5	5	23
2003	2,244	838	322	1,084	59	..	5	54
2004	1,788	130	310	1,348	58	..	6	52
2005	2,100	181	308	1,611	35	..	6	29
2006	1,386	198	416	772	438	..	3	435
2007	3,214	560	408	2,246	104	73	8	23
2008	2,827	851	220	1,756	25	3	2	20
2009	4,936	2,754	265	1,917	33	3	10	20
2010	3,105	999	286	1,820	638	-	25	613
2011	5,014	3,137	306	1,571	26	0	25	1

3. 전산예산 현황

가) 전 체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7	18,750	2,466	13.2	445	2,022	753	188	181	790	110
1998	20,139	2,799	13.9	462	2,336	817	217	161	1,001	140
1999	25,372	3,115	12.3	1,030	2,084	611	247	197	706	323
2000	28,890	4,389	15.2	1,992	2,396	942	251	222	819	162
2001	36,432	5,566	15.3	1,872	3,694	1,631	499	362	979	223
2002	45,325	6,732	14.9	2,830	3,902	1,153	549	400	1,448	352
2003	41,248	5,712	13.8	1,678	4,034	1,030	597	521	1,579	307
2004	35,825	4,708	13.1	1,029	3,679	805	482	410	1,707	275
2005	37,606	4,397	11.7	1,054	3,343	851	570	398	1,237	287
2006	34,797	4,641	13.3	1,341	3,300	779	569	424	1,283	245
2007	66,636	6,867	10.3	2,872	4,549	790	912	672	2,381	227
2008	72,308	8,259	11.4	2,642	5,567	957	992	717	2,647	254
2009	84,116	6,314	7.5	1,911	4,403	738	764	692	2,127	82
2010	173,660	8,958	6.8	3,430	5,528	962	1,089	665	2,724	88
2011	217,197	10,745	5.0	4,337	6,408	886	1,142	705	3,477	198

나) 카드사¹⁾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7	3,841	581	15.1	288	294	60	50	25	134	26
1998	3,579	453	12.7	200	253	21	59	18	132	23
1999	4,030	405	10.0	201	204	21	77	18	82	8
2000	4,926	875	17.8	548	327	23	86	44	164	9
2001	7,665	1,430	18.7	968	462	25	109	62	256	11
2002	13,922	2,743	19.7	1,857	886	100	185	116	391	92
2003	11,507	1,784	15.5	844	939	55	264	164	368	88
2004	4,944	466	9.4	135	331	3	45	18	155	110
2005	4,325	533	12.3	173	360	6	58	22	167	107
2006	6,393	1,256	19.6	863	393	124	59	25	185	0
2007	24,983	3,368	13.5	1,177	2,120	321	505	288	1,047	0
2008	28,407	3,255	11.5	894	2,361	247	514	336	1,107	157
2009	37,811	3,054	8.0	1,046	2,008	321	448	314	903	22
2010	83,045	4,717	5.6	2,562	2,153	218	653	256	1,003	23
2011	103,028	5,743	5.6	3,239	2,504	171	648	295	1,261	129

주 : 1) 2006년까지는 은행계 카드사. 2007년부터는 전업계(삼성, 현대, 롯데, 舊LG) 포함

다) 우체국금융 및 기금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7	7,507	495	6.6	68	427	176	57	55	123	17
1998	10,345	695	6.7	29	665	266	73	52	241	32
1999	14,819	578	3.9	65	513	189	60	86	148	30
2000	16,618	666	4.0	69	596	525	2	13	37	20
2001	20,705	917	4.4	87	830	533	95	87	78	37
2002	21,597	735	3.4	116	618	333	140	27	78	40
2003	19,533	665	3.4	74	591	299	91	31	128	42
2004	19,583	794	4.1	111	683	340	106	33	182	22
2005	20,850	733	3.5	25	708	340	145	51	152	20
2006	17,183	895	4.9	35	860	365	154	65	261	15
2007	28,189	471	1.7	64	407	263	56	31	56	-
2008	30,371	767	2.5	130	647	362	152	33	69	31
2009	28,570	339	1.2	59	280	14	65	19	178	4
2010	77,008	909	1.2	62	847	366	196	35	248	2
2011	98,643	979	1.0	98	881	366	213	42	258	2

라) 관련기관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7	7,401	1,389	18.8	89	1,301	517	81	102	533	68
1998	6,215	1,652	26.6	233	1,418	529	85	90	628	86
1999	6,522	2,132	32.7	765	1,367	401	111	93	476	286
2000	7,346	2,849	38.8	1,375	1,473	395	163	165	617	133
2001	8,062	3,219	39.9	817	2,402	1,074	295	213	645	175
2002	9,805	3,255	33.2	857	2,398	720	224	256	978	221
2003	10,209	3,263	32.0	759	2,504	676	242	327	1,082	177
2004	11,298	3,448	30.5	783	2,665	462	331	359	1,370	143
2005	12,431	3,131	25.2	856	2,275	505	367	325	918	160
2006	11,221	2,490	22.2	443	2,047	290	356	334	837	230
2007r	13,464	3,028	22.5	616	2,412	206	351	350	1,278	227
2008	13,530	4,237	31.3	1,618	2,559	348	326	348	1,471	66
2009	17,735	2,921	16.5	806	2,115	403	251	359	1,046	56
2010	13,607	3,334	24.5	805	2,529	378	241	374	1,473	63
2011	15,526	4,023	25.9	1,000	3,023	349	281	367	1,957	68

2. 금융정보화 연혁

- 1983. 5.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보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비서실장) 발족
- 1983. 8. 국무총리실은 국가기관 등의 연간 전산화추진계획에 대해 정보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지시
- 1983.10. 정보산업육성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구성운영 제안 발표
 - 국가기간전산망을 5개망(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으로 구성
 -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자원 통합 운영 등
- 1984. 4. 재무부 기획관리실에서 금융전산망 문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인수
 - 재무부장관은 금융전산망 업무추진을 한국은행이 담당하도록 요청
- 1984. 5. ~ 6. 금융전산망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 1984. 9. 금융전산위원회 발족
 - 의장 : 한국은행 총재, 위원 : 은행감독원장 및 전국 규모 은행장급
- 1984.11.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 발족
- 19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 1987. 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발족
- 1988. 2.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의결
- 1988. 3. 매매체결 시스템 가동(증권)
- 1988. 7. CD공동망 가동
- 1989. 4. ARS공동망 가동
- 1989.12. 타행환공동망, ARS 공동이용시스템 가동(증권)
- 1990. 6. SUCCESS시스템 가동(증권)
- 1992. 1. 금융전산망 제2단계 사업계획 의결, 콜거래정보시스템 가동(투금)
- 1992. 3. 금융공동망센터와 SWIFT(1992. 3), 경찰전산망(1993. 2), 무역자동화망(1994. 1)과 연결
- 1992.1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3. 6.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3.10.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4.12. 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 1995. 5. 무역자동화망사업(적하보험 EDI),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물건 배정시스템,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시스템, 생명보험 거절체 자료 교환시스템 가동(보험)
- 1995.12. 장외시장 시스템 가동(증권), 자배책 미가입자 통보업무시스템 가동(보험)
- 1996. 1. 선물 트레이딩 시스템 가동(증권)
- 1996. 2. 직불카드공동망 가동
- 1996. 5. 주가지수 선물시스템 가동(증권)
- 1996. 6.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발족
- 1996. 8. CMS공동망 가동
- 1996.11.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체(한은 총재→부총재), 채권업무 시스템 가동(증권)
- 1996.1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및 운영세칙 제정
- 1997. 1. 신용정보 공동이용망 가동(은행), 적하보험 EDI 시스템 운영(보험)
- 1997. 2. 은행공동의 전자화폐 표준 제정, 자동차보험 보유자코드 전산망 가동(보험)
- 1997. 6.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가동
- 1997. 7. 주가지수 옵션시스템 가동(증권)
- 1997. 8. 근재보험 계약자별 할인할증 자료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7.10.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1997.12.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및 세부시행방안 확정
- 1998. 7. 자동차보험통합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8.11.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및 세부시행방안 변경 확정
- 1999. 1. '전자화폐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 1999. 4. 인보험통합조회시스템 및 사고보험금지급조회시스템(보험) 가동
- 1999. 5. 고액계약위험관리시스템 가동(보험)
- 1999. 6. 자동차보험 단체할인·할증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9.10. 전자화폐 명칭 확정(K-Cash)
- 1999.12. 금융기관공동 2000문제 비상대책반 가동, 보험가입자주소검색시스템 가동(보험)
- 2000. 1. 선물·옵션 감리시스템 가동(증권)
- 2000. 3. 주택청약공동업무 시스템 가동

2000. 5. ~ 11. 자기앞수표 및 4대 징수기관 수납장표 정보화 완료
2000. 7. ~ 12. 전자화폐(K-Cash) 시범사업 실시
2000. 8.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시스템 가동(보험)
- 2000.11. 코스닥 전자공시시스템 가동(증권)
- 2000.12.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Payment Gateway) 가동
- 2000.12. 코스닥 종합감리시스템 가동(증권)
2001. 2.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심의·의결
2001. 3. ~ 12. 전자화폐(K-Cash) 네트워크를 위한 추가개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참여(춘천, 수원, 대구)
2001. 4. 홈/편뱅킹 시스템의 24시간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2001. 8. ~ 12.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
2001. 9.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전국확대 실시계획 확정
물품대금 무선결제시스템 가동
- 2001.11. 금융공동망 백업센터 전산시스템에 대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01.12. 표준OCR장표 인터넷조회시스템 가동,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 개정
2002. 1. ~ 7. 전자화폐(K-Cash) 이용보급확대 및 네트워크화 추진
○ 인터넷 쇼핑물 대금결제 시범서비스 실시
○ 교통카드 상용서비스 실시(김해, 춘천)
2002. 2. 은행공동망과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산망간 접속
현물·선물계좌 통합시스템(BASE 21) 및 환매조건부채권시장
시스템 구축(증권)
2002. 9.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 가동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
- 2002.10. 상장지수펀드(ETF) 시스템 구축(증권)
- 2002.11. 보험사기 인지자동화시스템 구축(보험)
- 2002.12. 금융공동망(타행환, CD, 전자금융) 및 공인인증업무 백업시스템 가동
CD/ATM을 이용한 지로·공과금 자동수납시스템 구축
2003. 4. 증권거래의 STP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STP-HUB FIX 서비스
구축 및 가동
CD/ATM을 통한 지로 및 공과금 납부 실시
2003. 6.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
용금고)의 인터넷지로 참가
2003. 8. ~ 9. 내국신용장 어음의 결제방식 개선 및 온라인조회시스템
구축
- 2003.10. 대량매매네트워크 개발 및 가동(증권)
- 2003.12. 장개시전 시간외 시장 개설(증권)

- 2004. 4.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 구축(증권)
- 2004. 8.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
- 2004.10.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 2004.12.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 2004.12. 웹기반 보험통계제공시스템 구축(보험)
- 2005. 2.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개정
- 2005. 4. ~ 12. 손해보험 요율검증 통계시스템 개편(보험)
- 2005. 9.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구축
- 2005. 9.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구축
- 2005.12. 퇴직연금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보험)
- 2006. 9. RF방식 모바일뱅킹서비스CD/ATM 공동 이용방안 수립
- 2006.12. 전자 적하보험 중계시스템 구축(보험)
- 2007. 2. 차세대 종합증권시스템(PowerBase) 개발(증권)
- 2007. 8. KRX 통합선물시스템 개발(증권)
- 2007.10. CD공동망과 전자금융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 2007.11.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표준 제정
- 2007.12. 타행 CD/ATM기의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 2007.12. 공과금 무인수납기 공동이용 실시
- 2008. 8.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 2008. 9. USIM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표준 제정
- 2008.10.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절차 제정
- 2009.10.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 대상 약속어음 및 당좌·가계수표 전자정보교환 실시
- 2009.1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세칙 제정
- 2010. 4. ~ 9.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시스템 은행권 공동 구축
- 2010. 6.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
- 2010.11.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 전국 확대 실시
- 2010.12. 국가간 ATM망 연계 서비스 시범 실시(말레이시아 대상)
- 2011. 1. ~ 12. 국가간 ATM망 연계 서비스 확대 실시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 2011.1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제정
- 2011.12.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 구축
- 2012. 2. CD/ATM 인터페이스 확장표준 제정
- 2012. 7.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2012. 7.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개정

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안목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1984. 9월 - 1987. 5월 : 금융전산위원회
 1987. 6월 - 1996. 6월 :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1996. 7월 - 2009. 8월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9.11월 - 현재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198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9. 14	84 - 1호	금융전산위원회 규약
		84 - 2호	금융전산망 전담기관의 설립추진
		84 - 3호	특별사업의 추진 · 현금자동인출기의 활용극대화방안 수립 · Stand-alone 방식에 의한 지점업무의 분산처리 가능성 조사 및 분산처리용 기기 고안 · 은행간 자금결제의 온라인 조기추진방안 수립

198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8	85 - 1호	금융전산망 전담기관의 설립
제2차	2.21	85 - 2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관한 협의세칙」 제정
		85 - 3호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설치
제3차	5. 3	85 - 4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계획 협의
제4차	5.10	85 - 5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계획 협의
제5차	6.19	85 - 6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계획 협의
제6차	9.27	85 - 7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계획 협의
제7차	11.29	85 - 8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계획 협의

198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5	86 - 1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협의 규정」제정
제2차	5.20	86 - 2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계획 협의
제3차	7.14	86 - 3호	금융결제원앞 금융전산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른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영업무 위탁
		86 - 4호	지방은행의 금융전산위원회 가입
제4차	8.21	86 - 5호	금융기관의 전자계산조직 도입신청
제5차	9.24	86 - 6호	현금카드 표준화 방안
		86 - 7호	CD 공동이용 추진계획
제6차	11.11	86 - 8호	금융기관의 전자계산조직 도입신청
제7차	12.18	86 - 9호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앞 특별자문 의뢰

198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3	87 - 1호	금융전산망 '86년도 추진실적 및 '87년도 계획
		87 - 2호	금융기관 전자계산조직 도입협의
		87 - 3호	금융기관 '86년 전산화 추진실적 및 '87년도 기본계획 보고
		87 - 4호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보고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제1차	6.16	87 - 1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87 - 2호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요강」 제정
		87 - 3호	대통령 지시사항 보고
제2차	8.19	87 - 4호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요강」개정
		87 - 5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86.9.1 ~87.6.30중 결산
		87 - 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87하반기 예산
		87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3차	9.18	87 - 8호	금융전산망 '87년도 추진계획' 일부 수정
제4차	11.24	87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

198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6	88 - 1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88 - 2호	타행환시스템 시행계획
		88 - 3호	1987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88년도 추진계획
		88 - 4호	외부전문가앞 특별자문용역비 결산
		88 - 5호	1987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1988년도 예산
		88 - 6호	1987년도 금융기관 전산화 추진실적
		88 - 7호	금융결제관리원의 금융전산망 구축현황 보고
제2차	2.11	88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3차	3.17	88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4차	5.19	88 -1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6.24	88 -11호	CD공동이용업무 실시
		88 -12호	외국의 금융전산망 관련기구 도입
제6차	9.16	88 -13호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대상기관조정(은행계신용카드회사, 시설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성업공사, 한국감정원, 전국상호신용금고 등 제외하여 기존의 191개에서 136개 기관으로 조정)
		88 -14호	보고 안건 :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제7차	10.13	88 -15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수정
제8차	11.17	88 -16호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보고
		88 -1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198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4	89 - 1호	1988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89 - 2호	1988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1989년도 예산
		89 - 3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2차	3.17	89 - 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3차	5.17	89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4차	7.22	89 - 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89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89 - 8호	ARS 추진계획 수정
제5차	9.28	89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11.29	89 -1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199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6	90 - 1호	1989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90 - 2호	1989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1990년도 예산
제2차	2.26	90 - 3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3차	3.28	90 - 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0 - 5호	ARS 시스템 추진계획 일부수정
제4차	5.21	90 - 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7.16	90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9.24	90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11.23	90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8차	12. 7	90 -10호	금융기관 대고객전산망 도입방안

199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3	91 - 1호	1990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91년도 추진계획
		91 - 2호	1990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예산
제2차	3.27	91 - 3호	장기신용은행의 CD공동망 신규참여 승인
제3차	5.25	91 - 4호	금융기관의 전신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제4차	7. 3	91 - 6호	금융전산망과 종합무역자동화 시스템(KTNet)의 접속 방안
		91 - 7호	투자금융전산망 구축계획
		91 - 8호	공동 ARS시스템을 이용한 24시간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 실시방안
제5차	7.19	91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1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1 -11호	한국산업은행의 타행환시스템 신규참가 승인
제6차	9.24	91 -12호	금융기관의 잔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13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7차	10.30	91 -1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1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1 -16호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구축방안
		91 -17호	보험전산망 기본계획
		91 -18호	주택은행의 특정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ARS시스템 구축계획

199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5	92 - 1호	금융전산망 제2단계 기본 사업계획
제2차	1.25	92 - 2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92 - 3호	1991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92년도 추진계획
		92 - 4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관련 특별연구반의 설치 및 운영계획
		92 - 5호	1991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결산
		92 - 6호	1992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예산
제3차	4. 1	92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2 - 9호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요강 개정
제4차	5. 6	92 -10호	투자금융전산망 및 보험전산망의 전담사업자 선정승인
제5차	5.19	92 -1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1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6차	6. 9	92 -13호	BC카드(주)의 회원은행과의 전산연계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제7차	6.29	92 -14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제8차	7.15	92 -1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1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9차	9.28	92 -17호	신용카드 취급 금융기관과 한국컴퓨터(주)간 현금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제10차	9.21	92 -1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1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11차	10.31	92 -20호	대고객전산망 추진계획 수정
		92 -21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검토 및 심의조정기준
		92 -2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23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2차	12.30	92 -24호	CD공동망을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수정
		92 -25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직무위임에 관한 기준
		92 -26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199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9	93 - 1호	1992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93년도 추진계획
		93 - 2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93 - 3호	1992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결산
		93 - 4호	1993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예산
제2차	4. 2	93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 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3 - 7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제3차	4.29	93 - 8호	증권전산망 기본계획
		93 - 9호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요강 개정
		93 -10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제4차	5.27	93 -1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1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5차	6.11	93 -13호	ARS시스템 이용한 금융기관 공동코드 온라인전송처리 시스템 구축계획
		93 -14호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관련 데이터통신업무의 금융전산망 활용방안
		93 -15호	ARS시스템을 이용한 가계수표 조회업무 실시방안
		93 -16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6차	7.21	93 -17호	금융결제원과 KTnet과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93 -18호	한국산업은행의 CD공동이용시스템 신규참가 승인
		93 -19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93 -2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2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7차	9. 2	93 -22호	조흥은행 등 23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한국신용정보(주) 점외 CD망의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8차	9.24	93 -23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93 -2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2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9차	10.25	93 -2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10차	11.19	93 -2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2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199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6	94 - 1호	1993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실적
		94 - 2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계획
		94 - 3호	1993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결산
		94 - 4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예산
제2차	3.26	94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3차	3.30	94 - 6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추진계획 수정
		94 - 7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 추진방안

회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4차	5.16	94 - 8호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 추진계획
		94 - 9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0호	금융전산망 안전대책
		94 -11호	보험개발원과 (주)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94 -12호	보험개발원과 (주)데이콤과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제5차	5.23	94 -13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6.15	94 -1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7. 4	94 -1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8차	7.20	94 -18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9호	ARS시스템의 개정방안
		94 -20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추진계획 수정
		94 -21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 추진방안 수정
제9차	9. 2	94 -2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0차	10. 1	94 -23호	선불카드 공용이용시스템구축을 위한 BC카드(주) 등 6개 기관과 에이스정보통신(주)의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11차	11. 5	94 -2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2차	11.17	94 -25호	금융전산업무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94 -26호	금융전산업무 표준제정 지침
제13차	12.15	94 -27호	금융전산망 기획계획 수정
제14차	12.28	94 -28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계획
		94 -29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예산

199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13	95 - 1호	무역자동화망관련 금융결제원과 (주)데이콤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제2차	1.25	95 - 2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실적
		95 - 3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결산
제3차	3. 6	95 - 4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5 - 5호	개별은행의 ARS 취급업무 자유화 방안
제4차	3. 8	95 - 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5. 4	95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6. 7	95 - 8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관련 참여은행과 VAN사업자간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95 - 9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관련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사간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6.28	95 -10호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정
제8차	7. 5	95 -1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9차	8.29	95 -1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0차	9.14	95 -13호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11차	10. 2	95 -14호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이용시스템 구축방안
제12차	10.12	95 -15호	금융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방안
제13차	11. 4	95 -1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4차	12.29	95 -17호	1996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계획
		95 -18호	1996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예산

199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3	96 - 1호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제2차	1.26	96 - 2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실적
		96 - 3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결산
제3차	1.30	96 - 4호	금융전산망의 보안장비 도입방안
제4차	3. 5	96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
		96 - 6호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시 거래승인 중계를 위한 금융결제원과 (주)데이콤간의 외부전산망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3.30	96 - 7호	Firm-Banking 서비스 파일 포맷 표준
제6차	5. 3	96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6 - 9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온라인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6.15	96 -10호	금융결제원, 국민·BC카드연합과 해외 직불 VAN사업자와의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1차	6.22	96 - 1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제2차	7.16	96 - 2호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제3차	9.20	96 - 3호	BC카드 현금서비스 통합 관리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제4차	11.23	96 - 4호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정
제5차	12.26	96 - 5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31	97 - 1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2.14	97 - 2호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강화방안 확정 수립
제3차	3. 3	97 - 3호	1996년도 금융정보화사업 평가 및 1998년도 금융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제4차	10.31	97 - 4호	'2000년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 대응지침 제정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30	98 - 1호	1997년도 금융정보화사업 평가
		98 - 2호	1999년도 금융정보화촉진 시행계획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6.28	99 - 1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7.19	99 - 2호	2000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4.28	00 - 1호	1999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제2차	7.13	00 - 2호	2001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 4	01 - 1호	2000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제2차	6.22	01 - 2호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제3차	12.22	01 - 3호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 개정
		01 - 4호	금융부문 중장기 정보화계획

200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25	02 - 1호	2001년중 금융정보화추진실적 평가
		02 - 2호	2003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20	03 - 1호	2002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03 - 2호	2004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제2차	12.31	03 - 3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0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 6	04 - 1호	2003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04 - 2호	2005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200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28	05 - 1호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개정
제2차	5.30	05 - 2호	2006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7.11	06 - 1호	2007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7.30	07 - 1호	2008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6.26	08 - 1호	2009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제2차	8. 5	08 - 2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200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6.26	09 - 1호	2010년도 금융부문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1차	11.23	09 - 1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제2차	12.24	09 - 2호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 공동구축사업 추진계획

201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2	10 - 1호	2009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결산
		10 - 2호	2010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예산
제2차	6.21	10 - 3호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3차	8.13	10 - 4호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촉진방안
제4차	9.28	10 - 5호	금융IC카드표준의 공인인증서 규격 변경
		10 - 6호	금융공동망 비접촉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IC카드표준 개정
		10 - 7호	금융IC카드표준의 전자화폐(K-CASH) 규격 변경

201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5	11 - 1호	2010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결산
		11 - 2호	2011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예산
제2차	5. 2	11 - 3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세칙 개정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3차	10.19	11 - 4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제4차	11. 3	11 - 5호	퇴직연금 정보중계시스템 구축계획

201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 4	12 - 1호	현금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제2차	2.16	12 - 2호	2011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결산
		12 - 3호	2012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예산
		12 - 4호	금융표준화 추진계획
		12 - 5호	CD/ATM 인터페이스 확장 표준
제3차	7.20	12 - 6호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12 - 7호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개정

【은행소위원회】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31	97 - 1호	1996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97 - 2호	1997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2.24	97 - 3호	금융IC카드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97 - 4호	전자지갑 및 IC통장 표준
제3차	4.21	97 - 5호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구축 사업계획
제4차	7. 4	97 - 6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제5차	12. 5	97 - 7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 세부시행방안

* 1996.12.26 은행소위원회 신설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8	98 - 1호	1997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98 - 2호	1998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11.20	98 - 3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 세부시행방안의 변경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13	99 - 1호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99 - 2호	금융IC카드 표준의 개정 (전자지갑 및 IC통장 표준 명칭 및 내용 개정)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2차	2. 2	99 - 3호	1998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99 - 4호	1999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3차	7. 8	99 - 5호	금융IC카드 표준의 개정
제4차	9. 7	99 - 6호	금융결제원 ARS공동망과 한국통신전산시스템 접속
제5차	12. 3	99 - 7호	전자화폐 공동사업 시범지역 및 실시시기 결정
		99 - 8호	금융기관 수납장표 정보화사업 추진일정 조정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8	00 - 1호	1999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0 - 2호	2000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2.28	00 - 3호	평화은행의 지방은행공동망 접속
제3차	6. 2	00 - 4호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구축계획
		00 - 5호	전자금융공동망(가칭) 구축계획

200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3	01 - 1호	2000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1 - 2호	2001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01 - 3호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제2차	9. 6	01 - 4호	물품대금 무선 결제시스템 구축계획

200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15	02 - 1호	금융공동망과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산망의 접속
제2차	2. 8	02 - 2호	2001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2 - 3호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02 - 4호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제3차	6.11	02 - 5호	개인구매카드제도 도입 추진
제4차	12.20	02 - 6호	금융업무 표준개정
		02 - 7호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변경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9	03 - 1호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3 - 2호	2003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4.25	03 - 3호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금융IC카드 표준 제정
		03 - 4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추진방안
제3차	5.20	03 - 5호	은행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계획
제4차	6. 5	03 - 6호	외환동시결제를 위한 CLS공동망 구축계획
제5차	10. 1	03 - 7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시 MYbi카드 수용
제6차	11.13	03 - 8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계획
		03 - 9호	개방형 금융IC카드표준 개정
		03 - 10호	폐쇄형 금융IC카드표준 개정
제7차	12.31	03 - 11호	개인구매카드제도 도입추진 유보

200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5	04 - 1호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온라인지급시스템 구축
제2차	2.11	04 - 2호	2003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4 - 3호	2004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3차	4. 7	04 - 4호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제4차	6. 15	04 - 5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기간 조정
		04 - 6호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제정
		04 - 7호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제정
제5차	10.25	04 - 8호	대학등록금 수납관련 File Layout 표준제정

200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1	05 - 1호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제2차	2. 4	05 - 2호	2004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5 - 3호	2005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3차	4.20	05 - 4호	CD/ATM을 이용한 3行移替 거래오류시 Message 표준화 방안
제4차	7.28	05 - 5호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의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제5차	8.19	05 - 6호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제6차	10.28	05 - 7호	제2단계 수납장표 전자정보화 추진방안

200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8	06 - 1호	2005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6 - 2호	2006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9.26	06 - 3호	RF방식 모바일뱅킹서비스의 CD/ATM 공동이용방안

200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7.30	07 - 1호	2006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7 - 2호	2007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11.30	07 - 3호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07 - 4호	금융IC카드 금융공동망(현금카드)표준

200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1	08 - 1호	2007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8 - 2호	2008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4. 7	08 - 3호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개정
제3차	9.12	08 - 4호	USIM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
		08 - 5호	2단계 어음·수표 전자정보화 사업 세부 추진계획

200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8	09 - 1호	2008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9 - 2호	2009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2.24	09 - 3호	국가간 ATM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09 - 4호	IC현금카드 복제 위험 대응방안
		09 - 5호	2단계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추진방안
제3차	4.27	09 - 6호	금융표준 개발 사업 추진
제4차	8.21	09 - 7호	금융공동망과 산림조합중앙회전산망 접속을 위한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증권소위원회】

199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6.22	93 - 1	유가증권 표준코드에 대한 검토

199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1	94- 1~12	한국증권거래소의 11개사 기기도입에 대한 검토
		94-13~14	증권소위원회 199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1994년도 사업 추진 계획
		94-15~16	1993년도 결산 및 1994년도 예산
제2차	5.31	94-17~25	한국증권거래소의 8개사 기기도입에 대한 검토
제3차	6. 8	94-26~27	1994년도 제3차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제4차	6.13	—	증권거래소 외 1개사의 전산기기 도입 검토 조정
제5차	9.13	94 -28	금융전산망 증권소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94 -29	기기도입 검토절차 개선
		94 -30	증권소위원회 사무국 기구 축소등
제6차	10. 8	94-31~36	1994년도 제5차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199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3	95 - 1	한국증권금융(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95 - 2	대우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 3	증권소위원회 199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1995년도 사업 추진계획
		95 - 4	증권소위원회 1994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예산(안)
제2차	4.13	95 - 5	한일투자신탁(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 6	동서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제3차	6.13	95 - 7	교보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 8	쌍용투자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제4차	8. 9	95 - 9	산업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10	엘지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제5차	10.12	95 -11	보람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12	한국증권전산(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199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31	96 - 1	증권소위원회 1995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
		96 - 2	증권소위원회 199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1996년도 사업 추진계획
제2차	2.14	96 - 3	장은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6 - 4	고려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6 - 5	한국증권전산(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제3차	4.12	96 - 6	한국증권거래소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96 - 7	제일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제4차	8.17	96 - 8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제5차	12.30	96 - 9	1997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5	97 - 1	1996년도 증권소위원회 결산
		97 - 2	1996년도 정보화추진실적 및 1997년도 사업계획
		97 - 3	금융정보화추진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7	98 - 1	1997년도 증권소위원회 결산
		98 - 2	1998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98 - 3	1997년도 정보화 추진실적 및 1998년도 정보화추진 계획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9.20	99 - 1	금융정보화 추진분과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9 - 2	1999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제2차	12.28	99 - 3	2000년도 예산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17	00 - 1	1999년도 결산
		00 - 2	1999년도 정보화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정보화추진 계획
제2차	12.28	00 - 3	2001년도 예산

200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15	01 - 1	2000년도 결산
		01 - 2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
제2차	12.28	01 - 3	2002년도 예산

200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7	02 - 1	2001년도 결산
		02 - 2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
제2차	12.26	02 - 3	2003년도 예산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7	03 - 1	2002년도 결산
		03 - 2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
제2차	12.26	03 - 3	2004년도 예산

200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9	04 - 1	2003년도 결산
		04 - 2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

200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30	05-1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6.30	05-2	2004년도 증권소위원회 결산
		05-3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 전산총람」 발간
		05-4	증권소위원회 노후장비 폐기

200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 4	06-1	2006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제2차	7.26	06-2	2005년도 증권소위원회 결산

【보험소위원회】

199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6	95 - 1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한국보증보험)
제2차	4. 7	95 - 2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한국생명)
제3차	6. 9	95 - 3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국제생명)
제4차	8. 7	95 - 4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고려씨엠생명)
제5차	11.24	95 - 5호	자배책임가입자 업무처리 개선방안 전산망 적용 세부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199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 5	96 - 1호	보험전산망 1996년도 사업계획 심의
제2차	2. 8	96 - 2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국민생명)
제3차	4.12	96 - 3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한덕생명)
제4차	6. 7	96 - 4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국제화재)
제5차	7.16	96 - 5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 7	97 - 1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7 - 2호	보험소위원회 활성화 계획 심의
		97 - 3호	1998년도 보험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심의
제2차	10.23	97 - 4호	한국보증보험(주)의 외부전산망 접속승인 심의
제3차	12. 9	97 - 5호	보험정보화 장기발전계획 심의
		97 - 6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4.28	98 - 1호	자동차보험 치료비 자동심사시스템 공동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보험정보화 공동사업으로부터 의료망 연계시스템 제외의 건에 대한 심의
제2차	12. 3	98 - 2호	조달 EDI 보증보험증권중계시스템 공동개발 사업 및 외부 전산망 접속 심의에 관한 심의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0.29	99 - 1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12.27	99 - 2호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사업시행자 단일화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 심의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0.29	00 - 1호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사업시행자 단일화 결정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09.04	03 - 1호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개정

200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04.08	05 - 1호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개정

4.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2009. 11. 23.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정 2011. 5. 2. 제2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금융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정보망”이란 제3조의 참여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금융공동망”이란 협의회가 금융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하 “공동추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금융정보망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참여기관의 공동추진사업 선정시 협의회로부터 동사업의 추진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금융정보화의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은행(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 포함)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9.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10. 그 밖에 상기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금융정보화의 추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1 절 협의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에 관한 사항
3. 금융정보화 관련업무의 표준화 및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과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한국은행 부총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참여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2. 금융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안건을 부의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부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의안은 의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 안건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협의회 회의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의사담당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 절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등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0조의 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위원이 속하는 참여기관의 정보화추진 또는 관련 전자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의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협의회 심의사항중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

- 무국장이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 2. 제13조의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 3. 협의회 제정 표준의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기타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 ④ 실무협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내에 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협의회 의사담당자가 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및 실무협회의 부의 안건 작성
2. 협의회 결의사항의 집행
3. 기타 협의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④ 의장은 제3항의 업무중 일부를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참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① 의장은 금융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의장은 금융정보화에 공헌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포상대상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의장명의 표창장을 수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 절 경비분담 및 회계

제13조(경비분담) 협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소요경비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되 분담할 기관의 범위와 분담방법은 협의회가 정한다.

1.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경상운영비,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2.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제14조(회계) ① 제13조의 소요경비의 예산 및 결산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소요경비의 집행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직무권한규정 및 회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 3 장 심의업무

제 1 절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제15조(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참여기관은 금융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

제16조(접속에 대한 심의)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접속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참여기관이외 외부기관의 전산망과 금융정보망과의 접속

2. 금융공동망으로 구축된 망과 금융정보망과의 접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한다.

1. 참여기관이 그 기관 고유의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접속하는 경우
2. 협의회 금융정보화사업계획 심의시 참여대상으로 정한 기관이 금융공동망에 참여하기 위하여 접속하는 경우
3. 접속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전산망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누구에게나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접속할 수 있는 외부전산망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가기간전산망,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 특별법에 의거 구축한 망과 “대고객금융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민간기관이 주무당국으로부터 특정 금융업무대행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망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
3. 기타의 외부전산망중 협의회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정보망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심의기준) 외부전산망접속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결제시스템 저해 여부
2. 은행법 및 주무당국이 정하는 금융업무의 침해 여부
3. 금융정보망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대책의 적정 여부

4. 고객과 외부전산망사업자, 외부전산망사업자와 해당 금융기관간 권리 및 의무사항의 적정성 여부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절 표준화

제18조(표준화위원회) ① 금융정보화 관련업무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산하에 표준화위원회를 둔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 표준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표준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제안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2.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및 표준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
3. 국가표준화 대상 선정
4. 기타 표준화 활동에 관하여 사무국이 의뢰하는 업무

④ 표준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금융표준 전담기관) ① 협의회는 표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표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표준 전담기관은 표준안 개발 및 국가표준화 등 협의회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참여기관은 협의회에 대하여 금융정보화 관련업무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표준화 대상사업의 선정 및 표준안의 개발위탁은 실무협의회가 이를 행한다.

③ 표준안의 개발을 위탁받은 자는 표준안을 개발할 때 상위수준의 표준중 적합한 표준이 존재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상위표준이 없으면 자체 개발한다.

④ 표준화위원회는 기 제정된 표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의 적용) 참여기관은 협의회가 금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기관 상호간 및 참여기관과 고객간의 전산업무처리절차, 이용양식 및 매체 등에 관한 표준을 심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4 절 안전대책

제22조(안전대책위원회) ①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산하에 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 안전대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안전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기준 수립에 관한 사전검토
2. 전산장애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대책 강구
3. 기타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사무국이 의뢰하는 업무

④ 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안전대책의 적용) 참여기관은 협의회가 금융정보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대책기준을 심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업무협조) 의장은 참여기관에게 협의회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의 파견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금융정보화 사업별 참가절차 등) 사업시행자는 협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화 사업별로 구체적인 참가절차, 참가금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기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부 칙 < 2009. 11.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규정의 효력) ①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운영세칙(’96. 6.2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및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97.2.1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을 제외한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시험에 관한 운영 세칙」 및 동 「절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소요경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지정·운영기준」 등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유지하는 종전 규정에서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한다.

제4조(표준화위원회 등의 위원과 관련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소속 표준화위원회 및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세칙 시행일의 표준화위원회 및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11. 5.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 전에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 금융표준 전담기관은 이 세칙에 따른 금융표준 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 제정 표준에 대한 최초 적부 확인을 위한 기간산정은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절차

제정 2009. 11. 2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1. 7. 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제1조(목적) 이 절차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심의 신청)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금융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칙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실시 예정 2개월 전까지 대표 참여기관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 사업계획 심의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 참여기관이 세칙 제16조에 따른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접속예정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화 제안 등) 참여기관이 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표준화제안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작성) 표준화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문서 작성) 표준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서식에 맞게 표준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표준의 색인명 및 형상관리 규칙 <별표 1>

2. 표준 용어의 효력 <별표 2>
3. 표준문서 작성방법 <별표 3>

제7조(국가표준안 제출) 금융표준 전담기관 등이 세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안을 개발한 경우, 동 표준안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표준변경내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2011. 7. 6.>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의 색인명 및 형상관리 규칙

□ 표준 색인명 규칙

- 모든 표준은 고유 영문 색인명을 가짐
- 영문색인명은 “CFIP.ST.영문약어-XX-YEAR” 형태로 표현
 - ※ CFIP : Committee on Financial Informatization Promotion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ST : SStandard (표준)
 - 영문약어 : 6자 이내 영문자로 구성
 - XX : 부속표준번호(part) 2자리 숫자
 - YEAR : 제·개정 년도 4자리 숫자
- 영문 약어는 표준 작성자가 결정 후 표준관리자(사무국 표준화담당)에게 중복여부를 확인
 - ※ 표준 내에서 색인명을 사용할 경우
 - 표준의 머리말에 사용
 - 본문에서 타 표준을 참고하고자 할 때
 - 한국 표준명 대신 영문 색인명을 사용
(예) [CFIP.ST.FINIC-00-2008]
 - Reference로 표준을 명시할 때
 - 영문 색인명과 한글 표준명을 같이 사용
(예) [CFIP.ST.FINIC-00-2008] 금융IC, 2008

□ 표준 형상관리 규칙

○ 버전형태 : 색인명 vX(Major Number).X(Minor Number)

○ Major Number

- 최초 표준안의 경우 초기값은 1을 가짐
-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 도입으로 인해 표준 내용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값 증가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음

○ Minor Number

- 최초 표준안의 경우 초기값은 0을 가짐
- 표준이 개정되는 경우 값을 1씩 증가시키며, Major number가 증가하면 0으로 초기화

○ Revision History 명시

- 문서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버전을 할당받은 문서는 버전 1.0부터 자신의 버전번호까지의 히스토리 및 변경내용 요약을 부록(표준의 연혁)에 명시

<별표 2>

표준 용어의 효력

□ 용어의 효력

-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부분에 용어의 효력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본 용어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

(사용 예)

4.2 용어의 효력

본 표준에서 사용된 다음의 용어들은 금융기관 간 상호호환성 보장을 위해 표준의 적용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가) 해야 한다, 필수이다, 강제한다

의미 :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권고한다

의미 : 보안성 및 상호연동을 고려하여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의미 :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권고하지 않는다

의미 : 보안성 및 상호연동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마) 금지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의미 :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언급하지 않는다, 정의하지 않는다

의미 : 준수 여부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다.

<별표 3>

표준문서 작성방법

□ 기본사항

- 사용 워드프로세서: 한글 등의 문서편집기
- 기본설정(default) 글씨체 : 명조체 12폰트(한글의 경우 휴먼명조)
- 기본설정(default) 정렬 방식 : 양쪽 혼합으로 줄 간격은 160%(한글 기준)
- 편집용지 : A4
- 여백 : 좌우 3cm, 상단 2cm, 하단 1.5cm, 머리말/꼬리말 1.5cm(한글 기준)
- 본문 언어 : 한글 (필요한 경우 ()내에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
- 용어 : 법령 및 지침,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여 단어의 모호성 최대한 배제
- 기호 : 표준에 사용된 모든 기호의 정확한 의미를 기술
- 약어 : 표준에 사용된 모든 약어의 원 명칭(full name) 기술

□ 표준의 구성

- 표지 (표준명, 제·개정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을 명기)
- 표준화 내용
- 차례
- 본문
- 부록
- 표준작성 공헌자

※ 상세 기술방식은 <붙임> 표준문서 서식 참조

CFIP.ST.영문약어-XX-YEAR(영문색인명,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붙임> 표준문서 서식

국문표준명 (30pt 진하게, 중앙정렬, 2열 가능, 부제목 16pt)

<Enter> 12pt

영문표준명 (16pt, 중앙정렬)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vX.X(version, 16pt, 중앙정렬)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표준명의 길이에 따라 표지를 1page로 맞추기 위한 option)

<Enter> 12pt(표준명의 길이에 따라 표지를 1page로 맞추기 위한 option)

<Enter> 12pt(협의회명칭이 1page 하단에 맞추어 저야함)

20XX년 X월 (표준제정시점, 16pt, 중앙정렬)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Enter> 12p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굴림, 진하게, 24pt, 중앙정렬)

(옆면)
국문표
준명

(표준
제정시
점)
금융정보화추진협의
회
(굴림
체)

<표준화 내용> (표준화 내용을 2page 이내로 기술, 20pt, 중앙)

<Enter> 12pt

표준 제 (or 개)정의 필요성 (14pt)

해당항목 기술 (12pt,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Enter> 12pt

주요내용 (14pt)

해당항목 기술 (12pt,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Enter> 12pt

표준화 과정의 주요 의견 (14pt)

해당항목 기술 (12pt,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Enter> 12pt

※ 본 표준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표준이며,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2pt, <표준화 내용> 마지막부분에 추가)

<Enter> 12pt

- 차례 -(16pt)

<Enter> 10pt

<Enter> 10pt (목차는 X.X까지만 표기)

1. 개요 (13pt, 진하게) X

<Enter> 10pt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13pt, 진하게) X

<Enter> 10pt

3. 관련 표준 (13pt, 진하게) X

<Enter> 10pt

4. 용어의 정의 (13pt, 진하게) X

4.1 용어의 정의 (13pt) X

4.2 용어의 효력 (13pt) X

<Enter> 10pt

5. 기호 및 약어 (13pt, 진하게) X

<Enter> 10pt

6. (이하 본문, 13pt, 진하게) XX

<Enter> 10pt

<Enter> 10pt

부록 1. (이하 부록, 13pt, 진하게) XX

국문표준명 (16pt, 중앙정렬)

<Enter> 10pt

영문표준명 (14pt, 중앙정렬)

<Enter> 12pt

<Enter> 12pt

1. 개 요 (12pt)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개요 작성

<Enter> 12pt 각 절 사이에는 2줄 공백

<Enter> 12pt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12pt)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작성

<Enter> 12pt 각 절 사이에는 2줄 공백

<Enter> 12pt

3. 관련 표준 (12pt, 하위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작성

※ 국내·국의 표준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구분방법은 자유

※ 표준 작성서식 : [약칭](탭)표준기구명, 표준번호, 표준명(이탤릭), 버전
번호, 제정일

※ 표준기구명 또는 표준명에 버전번호와 제정일이 나타나있는 경우 이를 생략
가능

※ 영문표준의 경우 국문명 추가 가능

[ISO7810] (탭)ISO/IEC 7810:1995, *Identification cards - Physical characteristics*
(ID카드 — 물리적 특성)

<Enter> 12pt 각 절 사이에는 2줄 공백

<Enter> 12pt

4. 용어의 정의 (12pt)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작성

<Enter> 12pt 각 절 사이에는 2줄 공백

<Enter> 12pt

5. 기호 및 약어 (12pt, 하위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작성

<Enter> 12pt 각 절 사이에는 2줄 공백

<Enter> 12pt

6. 이하 본문 (12pt, 하위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작성

-
-
-
-
-

부록 1. 이하 부록 (새 페이지, 12pt, 하위 문단번호 및 기호는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붙일 것)

<Enter> 12pt

(들여쓰기 2칸) 이하 작성

.
. .
.

부록 X. 표준의 연혁 (12pt, 부록 마지막 절에 기술, 부록이 없을 경우 X = 1)

<Enter> 12pt

버전	제 · 개정일	주요내용
v1.0	20xx년 x월 (제정)	
v1.1	20xx년 x월 (1차 개정)	
...	...	
...	...	

※ 12pt, 모든 버전의 표준에 대해 기술

※ 표는 글자 취급, 중앙정렬

※ 표준화 내용 부분에는 해당 표준화의 내용을 상세기술하나, 본 표에서는 각 버전별 표준의 표준화 내용을 간략히 기술

<Enter> 12pt

표준화 공헌자 (14pt, 중앙정렬)

<Enter> 12pt

구 분	성 명	기관명 및 부서	비 고
표준 제안			
표준 개발			
표준 검토			
표준 편집			

※ 12pt

※ 표는 글자 취급, 중앙정렬

※ 비고란에 각 담당자의 수기서명 첨부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 사업계획 심의신청서
(. . .)

1. 사 업 명 :
2. 사업실시 예정일 :
3. 사업 목적
4. 사업 개요
5. 사업추진 효과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업무흐름도 1부. ③ 시스템 구성도(Configuration) 1부. ④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대책 1부. ⑤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기 관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서
(. . .)

○ ○ 기관장 (인)

< 접속예정 외부전산망 사업자 >			
사업자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연월일	
주요사업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구분 : 기간, 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또는 신고)의 주요내용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 : 정보산업관련매출액/총매출액 ○인력 : 망 개발·운영 전문인력/총인력			
대상업무 :			

- 첨부서류 ① 외부전산망사업자와의 접속에 관한 계약서(안) 사본 1부.
 ② 외부전산망사업자의 정관 사본 1부.
 ③ 대상업무별 업무처리절차도 1부.
 ④ 시스템 구성도(Configuration) 1부.
 ⑤ 해당 금융기관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대책 요약 1부.
 ⑥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술표준의 이행여부 1부.
 ⑦ 전산망 접속추진계획서 사본 1부(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제 정, 개 정, 폐 지) 제 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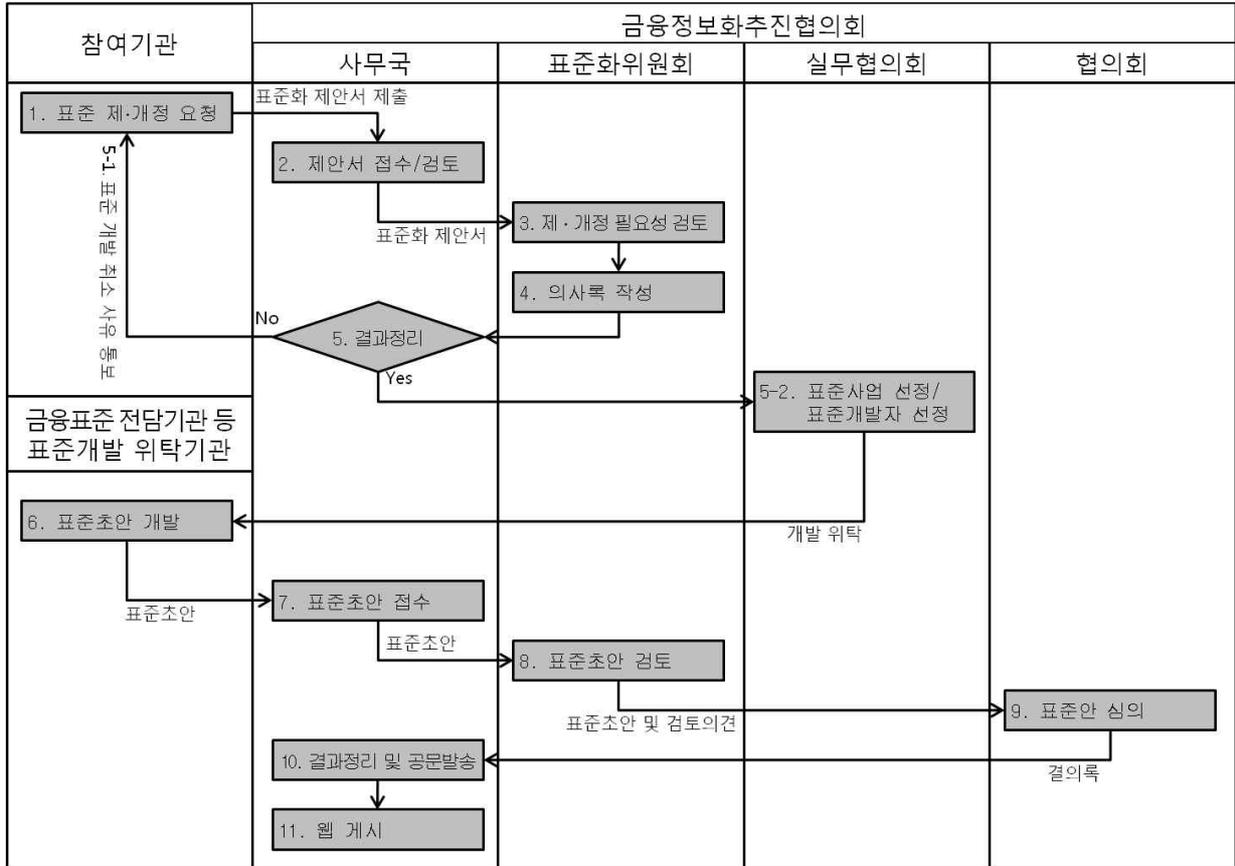
제안기관 :

1. 제 목	국문			
	영문			
2. 제안사유 및 필요성				
3. 내용 및 적용범위				
4. 활용계획	가. 적용대상업무			
	나. 기대효과			
5. 표준과제 구분	다. 표준적용시기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3년 이후			
	가. 표준제정(개정) 시급성 평가 ()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제 <input type="checkbox"/> 신속과제			
6. 기 타 참고사항	나. 국제표준과의 관련성 <input type="checkbox"/> 관련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제표준완전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나.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input type="checkbox"/> 관련 있음 <input type="checkbox"/> 관련 없음			
7.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 제안서 제출 이후, 표준 제정·개정 세부절차는 <붙임> 참조

<붙임>

[표준 제정 · 개정 세부절차]



□ 표준화 제기

— 표준화 제기 대상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한국은행 전자금융팀)에 표준화 제안 요청

— 제안서 접수처

- 사무국 담당자(한국은행 전자금융팀 표준화담당자)

— 접수방법

- 표준화 제안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표준의 제목과 제·개정 필요성 등을 기술한 표준화 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표준화위원회를 통한 제·개정 제안서 검토

— 제안 요청된 표준 제·개정 건에 대한 추진 타당성 검토

— 표준 적용 여부 및 기타 사항 결정

— 제·개정 필요성 검토

- 검토 결과 및 표준 적용 여부 등 표준 제·개정 필요성 검토

— 작성된 표준초안 검토

- 표준개발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맞추어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표준화위원회는 완성된 표준초안을 검토

— 작성된 표준 제정(안)은 표준화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 개발이 취소된 경우, 취소사유에 대해 제안자에게 통보

□ 실무협의회의 역할

— 표준화 사업선정

- 실무협의회는 제기된 안건을 심사하여 표준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표준개발자 선정

□ 표준 제·개정 승인

— 표준 제정(안) 승인

- 검토가 완료된 표준(안)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제출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승인을 통해 표준 제정 승인

□ 표준의 배포

— 각 참여기관에 표준 제·개정 완료 공문 발송

- 새로운 표준의 제정 사실 통보

— 웹 게시를 통한 표준 공고

-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금융정보화 추진 항목*에 금융표준을 추가하여 제·개정된 표준 공고

* 한국은행 홈페이지 → 금융경제 → 지급결제제도 → 금융정보화

<별지 제4호 서식>

표준화위원회 의사록

제 목	
일 시	
장 소	
참석자	
<input type="checkbox"/>	
확 인 : 표준화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변경내역서

분류	주요내용	영향도*
추가		경미/보통/높음
변경		
삭제		
기타 사항		

* 영향도 평가 기준

변경수준	대분류	중분류
경미	내용 추가	- 단체표준 원문에 포함된 용어 및 약어에 대한 설명 추가 - 단체표준 원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구성 변경	- 목차 변경
	내용 삭제	- 표준 규격과 상관없는 단락 삭제 (표준화 내용, 표준화 공헌자 등 표준 개발관련 부연설명이 포함된 단락)
보통	내용 추가	- 단체표준 원문에서 사용 혹은 인용된 기술에 대한 상세규격 설명 (알고리즘, 프로토콜 및 전송되는 전문 규격 등에 대한 세부 스펙)
	명칭 변경	- 표준명(국문, 영문) 변경 - 사용된 용어 명칭 변경 (일반화 혹은 상세화에 따른 대표 용어 변경)
	내용 삭제	- 단체표준 원문에 기술된 기술 및 규격과 무관한 설명문 삭제 (IT기술 및 금융서비스 관련 부연 설명 등)
높음	내용 추가	- 단체표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신규 IT기술 및 금융서비스 내용 추가
	규격 변경	- 통신전문형식 변경 - 통신 프로토콜 및 관련 알고리즘 변경
	내용 삭제	- 단체표준 원문에 기술된 기술 및 규격과 연관된 설명문 삭제 (사용된 기술의 상세 규격, 전문 형식 등)

*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사무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

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2009. 11. 23.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표준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이용양식, 매체 등이 구현되었는지 시험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시험체계) 시험체계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 표준화위원회, 시험기관, 신청인, 이용기관으로 구분한다.

제3조(중립성의 원칙) 표준화위원회 및 시험기관은 시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편견 및 선입관,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위원회의 장은 이해관계에 있는 표준화위원회의 위원 및 시험기관, 신청인의 관련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표준화위원회) ① 위원회 표준의 적합 여부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표준적합성 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시험업무 감독, 시험기관과 신청인 간의 분쟁조정, 시험제품 대장 발간, 기타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시험기관) ① 시험기관은 표준화위원회가 지정한다.

② 시험기관은 표준별 시험기준, 시험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표준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신청 제품의 표준적합성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기관은 표준의 적합성에 대한 시험 후 시험결과를 표준화위원

회에 제출하며, 시험결과에는 시험제품의 개요, 구조, 표준항목별 시험내용, 최종의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시험기관 지정절차) ①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기관은 기술능력, 시험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및 시험수수료 관련 사항을 갖추어 표준화위원회에 제출하고 표준화위원회는 관련 증빙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험기관을 지정한다. 기술능력은 관련 업무 수행인력 및 시험기준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표준화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시험기관은 별도의 절차없이 시험기준 및 시험지침서의 승인만으로 위원회가 제정한 다른 표준의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다.

④ 표준화위원회는 시험기관이 정상적인 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나, 동 지침 3조의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인 및 시험업무의 개시) ① 신청인은 시험에 필요한 제출물을 작성하여 시험신청시 시험기관에 제출한다.

② 시험기관은 신청인의 시험신청 후 제출물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표준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험업무를 개시한다.

제8조(표준적합의 취소) 표준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준화위원회가 내린 표준적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인의 시험 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은 경우
2. 시험결과 제품과 판매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적절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시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시험의 변경) 신청인은 수정·보완, 형상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표준적합성 시험을 받은 제품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부분에 대해 시험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기관) 금융기관 등 위원회 표준을 사용하는 이용기관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위원회의 표준 적합성 시험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기타 이 세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절차

제정 2009. 11. 23.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1. 7. 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제1조(목적) 이 절차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기관 지정 신청) 표준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기관 지정 심의) ① 표준화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험기관 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현장실사를 위하여 표준화위원회 회의를 신청기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심의결과를 신청기관 및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① 세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관련 심의절차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험결과 처리) ① 시험기관은 표준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제출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이 종료되면 <별표>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검토하여 표준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③ 사무국은 최종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준적합성 시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 2011. 7. 6.>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결과서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서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표준화위원회에 제출

1. 표지 및 시험참여자

2. 시험개요

— 시험목적 및 시험대상 표준명

— 시험대상 제품(서비스) 개요

○ 제품명, 제작사, 제품구조 및 설명

— 시험기간

3. 표준항목별 시험 내용 및 결과

4. 시험기관의 최종 의견

5.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시험기관 심사결과서

세부 평가결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1. 전문화정도	- 신청서 작성의 충실성 및 부합성	20 (5)	
	- 시험을 위한 기술인력(시험조직) 보유현황의 적정성	(5)	
	- 시험업무에 대한 국내외 인증	(10)	
	총계		
2. 표준화 경험	- 금융관련 연구·개발 실적	40 (5)	
	- 금융분야 표준 관련 연구·개발 실적	(15)	
	- 금융IT제품 시험실적	(20)	
3. 시험능력	- 시험설비 보유 현황 및 보유계획의 적정성	40 (15)	
	- 시험수수료 적정성	(10)	
	- 시험기준 및 시험지침서의 적정성	(15)	
총계		100	

최종의견

시험기관	최종의견		비 고
	가(可)	부(否)	

※ 세부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가(可), 부(否) 의견을 제시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20xx년 xx월 xx일

표준화위원회 위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표준적합성 시험 관리대장

No.	시험번호	표준명	신청인	시험 제품명 (서비스명)	시험기관	결과 (의결일)	비고
1	FSCT- 20xx-xxxx						
2							
3							
4							
5							
6							
7							
8							
9							
10							

* FSCT, Financial Standard Compliance Test

2011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2012년 9월 28일 인쇄 · 발행

발행인 / 박원식(한국은행 부총재)

편집인 / 이종식(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발행소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인쇄소 / 서원기업(주)

ISSN 2005-288X

◆ 본 자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750-6613, 6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